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下)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민족공동체에 기반한 점진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반세기 동안 형성된 남북한간 상호적대의식을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통일문화'의 창조가 요구된다. 이같은 인식하에 당 연구원에서는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제기되는 문화적 현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차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인 94년에는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향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남북문화간의 이질화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문화교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년도인 금년에는 통일문화 연구를 보다 구체화·체계화하기 위해 부문별 북한사회문화 실태를 연구함과 동시에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함으로써 장차 통일국가의 문화상을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의 방대한 분량을 감안하여 연구보고서를 상·하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는데, 본 보고서에 실린 8개 연구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에서 시민사회의 구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발전 방향을 남북한 민족통합의 내면적 중심축인 통일문화의 이념적 지향으로 제

시하였다. 둘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연구」,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기업소 관리운 영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등의 연구를 통해 분단이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사회·문화 실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반세기 동안 상이한 체제하에서 생활해온 남북한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와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방안」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를 감안하여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가 남북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 秉 龍

〈 총 목 차 〉

< 상 권 >

- | | |
|--|-----|
| ■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 | 윤덕희 |
|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 임순희 |
| ■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연구 | 조한범 |
| ■ 북한의 관료제적 연출 연구: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 박형중 |

< 하 권 >

- | | |
|---------------------------------------|-----|
| ■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 이헌경 |
| ■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
|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대석 |
| ■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확대방안 | 홍관희 |

차 례(하권)

■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이헌경

제 I 장 서 론	3
제 II 장 유교의 정치사상	6
제 III 장 북한의 정치문화에서의 유교문화의 변용	20
제 IV 장 북한사회에서의 유교문화	31
제 V 장 김일성부자 우상화를 위한 유교적 정치사회화	68
제 VI 장 결 론	91

■ 북한 환경문화 연구 :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손기웅

제 I 장 서 론	101
제 II 장 환경정책의 특징	109
제 III 장 환경정책의 전개	125
제 IV 장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과 실태	158
제 V 장 결 론	189

■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대석

제 I 장 서 론 205

제 II 장 북한의 문화정책 및 교류방향 209

제 III 장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230

제 IV 장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평가 262

제 V 장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 274

제 VI 장 결 론 288

■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방안

홍관희

제 I 장 서 론 293

제 II 장 인적교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사례 298

제 III 장 인적교류의 측면에서 본 남북관계 325

제 IV 장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 ... 352

제 V 장 결 론 373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이 헌 경*

- 제 I 장 서 론
- 제 II 장 유교의 정치사상
- 제 III 장 북한의 정치문화에서의 유교문화의 변용
- 제 IV 장 북한사회에서의 유교문화
- 제 V 장 김일성부자 이상화를 위한 유교적 정치사회화
- 제 VI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빈 면

第 I 章 序 論

유교는 天命을 중시하면서 인간중심 세계를 펼쳐 나가는 治國治民사상이다. 이는 통치자에게 德治主義와 民本主義에 의해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사상으로써, 그리고 仁에 의해 윤리도덕을 확립하고, 禮에 의해 사회질서를 바로 유지하게 하는 사회윤리관으로써 역할을 한다.

‘유교문화’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전부를 의미한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性理學에 그 근본을 두고, 君臣 父子 夫婦 長幼관계에 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 가정·사회·국가의 질서와 기강을 유지시켜 왔다. 父子有親과 夫婦有別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長幼有序와 朋友有信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君臣有義는 중국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五倫行爲는 의리명분을 중시여기고 원칙에 지나친 집착을 보여 현실과 이해관계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윤리도덕이 진취적이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선 父親과 夫君이, 사회에선 연장자와 남자가, 국가에선 통치자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 열등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저해하였다.

북한 당국은 유교를 ‘봉건적 사회정치사상’으로 간주하고 낡은 시대의 봉건적 산물로 보았다. 또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결론짓고 이를 신봉하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 유교사상과 유교문화가 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 유교적 사고와 행위규범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그 본질과 전통이 완전 사라지지 않은 채 유교적 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순성을 전제로 한민족에 전래되어 온 유교적 통치관 및 사회관을 검토하고, 체제분단 후부터 지금까지 북한 공산주의사회에 유교적 본질과 전통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第II章은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유교적 통치관과 사회관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적으로 德治主義에 입각한 통치와 仁·禮·義에 의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정통유교사상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理氣論에 입각해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개인윤리와 지배체계를 합법화하는 정치윤리, 性理學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第III章은 정치적 측면에서 한민족에 전래내려 온 유교문화가 북한의 정치문화에서 어떻게 변용 되었는지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교적 본질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主體思想,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 대해 논할 것이다.

第IV章은 유교적 사회관에 입각, 북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유교적 행위규범과 실천행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유교 문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家族主義, 家父長的 權威主義, 孝 등에 관해, 그리고 사회에서의 실태파악을 위해 男尊女卑, 長幼有序, 朋友有信 등에 관해 알아 볼 것이다.

第V章은 김일성부자 이상화를 위한 정치사회화 작업을 유교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第III章에서 언급될 통치형태가 第V章에서 나타날 북한에서의 유교적 정치문화와 어떤 상관성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화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해 第III章에서 거론될 主體思想,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등을 규범적 접근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훌륭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통치 차원의 계층관리가 김일성 이상화를 위해 어떻게 공헌했는지 정치사회화 측면에서 조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접근, 규범적 접근 그리고 경험적 접근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성을 얻으려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유교적 사안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김일성·김정일 담화와 저작 등 공식문건과 그 외 기타 관련 내용 그리고 북한의 문학(소설, 詩)·예술(영화, TV)작품과 출판물(신문, 잡지)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보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귀순자 증언을 함께 참조할 것이다.

第 II 章 儒敎의 政治思想

유교는 인간세계를 지배해 온 다른 어떤 종교사상이나 이념체계보다 정치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 인간관계와 정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來世를 부정하고 現世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神을 받들거나 자연에 매몰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德治主義에 입각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며, 仁을 중심으로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펼치고, 禮를 중심으로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바로 세우려 하고, 義에 의해 바른 길을 인도하며, 信에 의해 인간관계를 믿게 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유교는 통치차원에서선 정치사상으로 그리고 인간질서유지 차원에서선 개인윤리이다.

1. 儒敎의 統治思想과 社會規範

가. 德治主義에 의한 統治

儒家는 자연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천지만물을 자연상태로 방치해 놓았을 때 사회적 무질서가 창출되기 때문에 인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천지만물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사회의 主宰者인 지배군주가 德治主義에 의한 도덕정치를 구현해야 만이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인문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孔子는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해 식량, 군사력, 백성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중 백성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유교 국가에서 백성들의 수를 늘리고 보존하는 것은 노동력 재생산과

권력강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통치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백성은 뿔뿔이 흩어진다. 즉, 백성이 통치자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子夏는 “군자는 신임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백성들을 부려야 한다. 신임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을 부리면 백성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君子信而後勞其民, 末信則以爲勸己也)¹⁾하여 백성들이 통치자를 떠난다고 보았다.

유교국가에서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은 힘 대신 德에 의하고 백성중심의 정치를 펼 때 가능하다. 孔子는 德이 있는 者가 통치자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德이 있고 너그러운 통치자는 백성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신의를 지니고 있으면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德治主義와 함께 통치자는 백성을 잘 보호·양육할 때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뛰어난 임금의 임금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위로는 부모를 섬기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양육하여 죽는 날까지 풍족하고 즐겁게 해주며 흉년이 들어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또한 萬民을 보호·양육하여야 하는데, 첫째는 어린이에게 자애롭게 하고, 둘째는 노인을 봉양하며, 셋째는 궁핍한 자를 도와 주고, 넷째는 가난한 자를 궁핍히 여기며, 다섯째는 질병을 퇴치할 것이며, 여섯째는 부유로움을 안착시켜야 하는 것이다.²⁾

1) 論語, (子張) 10.

2) 王制篇, 「五經·禮記·曲禮」 (臺北: 中新書局, 1976), p. 128, 임춘식, “중화민국의 사회복지,” 진연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서울: 유봉출판사, 1994), p. 31에서 재인용.

나. 仁·禮·義에 의한 社會秩序 維持

儒家는 인간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뿐 아니라 평안 시에도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서로 다른 구성요소와 사회배역의 합심협력이 있을 때 사회질서와 안정이 유지된다고 본다. 이를 위한 윤리나 도덕의 지침으로써 공자는 仁을 맹자는 義를 순자는 禮를 중시하고 있다. 仁과 義는 사실 내재적 덕성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순자의 禮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향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행위 규범이다.³⁾

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仁者 愛類也) “널리 사랑하는 것”(博愛之謂仁)도 포괄적 의미의 仁이다. 따라서 愛人은 유교의 가장 핵심적이며 도덕의 최고 원칙이다.

모든 것을 또는 널리 사랑하는 데 있어 유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장 중시한다. 孝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孝는 仁의 기초 이면서 그리고 가정윤리로써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받드는 효도’(養口體)와 ‘뜻을 받드는 효도’(養志)가 있다. 유교는 養口體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養志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를 참된 孝라 본다. 부모로부터 이어 받은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고 기쁘게 해 드리고, 立身하여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역시 孝에 속한다.

3) 고재욱, “荀子の 社會思想,” 이예희 외 編, 「孔子 思想의 繼承 1」 (서울: 열린책들, 1995), p. 100.

유교는 孝를 확충시키고 “가까운 사람을 가깝게 사랑하고서 남을 사랑”하는 ‘親親而仁民’이 확충되기를 바란다. 가족주의 범위를 초월해 보편적 인류의 세계로 확대시켜 愛人, 博施, 濟衆, 克己復禮라는 교성을 확립한 것이다.⁴⁾ 이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大同思想에서 잘 나타난다.

인간은 오로지 아버지를 섬기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늙은 노약자들에게는 노후의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꾸밈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홀아비나 과부, 고아나 손자녀가 없는 사람, 불구자, 노약자도 모두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大同이라는 것이다.⁵⁾

집안의 ‘孝’를 사회로 확산할 때 恭敬 奉仕가 되고 국가에 확충될 때 忠이 된다. 忠은 사회·국가윤리로써 仁에 근본을 두고 인간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中心’이며 ‘마음’이다. 그래서 盡己之心, 즉,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기에 신하의 의무는 자신에 대한 충실과 부모에 대한 孝를 우선으로 하고 왕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촉구 받는다. 그렇다고 上位者에 대해 무조건적 충성이나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4)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박애 모두 인간을 널리 사랑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범인류적 사랑을 의미한다. “세계(四海)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형제다”라고 한 孔子의 말씀 역시 보편적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유교는 범인류적 혹은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기 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공통된 심성을 내재한 인간의 본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王制篇, 「五經·禮記·曲禮」, 임춘식, 앞의 책, p. 31에서 재인용.

仁에 근본을 둔 忠孝는 곧 ‘내 마음을 미뤄서 남에게 미치는’(推己及人) 정신으로 비롯되며 救世, 救道の 이념인 ‘修己安人’을 통해 이루어진다. ‘修己’는 자기 몸을 닦는 일이고 ‘安人’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자기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닦은 후 남에게도 이를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백성이 인간사회에서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교국가에서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仁에 의하여, 자아확립을 성취시키고, 가정·사회·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교국가에서 治國治民함에 있어 仁과 禮는 유기적 결합관계에 있다. 천지를 경영하던 가족을 다스리던 인간사회에서 愛人하고 인간관계 -- 부모와 자식, 국가와 국민, 어른과 어린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친구와 친구 -- 에 禮⁶⁾가 있을 때 사회질서는 한층 바로 선다. 이 중 父子와 夫婦관계는 가족관계를 일컫고 나머지는 대개 가족적 전형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이는 儒家가 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보기 때문이다. 儒家는 개인 하나 하나가 禮를 지키고, 도덕적 관계를 규정하는 五倫 -- 父子有親, 君臣

6) 유교에서 禮는 윤리도덕의 원리로써, 사회조직의 구조로써 그리고 사회행위의 준칙으로써 중시되는데, 좁게는 사회의 이치로 넓게는 하늘의 이치로 여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禮란 귀천의 등급이 있고 長幼의 차별이 있고 빈부의 경중에 모두 저울질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일에 예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나라에 예가 없으면 편안할 수 없다”(〈富國〉). 그래서 “예란 法의 큰 부분이며 부류의 기강이다”(〈勤學〉). 張琢, “유학과 사회학”(동아일보-인민일보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8. 25~26), 동아일보사, 「孔子思想과 21세기」(서울: 동아일보사, 1994), p. 352.

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 을 바로 행할 때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전체의 질서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계적이고 수직적 사회관계에서 인간간에 흐르는 정과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므로써 인간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五倫에서 제시되는 체계는 인간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위계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차별주의에 의해 전체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上下관계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上位(君 父 夫 長)에 있는 자가 더 큰 권리를 가지며 그 상대가 되는 下位者는 그 의무가 더 많다.⁷⁾ 夫婦관계는 본질적으로 수평적이거나 유교사회에서 君臣관계와 유사히 취급되므로 수직관계이다.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오직 친구간의 관계뿐이다. 儒家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 禮義에 統紀가 없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위아래의 관계가 없어져 혼란이 극치에 도달한다고 본다. 인간관계에 있어 질서와 예의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무질서한 사회혼란을 극복하고 인간세상을 밝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儒敎는 또한 인간행위를 예의규범에 의거해 절도있게 바르게 조절하고자 ‘義’를 강조하고 있다. 義란 ‘가장 옳은 길’ 혹은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의미한다. “안으로는 사람을 절도있게 조절하고 밖으로는 만물을 절도있게 조절하며, 위로는 임금

7) 맹자는 ‘명분의 조정’(正名)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을 통해 上下간의 질서를 올바르게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편안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절도있게 조절하는 것”⁸⁾이라 하면서 內外上下를 절도있게 조절하고자 한다.

義는 또한 의리명분의 준수를 강조한다. ‘의리명분’은 인간의 성리, 사회의 구성, 우주의 운행을 꿰뚫는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지침이지만, 행동자가 처해 있는 입장의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차이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특수적으로 적용되어진다.⁹⁾ 따라서 인간사회에서 인간이 행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이유와 이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바로 바른 정치구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2. 韓國에 있어서 政治와 儒敎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같은 것이므로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일치시키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¹⁰⁾ 유교사상이 바로 新儒學이다. 인간의 心性論과 사회의 倫理論·政治論 등을 우주의 세계관과 결부시켜 사상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모태로 태극음 양 오행론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과, 理氣 心性論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의 문제가 총합된 性命과 理氣에 관한 논함이 바로 性理學이다. 性理學의 본질은 인간내면에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8) 張孫, 앞의 글, p. 352.

9) 고병익, “유교와 국가정치”(동아일보-인민일보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8. 25~26), 동아일보사, 앞의 책, p. 65.

10) Lee-Jae Cho, “Ethical and Social Influences of Confucianism,” i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Lee-Jay Cho and Yoon Hyung Kim(eds) (Honolulu, HI: East-West Center, 1991), pp. 556-7.

본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관계 형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¹¹⁾ 이러한 性理學의 사조가 13세기 후반 한국에 전래되어 한민족의 사상적 기본이 되었다.

가. 理氣論

性理學은 理와 氣를 배합하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理는 원리나 원천 근원이나 이상 등을 그리고 氣는 사실이나 현실, 지엽적인 것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理는 無形이고 無爲이며, 氣는 有形이고 有爲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¹²⁾ 화답이 氣의 성향에 비중을 둔 반면 李滉은 理의 존귀를 강조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은 李珥는 양자이론을 배합해 理의 본체와 氣의 현상이라는 二元을 창출하였다. 理와 氣가 무리없이 소통이 될 때 이상과 현실이 상호부합, 이상적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른바, ‘理氣一元’이다.

11) 性理學 일반에서 인간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인간은 그 무엇에 의한 직접적 피조물로 보지는 않으나, 천지의 기반에서 생성되는 존재로서, 그 내면적으로는 천리와 태극이라는 본원적 요소가 전제됨과 동시에 그 형체로서는 음양오행의 기질을 갖춘 복합체로 파악된다; (2) 만유의 생물 중 인간은 가장 우수한 요인을 품득한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역할을 간직하고 있다고 본다; (3) 사람들 가운데 각기의 현상적 차이가 나는 것은 타고난 理, 즉 본성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변화적 속성인 기질의 偏正때문이다; (4) 인간완성에의 수양을 위해서는 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질의 편벽성, 마음의 혼탁성, 욕정의 무절제성 등을 극복해야 된다고 본다. 한국국민윤리학회 編, 「한국사상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1992), pp. 244-5.

12) 위의 책, p. 47.

‘理氣一元’은 인간심성의 근원을 중시하는데, 李珥의 ‘人心道心論’에 의해 잘 나타난다.

情의 發함에 도의를 위하여 발하는 것이 있으니, 어버이에 효도하려는 것, 임금에 충성하려는 것,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측은히 여기는 것, 義가 아닌 것을 보고 부끄럽고 미워하는 것, 종묘에 지나갈 때 공경하는 것 등이 이것이니, 이를 도심이라 하는 것이다. 또 정의를 발함에 구체를 위하여 발하는 것이 있으니, 배고픔에 먹으려는 것, 추움에 입으려는 것, 노고함에 쉬려는 것, 정력이 왕성하면 여자를 생각하는 것 등이 이것이다. 이를 인심이라 하는 것이다. 理와 氣가 혼용되어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다. 心이 움직여 情이 됨에 발하는 것은 氣요 발하는 소이인 것은 理이다.¹³⁾

한국유교사회에서 性理學은 ‘理氣一元’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의 철학세계와 함께 유교적 생활의례와 사회규범을 확립해 나갔다. 禮의 실천이 바로 理¹⁴⁾이며 이것은 ‘克己福禮’¹⁵⁾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仁을 실현하는 것이라 믿었다.

13) 「율곡전서」, 14권, “人心道心論,” 위의 책, p. 244에서 재인용.

14) 理는 특히 「오륜행실도」에 의해 인륜규범이 완성되었고 書經의 「五典」을 기초로 한 孟子의 오륜적 형태를 일상적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로 받아들였다. 「오륜행실도」는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의 합본이다. 「삼강행실도」는 세종조에 강조된 것으로 三綱을 근간으로 하였다. 三綱은 임금은 신하의 버리가 되고(君臣有義), 아버지는 자식의 버리가 되고(父爲子綱), 지아비는 지어미의 버리가 된다(夫爲婦綱)는 내용이다. 즉, 충효관에 바탕을 두고 신하는 임금을, 자식은 아버지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主從的 上下關係의 원리와 일반적인 존비종속관계 설을 취하면서 기강확립을 강구하려 함이다. 「이륜행실도」는 「삼강행실도」에서 다루지 않은 長幼와 朋友의 관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5) ‘克己福禮’란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바로 이기심과 분쟁을 막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나. 日常生活을 規制하는 個人倫理

한국유교사회는 특히 ‘父子有親’을 강조하였다. 인간관계에 있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가장 중요히 여기기 때문이다. 효도를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부모에 대한 恭敬과 奉養 그리고 대를 잇는 것을 자식들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男兒를 선호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一夫 多妻制를 허용하는 것도 유교적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¹⁶⁾

여러 의례 가운데 조상에의 祭儀를 가장 신성시하는 것도 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 있는 이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事死如事生)는 정신과 대를 잇게 해 준 근원인 조상에 대한 숭배를 위해 치르는 제시는 바로 조상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추모하기 위한 의식이다.

孝를 위해 부모의 不義에 대해 동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대의적 효행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잘못 저지르는 일을 당하면 마땅히 간하여야 하며, 먼저 부모의 뜻을 알고, 그 하고자 하는 뜻을 이어 받아서, 도리에 깨우쳐 드려야만, 지극한 효도가 된다.¹⁷⁾ 부모의 잘못과 불의가 명백할 시 이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를 것이 아니라 직언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孝임을 강조하고 있다.

16) 자식이 젊어서는 어버이에 효도하지만 후자가 늙을 때는 전자로부터 효도를 받게 된다는 즉,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出乎爾者 反乎爾)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 존재 차원에서 설명되어진다. 인간의 존재란 바로 줄줄이 이어진 고리의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혈통 잇기란 가문의 맥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17) 「율곡전서」, 제23권, “聖學綱要” ‘正家’.

혈연관계가 아닌 夫婦는 혈연의 속성 대신 陰陽의 원리가 적용된다. 음과 양의 화응관계는 각기 서로 다른 속성으로서의 분별됨이 전제되어서 가능할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공존관계 역시 그러한 음양적 相異性의 지속에서 원만성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실지 한국가정에서 夫婦는 有別되었다.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으므로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가정이 화목하며,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고 받들어 모실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아내의 근본이 남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에게 貞操를 가치화하는 반면 남성에게 첩의 관계를 허용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겪지 않는다”란 신념을 고찰시키면서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재가를 문제시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화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男性優位와 夫婦有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윤리 차원에서 長幼有序와 朋友有信 등이 강조되었다. 전자를 통해 연장자는 분별있게 행동하고 연소자를 사랑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존중하게 하고, 후자를 통해 인간관계를 믿음과 신용으로 돈독히 하고 信義를 창출하게 하여 사회·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서게끔 하였다.

다. 支配體系를 合法化하는 政治倫理

정치윤리로서 한국의 유교적 국가관은 天下관념으로 시작된다. 事大主義의 경향, 즉, 明을 天子國으로 조선을 諸侯國의 위치에

18) 한국국민윤리학회 編, 앞의 책, p. 261.

농고 事大字小의 국제질서를 형성하였다. 이에 근거한 정치윤리관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백성과의 일체감을 모색하였다.

첫째, 天命에 의한 통치이다. 유교에선 天命에 의해, 부도덕하고 백성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면, 天命은 몰수되어 德이 있는 자에게 통치권이 넘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天子가 天命을 받은 존재라 여겼지만 도덕정치에 중대한 잘못과 결함이 있을 경우 天命이 철회되어 제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전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유교적 논리는 반란자들에게 왕조에 대항하는 이유를 제공하였다.

유교국가에서 지배력 장악을 위한 어떠한 반항·반란에 대해 권부는 그릇된 것으로 여겨 이를 강력히 금기시 하였으나 중국 역사에 있어 반란자들은 백성을 위하지 않는 왕조처단이란 구실로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허다했다. 이 결과 중국 왕조는 수차례 왕조교체를 경험했다.¹⁹⁾ 이성계도 이러한 天命意識으로 새 국가건설을 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왕조에 대항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치 않았다. 왕조에 대한 저항은 바로 天命에 대한 반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으로 조선시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

둘째, 왕조의 영속성을 기하면서 왕조혈통이 통치를 담당하게 하였다. 정통유교사상은 왕위세습(또는 권력세습)과 등급제의 혈연적인 세습을 절대 용인하지 않았다. 이는 天命主義와 연계된다.

19) 일본의 경우 유교를 수용하긴 했지만 원리 해석을 달리해 천황에 대한 어떠한 반기도 용인하지 않았다.

天子가 백성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펼 때 이는 天命을 받들지 않는 것으로 天子의 교체는 바로 하늘의 뜻이요 백성의 뜻인 것이다.²⁰⁾ 또한 하늘이 백성을 낳았으므로 국토와 국가는 國君의 소유가 아닌 백성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君의 권위 역시 天命에 의한 것이며, 세습의 주체는 帝王이나 世家가 아닌 당시 선하고 능력있는 帝王이 제정한 제도였다. 나라를 天子의 세습적 가산으로 여기는 소위 ‘家産制國家’의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군주나 관리들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²¹⁾

중국의 경우 國君 역시 그 자신이 神權을 가진 존재라 여기지 않아 세습을 정당화하지 않았으나 실지 왕조혈통의 계승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경우 중국과 유사하지만 다만 세습의 주체에 있어 제도가 아닌 帝王과 世家에 있었다. 이에 따라 직계혈통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天子교체 역시 적통후손이 왕위를 이어 받는다는 명분하에 가능했는데 광해군과 연산군이 퇴진했을 때 왕조혈통인 인조와 중종이 즉위한 것이 선례로 남는다.

셋째, 君臣有義의 확립을 통해 통치기반을 굳건히 하였다. 이는 “가족적 차원의 윤리관계를 정치적 윤리관계인 君臣간의 윤리로 연결시켜 정치적 권위를 공고히 하여 왔다.”²²⁾

20) 天治主義와 民本主義를 결합, 백성을 위하지 않는 天子를 벌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天子의 교체는 정당화되었다.

21) 荀子는 <王制>에서 능력이 없는 자의 벼슬을 금하고, 조정에 요행으로 주어지는 헛된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리들은 선하고 우수한 자를 등용하되 그들이 德治主義에 입각 백성을 위할 때 그들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22)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2권 (1994): p. 24, 註 58; 부남철, 「朝鮮前期 政治思想研究」 (한국의국

그러나 상위계층과 지배계층에 무조건적 복종과 희생을 전제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조절하는 한 방법으로 관료들이 지배군주의 덕치위배에 대한 충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였고, 관료들 상하관직간 그리고 사대부간에도 지속적인 견제작용과 교양작용을 통해 지배군주와 관료들 모두가 도덕정치를 전개하도록 하였다.²³⁾ 그러나 역사의 방향이 정치권력의 중앙 집권화로 진행되면서 백성과 신하들에게 통치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어대학 박사학위논문, 1990).

23) 어느 한쪽이 세력을 남용하거나 지나친 비리를 저지를 때 이를 유교적 윤리와 이념에 입각 서로를 견제케 함으로써 군주의 절대 전제권력을 제한하였으며 사회의 평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第 Ⅲ 章 北韓의 政治文化에서의 儒敎文化의 變容

북한은 유교를 “왕권을 신성화하고 신분제도를 합리화하며 계급적 압박의 정당화, 천명에 대한 순종, 지배계급과의 타협 등을 설교”²⁴⁾하는 ‘봉건적 사회정치사상’으로, “봉건사회에서의 통치자와 피통치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량반귀족과 평민간의 적대적 관계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며 근로인민들을 봉건제도의 노예로 영원히 엮어매 놓으려는 악랄한 책동”²⁵⁾으로 여기고 있다. 더군다나 유교가 (1)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2) 인민의 사상정치생활과 윤리도덕에 지대한 해독을 끼치고, (3) 혁명투쟁을 약화시켜 건설사업과 사회발전을 방해한다는 인식론적 비판과 함께 이를 신봉하는 것을 금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유교의 실체를 완전 혁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교가 지도급 인사 및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모두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유교를 체제유지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 章에선 북한의 정치문화에서의 유교문화의 변용을 통한 통치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유교의 인간중심 세계관을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대체하고, 전통적 가족주의적 정향을 이용한 有機體的 家族國家觀과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등을 논할 것이다.

24)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573.

25) 위의 사전. 또한 유교가 “사대주의를 적극 고취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의식을 말살하여 버리려 하였고 또한 명분이니 3장 5륜과 같은 썩어 빠진 봉건착취자들의 룬리 도덕을 퍼뜨려 놓음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과 고상한 도덕 품성이 발전을 백방으로 저해하였다”고 보고 있다.

1. 首領中心의 主體思想

유교와 주체사상은 모두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펼치고 있다. 전자는 하늘이 백성을 낳았기 때문에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요 주인이라 여기며, 후자는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귀히 여기는 점에 있어서 유교와 주체사상은 ‘愛民主義’와 ‘重民主義’를 낳는다.

유교의 인간중심관은 天命으로 비롯된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하늘이 반드시 그것을 따르기”(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때문에 天子가 진실로 愛民 重民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반면 주체사상은 유물론과 변증법의 기본원리에 근간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생명을 가진 다른 모든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²⁶⁾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로 여기면서, 사람이 “그보다 덜 발전된 물질적존재에 대하여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고급한 물질의 운동인 인간의 운동이 저급한 물질의 운동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²⁷⁾고 주창하고 있다.

26)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 1. 19), 통일원, 「김정일 주요 논문집」(서울: 통일원, 1993), p. 19.

2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 중앙위

그리고 유교는 인간을 만물경영의 주체로, 주체사상은 인간²⁸⁾을 사회역사의 주체로 여긴다. 구체적으로 유교에선 만물과 같이 蘇生子の 위치에 있던 인간이 천지와 만물 사이에 위치 能産者가 되고 문화건설의 주체가 되며 만물경영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인간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연의 부족은 인간이 대행하고 인간의 부족은 자연이 보충함으로써 천지만물을 경영하려 함이다. 반면 주체사상은 “자주적존재인 인간은 자연에 예속되어 사는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연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면서”²⁹⁾ 살아 나가므로 세계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발전의 주체에 있어 그 대상을 유교가 군자로 여기나 주체사상은 포괄적으로 인간으로 본다. 유교사상이 지혜와 덕망을 갖춘 군자가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주체사상은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사회발전과 세계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며, 창조성으로 하여 낡은것은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 7. 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48-9.

28)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개별적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세포인 인민대중이다.

29) 김형일, “인간중심의 철학적원리를 밝힌 주체사상,” 「조선녀성」 (1993. 3), p. 29.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는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가며,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³⁰⁾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은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³¹⁾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혁해야 하고 혁명투쟁과 건설 역시 자체의 힘으로 추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궁극적으로 수령의 인도없이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개조하기 어렵다고 보는 점에서는 유교의 天子와 비슷하다. 수령과 天子 모두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갖추어야 지혜·덕목·소양·능력 등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을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제시하는 수령의 위치는 神과 같은 존재며 절대적이다. 반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天子는 절대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도 덕정치에 중대한 잘못과 결함이 있을 경우 그리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펼 때 유교문화권에서 天子의 교체는 가능하나, 북한에서 수령의 교체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³²⁾

3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 3. 3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6~7.

31) 위의 글, p. 17.

32) 북한에선 밑으로의 혁명도 위로부터의 혁명(또는 반란, 반항)도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가산제하에서 관료와 정치세력들은 지배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지배자의 심복이나 지지자들

인간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마침내 북한 인민대중을 최고로 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창출하였다.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며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활동으로 훌륭한 물질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온 지혜롭고 재능있는 민족”³³⁾이 바로 우리인민이며, 오랜 역사적 변동기를 거치는 동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계승 발전시켰으므로 조선민족이 제일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³⁴⁾을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민족에 대한 긍

로 구성되고, 그들은 가산제의 일원이 되는 것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에 기꺼이 참여”(M.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C.B: Mohr Tübingen, 1976], p. 580, 선한승,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1994], p. 78에서 재인용)하는 ‘家産制國家’ 이론에 기초한 정치형태를 북한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지 김일성 부자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는 족벌체제를 강력히 구축하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단호히 숙청 제거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을 권력핵심부에 두면서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번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33)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 12. 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p. 252. 여기서 핏줄을 잇는다는 것은 ‘민족적 혈통’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즉 “혈연성에 기초하여 맺어진 공동체인 씨족, 종족의 인종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동질적 및 이질적인 주민집단들이 동화되고 융합되는 인간세대교체의 역사적과정에 이루어진 징표”를 의미한다. 「철학사전」 (1985), p. 246.
- 34)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p. 67.

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주체혁명의 위업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민족을 중시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부르조아인종론,’ ‘민족배타주의,’ ‘세계주의,’ ‘사대주의’를 배척하고 國粹主義를 고수하면서 혈연 중심적 사고를 강력히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핏줄을 잇는, 즉, 민족적 혈통을 계승하고,³⁵⁾ 이를 계승한 민족의 운명은 바로 민족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혈연주의적 사고와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는 부분은 다분히 유교적 전통의 맥을 이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촉구하면서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매개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긍지, 운명개척에서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신심과 자부심, 자기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철학의 보편성과 생활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는것이라 하겠다.³⁶⁾ 이를 위해 투철한 민족 자주정신으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것을 노동당에 역설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니기 위한 투쟁에 열정을 다해야 함을 당원과 인민대중에 촉구하고 있는데, 민족공동체의 운명과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결합시켜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35) 핏줄 잇기 차원에서 같은 조상 언어 문화를 가진 남한주민은 배제되어 있다.

36) 고영환, 앞의 책, p. 155.

2. 有機體的 家族國家觀과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有機體的 家族國家觀’은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³⁷⁾으로 규정 짓고 수령, 당, 인민대중을 인간 유기체의 존재로 비유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를 통치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首領은 두뇌나 심장의 역할을 하는 인간의 핵심적 유기체이며 바로 아버지와 같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³⁸⁾에 해당된다. 黨은 인체에 있어 혈관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黨을 어머니黨이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사회구성요소이나 결코 개개인이 아니라 그 집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에 비유된다. 인민대중이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사회주의는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사회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이다.³⁹⁾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라는 전제를 두고, 전자보다 후자를 더 귀중히 여긴다. 그것은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에 복종되어 자연과

37)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p. 48.

3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60.

39) 윤정수,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1993. 1), p. 35.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인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고유한 사회적운동법칙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존재”40)이고,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있어도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그 인간은 사회적존재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41)인데 비해 사회정치적 생명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생명과는 달리 사회정치적 생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개인이 자기생명의 모체인 수령과 당에 대해 절대적·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지닐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개별적인 사람들은 혁명조직을 통해서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될수”....42) 있고, 사회적 인간의 제일 생명이자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고 빛내여 나갈 수 있으며, 그들이 “수령의 사상과 의지에 충실할수록 수령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보다 값높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되며 개인주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커다란 삶의 보람을 누릴수”43)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조직정치생활과정을 중시하게 하고 조직과 집단을 개인보다 귀중히 여기고 있다.

40) 김정일, 앞의 글, p. 146.

41) 고영환, 앞의 책, p. 23.

42)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생명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p. 78.

43)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 10. 1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01.

그래야만 사회는 하나의 전일적인 유기체로, 고락을 함께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될 수 있다. 또한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 조직,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통해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킬 수 있고,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적 집단에서 동지적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 돈독해진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집단의 생명을 개인의 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다운 인간관계이기 때문⁴⁴⁾에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간으로 집단주의를 모색할 때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이 확립되고, 동지간에는 참다운 동지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을 대표하는 수령에 대한 의리와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것만큼 집단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은 물론 집단을 이루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도 표현되며 조국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표현되므로 그 자체로는 집단전체에 대한 의리와 동지애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되게 된다.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할 때 가장 진실한 것으로 될 수 있다.⁴⁵⁾

전반적으로 ‘有機體的 家族國家觀’과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 생명관

44)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생명체」, p. 38.

45) 위의 책, p. 47.

으로부터 집단주의를 지향하면서 수령과 인민대중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발언으로부터 잘 표현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뇌수입니다.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는 혁명사상과 동지적 사랑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의 혈연적 관계입니다. 생명체와 뇌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인민대중을 떠난 수령, 수령을 떠난 인민대중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⁴⁶⁾ 집단주의에 입각해 개인을 전체사회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면서,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에선 수령이 治者요 인민대중이 被治者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선 治者和 被治者는 필연적 관계임을 명기시키고 있다.

上下位階確立을 통해 통치자의 권위를 모색하는 점에서는 君臣有義的 경향을 띠고 있지만, 이를 위해 집단주의를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교적 정치문화와 대립된다. 유교적 전통에 있어 최대 관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 있다. 그래서 “나의 노인네를 공경하여서 다른 사람의 노인네로 미치고, 나의 어린이를 사랑하고서 다른 어린이에게로 그 사랑이 미치는”(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親親而仁民’을 권장한다. 宗法사회에서 남보다 내가 그리고 남의 부모보다 나의 부모가 더욱 더 소중한 것이 인간의 솔직한 바램인 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먼저 베풀고 이를 남에게도 베풀라는 것이다. 인간생활 속에서 양성된 仁愛의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주변의 사랑이 널리 파급될 수 있고 내가 하고

46)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 1. 3), 통일원, 「김정일 주요 논문집」, p. 295.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함께 있을 때 그 파급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성향은 자기와 자기를 낳아 준 부모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수령을 우선적으로 여기라는 主義·主張과 집단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第 IV 章 北韓社會에서의 儒敎文化

북한은 유교의 기초규범인 仁 義 禮에 대해 인민대중 속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행동절차와 행동격식으로, 그리고 三綱五倫에 대해 선 봉건적 가족제도를 비롯한 봉건제도와 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유교적 사회관을 답습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사회문화가 상당 부분 유교적 전통을 내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분석대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 家庭에서의 儒敎文化

가. 家族主義

가족 정치사회화에 있어 가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정은 태도들을 어린이에게 전수하고, 부모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모델로서 기여하며, 가정구조내에서의 역할정향 및 기대는 정치적 대상들에 관하여 일반화된다.⁴⁷⁾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후자는 전자를 자신의 모델로 생각한다. 변화보다는 보존에 기여하면서 세대 전승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기 북한공산정권은 초기 중국·소련공산정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화에 보수적이고 보존적인 편견을 주는 가족의 역할에

47) 김재영 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1990), p. 239.

회의를 가지면서 전통적 가족행태가 공산주의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을 심히 우려했다. 부모들의 구 시대적 또는 봉건시대적 낡은 사상과 가치관·세계관 등이 자식들에 전수되는 세대 전승적 성질과 파급을 염려했고, 사회나 국가보다 혈연적 관계를 보다 중시여기고 濇情主義 성향의 가족주의적 의식이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거라 여겼다. 더구나 가족주의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유발하게 해 (1)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벗어날 수 있고, (2)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기가 한층 힘들어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창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3)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 계급혁명에 방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가족주의에 물젖게 되면 옳고 그른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행동까지 하게 되므로 집단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약화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방해한다”⁴⁸⁾면서 가족주의에 직접적 비판을 가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족형태’로의 변형을 도모하면서 가족주의 해체를 목표로 삼았다. 1958년부터 실시된 ‘5호 담당제’와 1960년 이래 ‘붉은 가정 창조운동’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였다. 부모가 반동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므로 이를 복종하지 말고 고발할 것을 자식들에 주입시켜 부모와 자식간을 격리시키고 경계하는 데 앞장섰다.

48) 「철학사전」 (1985), p. 43.

더구나 ‘소년단,’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등 외곽 사회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부정적으로 주입해 아동·청년들의 가족관을 희석시키고, ‘인민반’ 조직을 통해 상호감시와 비판을 가하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을 소원하게 했다. 심지어 아이들에 감시체계와 고발을 수반하는 교육을 실시, 부모가 그 사회에 대한 잘못·불평불만·반감 등을 했을 경우 당에 고발하는 어처구니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귀순자 이항구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반감을 품었거나 그 사회에서 천시당할 출신 또는 사회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처벌 또는 숙청당한 상태에 있으면 자식들로부터 노골적인 괘시와 천대를 받는다.”⁴⁹⁾ 예로써,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낸 김창만의 아들 김하는 아버지의 사생활 약점들을 모조리 수집, 당 조직지도부장였던 김영주에게 밀고하였고,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이었던 한설야의 아들 한형원과 한옥은 아버지가 숙청대상자로 비판대에 오르자 먼저 열을 내어 아버지를 공박하고 구타까지 하였다.⁵⁰⁾ 「한남일보」 기자 김병기는 ‘149호 대상자’(평양에서의 추방대상자)로 엄동설한에 자기를 찾아온 늙은 아버지를 문전박대해 결국 급성폐렴으로 죽게 하였다.⁵¹⁾ 안막은 아내인 무용가 최승희와 딸 안성희에 천대를 받다 결국 비참히 죽었고, 최승희 역시 딸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⁵²⁾

49) 이항구, 「북한의 현실 -- 김일성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오늘의 북한」 (서울: 신태양사, 1988), p. 296.

50) 귀순자 이항구의 증언, 위의 책, p. 297.

51) 귀순자 이항구의 증언, 위의 책, p. 297.

52) 귀순자 이항구의 증언, 위의 책, pp. 296-7, 299. 안성희는 친구들 앞에 아

작곡가이며 지휘자인 유광준은 며느리 송수정에 의해 비판을 받자 은품을 떨어진 적도 있다.⁵³⁾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더불어 육아의 공동양육제가 강조되는 등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좀 더 활발해지면서 가족주의가 희생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가정의 혁명화’ 정책으로 비롯된다. 김일성이 1960년대 중반 가정의 사상교양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한 후,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할데 대하여’(1971. 10. 7)란 연설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를 통해 ‘가정의 혁명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⁵⁴⁾를 혁명화하자는 점이 예전과 다르다. 전통적 가족관을 지니고 있는 북한 가정을 인위적으로 해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혁명화하려 하였다.

‘가정의 혁명화’ 정책은 “사람의 몸도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병들지 말아야 건강하듯이 사회도 매가정이 건전해야 혁명적 분위기가 서고 모든 가정이 혁명화되어야 온 사회가 혁명화될 수 있다”⁵⁵⁾는 논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즉, 가정의 혁명화를 통해 직장의 분조·작업반 및 지역공동체의 혁명화를 시도하고,

버지를 ‘이빨빠진 늙은개’라고 비난하는 등 자기 당성을 과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최승희·안성희 모두 무용가동맹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숙청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53) 귀순자 이항구의 증언, 위의책, p. 299.

54) ‘가족단위’란 “부모와 처자·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회의 세포”를 의미한다. 「김일성 저작집 15」, p. 339.

55) 전국봉,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 「조선녀성」 (1984. 6), p. 16.

나아가 전체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혁명의식을 가져야 자식이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이 될 수 있고 혁명적·사상적 동지가 될 수 있으며, 온 가족구성원이 혁명화될 때 전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귀순자 정기해의 증언은 1960년대의 가족고발 성향이 변했음을 시사하면서 가족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을 잘 대변한다. “부모는 자식을 향하는 마음만 앞설 뿐이지 자식에 물려줄 재산이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해 부모의 마음은 늘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뇌물을 바쳐 자식이 대학에 가도록 도와주려 하는 데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식이 부모가 해당행위를 했다 한들 어떻게 고발을 하겠는가?”⁵⁶⁾ 이러한 성향은 “아무리 북한이 가족 외적인 2차적 사회화 媒體를 통한 강력한 재사회화를 시도한다 해도 이미 사회화 초기에 가족에서 내면화된 윤리적 기반이나 전통적 애착은 북한주민의 의식으로부터 송두리째 지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⁷⁾

이러한 변화는 일부 북한 소설에서 보다 더 선명히 나타난다. 단편소설 「기다리는 고향」⁵⁸⁾, 「기다리는 어머니」⁵⁹⁾, 「갈숲의 저녁노을」⁶⁰⁾, 「아버지의 초상」⁶¹⁾, 「은인들」⁶²⁾, 중편소설

56) 귀순자 정기해 면담, 1995. 4. 18.

57) 안병영, “북한의 정치과정,” 「한국정치론」, 김운태 외 (서울: 박영사, 1977), p. 690.

58) 김준혁, “기다리는 고향,” 「조선문학」 (1994. 4).

59) 로정범, “기다리는 어머니,” 「조선문학」 (1993. 10).

60) 림병순, “갈숲의 저녁노을,” 「조선문학」 (1991. 2), p. 56.

61) 김동호, “아버지의 초상,” 「조선문학」 (1991. 5), p. 32.

62) 최봉무, 「은인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가족간의 모임이 명절

「어린참나무」, 63) 장편소설 「먼길」 64), 「벼꽃」 65), 「비단섬」 66) 등은 가족성원간의 정과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 「기다리는 고향」은 강렬한 가족애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67)

<운철이가 왔습니다.>

<뛰라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의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일시에 터져나왔다. 당장에 떨어져나 갈 듯이 문이 벌키 열렸다. 맨발의 어머니가 어푸러질듯이 달려나왔다.

<정말 운철이나? 어디 보자.>

운철은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아니, 어머니가 그를 뜨겁게 열렬하게 한가슴에 껴안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나오고 동생들인 상희와 성철이가 뛰어나왔다. 마당 안은 삼시에 떠들썩하여졌다.

(중략)

어머니의 편지는 늘 이 비슷하게 끝나곤 하였다.

정말 고마운 어머니였다. 응심깊고 인자한 어머니의 기쁨을 보며 운철은 가슴이 뭉쿨해졌다.

<어머니. 제 걱정으로 머리가 다 세였군요.>

<네 예민 그저 네 생각뿐이다. 우리 운철이, 우리 운철이, 어떤 때는 막 듣기 싫을 정도였으니까.>

(중략)

<뜨뜻한 방안에 앉아있자니 운철이 생각이 낫수다. 운철이가 이 밤에도 추운 밖에서 초소근무를 서느라고 수고를 하겠는데 내 그래서 그애가 얼마나 춥겠는지 알자구 밖에 좀 서있어 봤수다.>

과 같다고 하면서 가족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고(p. 65), 가정의 행복이 소중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p. 116).

63) 정석우, 「어린참나무」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 23.

64) 정창윤, 「먼길」 (평양: 문예출판사, 1983)에선 “어머니의 편지를 받는 날은 저의 명절입니다”(p. 9),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습니다”(p. 12), “아버지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요”(p. 319)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65) 리현덕, 「벼꽃」 (평양: 문예출판사, 1986), pp. 51~2.

66) 현희균, 「비단섬」 (평양: 문예출판사, 1974), pp. 252~3.

67) 김준혁, “기다리는 고향,” pp. 64~5.

夫婦간의 사랑과 정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도 있다. 한 영예군인이 부른 노래 「안해의 얼굴」 68)에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단편소설 「남편의 배낭」은 보다 사실적이다. 69)

오늘은 특식을 잘 차려서 남편을 즐겁게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아니, 그런데 그이가 먼저 들어와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면 어쩔담.)
때없이 떠오르는 야릇한 생각에 영심의 입술이 봉싹해지며 웃음 소리가 새어나갔다.

층계를 두칸씩 뛰어넘으며 짐문을 열었다.
덜컥소리뿐 열리지 않는다. 영심은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방금까지 감겨들던 즐거운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들어오기전에 본때있게 상을 잘 차리자면 오히려 자기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것이 나을것이다.

식료상점에 가서 방금 들어온 <창광맥주>를 샀다. 남편이 술보다는 맥주를 더 좋아하니 거품이 부글부글 이는 시원한 맥주를 받아 들고 웃고있는 그 얼굴이 금시 보이는것만 같았다. 하긴 맥주를 좋아나 할뿐이지 한병이면 만족해하는 남편이다.

1990년 남북 영화예술제(뉴욕)에 출품된 예술영화 「우리는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다」 역시 가족의 다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母子의 애뜻한 정을 묘사하고 있는 詩 「비행사의 어머니」 70)와 「어머니와 아들」 71)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詩 「어머니의 모습은...」 72)과 「바늘」 73)을 통해서도 이는 잘 나

68) 진창우, 「조선문학」 (1993. 11), p. 23.

69) 로선희, 「남편의 배낭」 「청년문학」 (1991. 7), p. 30.

70) 립공식, 「조선문학」 (1994. 5), p. 13.

71) 변홍영, 「조선문학」 (1993. 5), pp. 26~7.

72) 위철현, 「조선문학」 (1994. 11~12), p. 79.

73) 문동식, 「조선문학」 (1995. 3), p. 69.

타나고 있다. 이 중 「바늘」은 교훈詩에 속하며 정치적 용어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감동적이다.

실을 꿰려 바늘을 손에 드니
 세상 떠난 어머니얼굴이 떠오른다
 밝은 전등 아래서도 실을 못꿰여
 <애야 이걸>
 바느실을 나에게 주시던 어머니

내 오늘 바늘주고 어린 딸을 찾는다
 <애야 이걸>
 어머니 하던 그 말을 내가 한다
 인생이 실처럼 긴줄을 알았더니
 지나보면 바늘처럼 짧은것이 아닌가

작은 바늘에 실을 꿰고 못꿰이
 짧고 늙음을 다 말해주거니
 길지 않는 인생길에 내 몸도 바늘처럼
 시간과 분과 초를 촘촘히 누비며
 빈자리없이 살아야 하리
 삶의 자욱자욱 빛내가야 하리

詩 「효성의 꽃이 되겠어요」⁷⁴⁾와 실화문학 「여섯남매의 아버지」⁷⁵⁾는 비록 수령과 당의 은덕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족간의 이별에 있어 그들의 애뜻한 사랑과 정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게 한다. 詩 「이슬맺힌 어머니의 눈길은...」과 「내 어머니 내 딸」⁷⁶⁾은 母女간 정감을 듬뿍 표현하고 있다.

74) 변홍영, 「조선문학」 (1994. 1), p. 56.

75) 김송인, “여섯남매의 아버지,” 「조선문학」 (1994. 1), pp. 57~60.

76) 전순애, 「조선문학」, (1993. 12), p. 56~7.

새로 제정된 '가족법'(1990. 10. 24)은 가족주의의 복귀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제15조는 “가정을 공고히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 담보”라 규정,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생산공장 가동이 저하되어 여성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공장에서 남녀 역할분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문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많은 주부들이 직장을 떠나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되자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이 한층 대두되었다.⁷⁷⁾ 이러한 상황변화는 유교적 가족원리에 입각한 家父長制와 소멸시키고자 했던 '여성의 재가정화'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강반석·김정숙을 모범적 아내·어머니 등으로 내세우고 부모공양, 자녀양육 및 교양 등을 중시하는 점도 '여성의 재가정화'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문학·예술 작품 등에서 가족간의 정과 사랑을 묘사하고 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공산정권이 본질적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⁷⁸⁾에서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적 원칙이 갈등하면서 중국적으로 집단주의가 가족주의보다 우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77) 귀순자 강형순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도시가 아니고 협동농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촌이 아닌 경우, 직업을 가진 여성은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80%는 가정주부로 남아 있다고 한다. 안계춘,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 16. 귀순자 임정희에 의하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10명 중에 6~7명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다. 김애실, “여성의 경제활동,” 정무장관(제2)실, 「북한여성의 실태」 (1990. 9), p. 186. 이 비율은 계층과 직종에 따라 다 같지는 않지만, 귀순자들 대부분이 미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은 90% 이상이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은 3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위의 글, p. 187.

78) 리화, “인간의 수업,” 「조선문학」 (1989. 7), p. 41.

어떠한 내용을 막론하고 가족주의가 집단주의를 우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이 지향하는 목표가 ‘사회주의적 가족주의’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가족주의’에서는 “혈연적 관계보다 동지적 관계가 더 중요한 것만큼 가족들사이의 육친적 사랑은 어디까지나 동지적 사랑에 복종되어야 한다.”⁷⁹⁾ 따라서 가족주의는 집단주의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도 북한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 분석대상으로부터 표면화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간의 끈끈한 연줄이 보편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소설, 영화, 詩들로부터 김일성·김정일이 아닌 부모가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은 혈연의 정과 사랑이 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가족고발장치까지 작동시켜 유교적 잔존이라고 여겼던 가정문화 타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의 가치관과 행위규범이 가정으로부터 완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당국이 의도한 ‘사회주의적 가족주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유교 전통적 혈연주의 및 가족주의가 점차 부활하면서 가정의 사회화 역할이 요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 10. 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16.

나. 家父長的 權威主義

유교적 의미에서 ‘家父長制’는 아버지 혹은 남편이 중심이 되어 가족구성원(어린 자녀와 연약한 아내)을 지배하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남성위주의 가족 통치관행을 말한다. 남편이 주요 아내가 補助인 점을 분명히 하는 女必從夫의 형태를 띠고 집안의 제일 어른이 家長이 되고 家父長的 權威主義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夫婦間을 上下主從의 관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家父長的 權威主義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초기 북한은 家長이 가족을 이끌고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家父長的 전통이 가족주의를 유발,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이를 혁파하려 하였다. 일환책으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 권위를 내세우고 남편 말에 절대 복종케 하는 家父長的 權威主義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편(그리고 시어머니)이 아내를 학대할 때 여성동맹과 같은 단체가 남편에 대해 압력과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家長은 사유재산제 폐지로 “과거처럼 자신이 관할 통제하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무런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가정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⁸⁰⁾ 없었기 때문에 家長의 절대적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었으며 父子間·夫婦間 권위적 主從관계의 청산을 중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적 가족관계의 개조과정에서 家父長制는

80) 이문웅, “북한의 사회와 가족형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編, 「한국사회론」 (서울: 민음사, 1980), p. 240.

완전 혁파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되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家父長制에 관한 내용은 여러 분석대상으로부터 나타난다. 영화 「마음에 드는 청년」에선 여주인공이 아버지 대신 오빠에게 결혼승낙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때 장자가 이를 대신한다는 家父長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 「새땅」⁸¹⁾에서 남편을 세대주라 하며, 가정에서 남편을 직접 대해서 말할 때에도 존경심을 담아서 이야기 해야 하며,⁸²⁾ 남들에게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주인’ ‘우리 세대주’라고 존경을 담아 이야기해야⁸³⁾ 하는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전통가정과 같이 북한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요 어머니가 보조적인 모습도 보여진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계몽용 TV드라마를 보면, 한 편의 예외도 없이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며, 무슨 거북한 일은 아내에게 미루려고 하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⁸⁴⁾ 아버지에 비교할 때 어머니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작품이 드물다.⁸⁵⁾

이와 유사한 父系中心 가족생활이 몇 소설을 통해서 들어 난다. 장편소설 「로동가정」⁸⁶⁾에선 아내가 남편을 어려워하면서 지극히 받들고, 「령마루」⁸⁷⁾에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혹시 조반

81) 현희균, 「새땅」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10.

82) “세대를 부르는 말,” 「천리마」 (1988. 11), p. 80.

83) “부부간의 호칭,” 「천리마」 (1981. 4-5), pp. 118~9.

84) 이은숙,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5), p. 187.

85)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북한영화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p. 62.

86) 김보행, 「로동가정」 (평양: 문예출판사, 1979), p. 123.

87) 엄단웅, 「령마루」, pp. 40~1.

들지 않고 출근할 지 모르는 남편에 대한 염려와, 남편을 정성껏 받들어 모셔야 함을, 단편소설 「직장장의 하루」 88)는 아내가 직장 일로 남편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편소설 「사랑의 샘」 89)에선 남편 위주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단편소설 「삶의 향기」 90)에선 “남편을 잘 보좌하는 아내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족내의 여성이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주인에 종속된 자 또는 남편의 보조자로 남아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가풍이 엄한 집안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할아버지와 손자」는 家父長的 權威主義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91)

채씨가문의 생의 터전을 마련한데다가 워낙 성미가 고정하고 엄한 할아버지여서 이 집안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과 같다. 숙방에서 손을 떼고 놓고있지만 그의 권위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현재 가정일을 주관하는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처럼 가풍이 엄격했으므로 채씨네 집은 동네에서 <모범가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화목했고 평온했다.

...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채승호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노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가 어째? 내가 한번 안된다면 안되는것이지 무슨 구구한 설명이나.>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이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꼭 할아버지와 의논하는데 할아버지의 견해를 존

88) 강복례, “직장장의 하루,” 「조선문학」 (1992. 8), pp. 19~20.

89) 김용환, 「사랑의 샘」 (평양: 문예출판사, 1975), pp. 8, 34.

90)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 (1991. 11).

91) 김룡태, “할아버지와 손자,” 「조선문학」 (1992. 9), p. 55.

중했고 그앞에서 매우 공손하였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성을 내어 소리치는 일이 있을수 없었다. 그렇다면 저 성난 목소리는 무엇때문인가? 어쨌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견해에 엇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인데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어 채승호는 불안해졌다.

일부 귀순자들은 夫婦有別, 女必從夫 등이 북한가정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임정희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⁹²⁾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여자에게도 똑같이 일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 부엌일은 고스란히 여자의 몫이다. 남편에 복종하고 심지어 길을 건너라도 남편의 뒤를 따라 가는 것이 보편적이고,⁹³⁾ 고된 생산활동에도 점심시간에는 집에 와서 남편의 점심을 차려주고 다시 일터로 나가나 크게 불만이 없다고 한다.⁹⁴⁾ 보다 직설적으로 한상권은 “집안에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다.”⁹⁵⁾ 이러한 증언들은 家父長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남편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아내의 태도를 담은 내용도 있다. 북송교포인 한 부부를 모델로 한 소설 「조국의 품속에서」⁹⁶⁾는 낡은 사회제도하에서는 서로에 대해 깨우치지 못해 아무일도 없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돌아와서 녀자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를 자각하게 되고 또 자

92) 귀순자 임정희의 증언,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147.

93) 귀순자들의 증언, 안계춘,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 p. 17.

94) 귀순자들의 증언, 위의 책, p. 15.

95) 귀순자 한상권 면담, 1995. 12. 6.

96) 류벽, 「조국의 품속에서」, p. 145.

기자신의 생활을 갖게 되자 머리를 쳐드는데 ..." 하고 아내에 대한 불만을 남편이 토로하고 있음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家父長的 權威에 반발하는 내용도 있다. 아버지도 어려워하는 할아버지에 대해 손자가 할아버지의 命을 거부하는 모습을 담은 「할아버지와 손자」에서 보여진다.⁹⁷⁾

가풍이 엄한 이 채씨집안에서 유독 승호만이 할아버지와 그런 식으로 주저없이 말할수 있었다. 승호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승호의 응석만은 받아주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승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어긴적은 없었다.

승호가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면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잘못하셨다고 <공격>을 들이대자 할아버지는 꼼짝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승호는 눈을 번뜩이며 속에 맺힌것을 다 쏟아놓았다. 승호로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씩 나가!>

할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쉬면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하실줄로 알았는데 대뜸 나가라고 내쫓으며 숨을 헐떡이니 승호로서는 좀 당황해졌다.

<나가겠습니다.> 승호는 돌아섰다.

<이, 이놈!>

이렇게 웨치고 할아버지는 까무라쳤다. 집안에 소동이 벌어지고 곧 구급차가 달려왔다.

위에 묘사된 바와 같이 家父長的 권위에 대한 상반된 표현이 있다. 그러나 귀순자 이옥금은 이를 다른 차원에서 증언한다.⁹⁸⁾ 남편들은 직장근무와 퇴근 후 TV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이며 서

97) 김룡태, "할아버지와 손자," pp. 57~8.

98) 귀순자 이옥금 면담, 1995. 4. 7.

로 이야기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전화가 없고 여행구간이 멀어 연락하기가 힘들며 오락기기 및 술을 마실 곳이 없어 외도를 해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다. 바꾸어 말하자면, 각자 생활하기 때문에 家長의 권위가 있고 없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집안의 家長에 반발하는 내용이라던가 夫婦간의 무관심 등이 비추어지지만 극히 한정적이다. 이에 비해 家父長制를 묘사하는 내용이 여러 분석대상으로부터 표출되며 이러한 실례들이 거의 사실임을 귀순자의 증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들이 집안의 家長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貞節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이혼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점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당국이 夫婦관계 그리고 姑婦간의 관계를 主從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에 의존적·종속적·복종적으로 되기 보다는 서로 돕고 발전하는 혁명적 동지가 되기를 바라며, 며느리로서 시어른을 공경하고 잘 섬기되 이 역시 일방적인 上下위계질서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할 필요는 없고 상호 이해 및 인식을 규범으로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家長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평등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家父長制는 북한가정에 사회주의적 가족원리와 유교적 가족문화가 동시에 병존하는 가운데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북한이 타파하려고 했던 가족주의가 복귀하고 있으며, 여성이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증대하고, 家長의 권위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家父長制는 집단주의를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원칙아래 존재할 뿐이다.

다. 孝

父子有親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父子)를 의미하면서 父子間에 합당한 도리를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유교적 행위규범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孝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의 ‘反哺之孝’는 當然之事이다.

‘反哺之孝’는 북한의 ‘가족법’ 제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잘 나타난다. 전자는 부모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후자는 자식의 의무와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은 “일부사람들은 마치도 공산주의 혁명가는 가정도 모르고 오직 혁명만을 아는 인정미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이다”라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모처자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 수” 없다는 논지에서 비롯된다.⁹⁹⁾

9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p. 216.

그러나 초기 북한 공산정권은 孝가 집단주의 생명관에 위배된다고 판단, 孝의 관념을 당과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었을 경우에만 정당화 하였다. 혈연적 관계를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주의의 점차적인 복귀와 함께 1985년 '5戶담당제' 해체로 자식들은 부모의 해당행위에 대한 그들의 밀고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 孝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강한 애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및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 의해 변질된 孝의 방향을 다시 부모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설로부터 보여진다. 「기다리는 어머니」¹⁰⁰⁾는 不孝子息이란 표현을 쓰면서 孝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심정을 그리고 있고, 중편소설 「분수령」¹⁰¹⁾은 딸의 지극한 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편소설 「삶의 룰리」에서 '존경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쪽지편지로부터 아들의 효성에 대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건강치 못한걸 생각하면 이 아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 귀한것은 아니나 나와 가까운 동무에게 부탁하여 이 약을 구했습니다. 일반상태를 돌구는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성의로 아시고 료양기간에 꼭 써주십시오.”¹⁰²⁾ 이와 유사하게, 중편소설 「세대」¹⁰³⁾는 부모에 대해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구사하면서 자기를 키워 준 부모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식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100) 로정법, “기다리는 어머니,” p. 42.

101) 림재성, 「분수령」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9), p. 77.

102) 김익철, 「삶의 룰리」 (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53.

103) 김삼복, 「세대」 (평양: 문예출판사, 1985), pp. 104~105.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도 전통적 孝의 일종이다. 소설 「새땅」은 “시어머니는 언제나 생활의 스승으로, 살림살이의 원로격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¹⁰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시부모를 지극히 섬기려는 며느리의 자세를 잘 보이고 있다. 물론 세대간 격차나 개성의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이 경우 며느리쪽이 일방적으로 비난받는다.¹⁰⁵⁾

상기의 내용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담고 있으며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여기고 있다. 여러 귀순자들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홍금수와 진광호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이 아주 강하고,¹⁰⁶⁾ 김광욱과 김동훈은 강하다¹⁰⁷⁾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효성이 모두 지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대호와 정기해는 효성이 그냥 보통¹⁰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효성이 약하다고 증언하지 않은 걸 볼 때 북한 가정에서 孝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중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부모 섬기기를 부담으로 여기는 내용도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단편소설 「저녁노을」에서 잘 나타난다.¹⁰⁹⁾

104) 현희균, 「새땅」, p. 11.

105) 국토통일원, 「북한체제 변화실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 21. 귀순자 김정민(1995. 9. 11)에 의하면, 북한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남한보다 적다고 한다.

106) 귀순자 홍금수 면담, 1995. 4. 12; 귀순자 진광호 면담, 1995. 4. 17.

107) 귀순자 김광욱 면담, 1995. 4. 13; 귀순자 김동훈 면담, 1995. 4. 11.

108) 귀순자 김대호 면담, 1995. 4. 14; 귀순자 정기해 면담, 1995. 4. 18.

109) 김태호, “저녁노을,” 「신념의 대오」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52.

간혹 제 부모를 모시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을 볼 때면 마음이 언짢던 유성이다.

낳아 키운 정! 정녕 무심히 뇌일수 없는 말이다.

어머니의 생의 기쁨과 보람이 자식을 어엿하게 키우는 그속에 다 담겨져있다. <낳아 키워준> 그 말속에 담겨진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소라도 안다면 그럴수가 도저히 없는것이다. 더구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행복한 오늘을 위하여 바쳐온 붉은 피와 구슬땀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어찌 그럴수가 있는가.

유사한 관점에서 귀순자 이옥금은 不孝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식구 수를 줄여야 편하기 때문에 결혼시켜 내보내며, 자식입장에선 장남이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열어지며, 시부모를 거두지 않으려는 여성이 늘어난다.”¹¹⁰⁾ 분가후 父子간, 姑婦간 서로 왕래하기를 꺼리는 이유도 식량문제로부터 기인된다.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養口體가 실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이 孝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담겨져 것은 養口體가 북한의 경제난으로 실지 힘들기 때문이다. 유교적 의미에서 참된 孝가 부모의 뜻을 받드는 養志임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孝道觀은 -- 여러 분석대상을 참조할 때 --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가족형태를 통해 그리고 國家家父長的 의식을 통해 인민의 아버지가 바로 김일성이요 김정일이 이를 계승하고 있고 아버지 수령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자식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0) 귀순자 이옥금 면담, 1995. 4. 7.

그러나 孝가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건설을 우선할 순 없다. 이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부모의 뜻이 무시되는 단편소설 「결의」 111)를 통해 잘 묘사된다. 이는 유교적 上下主從關係의 입장에서 부모의 뜻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孝가 사회주의 건설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의거해 집단·조직이 있고 개인이 있는 것이지, 개인이 있기 때문에 집단·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孝의 차원에서 행해지던 유교적 조상제사의식은 북한이 이를 미신행위로 그리고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로 간주하고, 휴전 후 제사를 치르는 것을 금하였다.¹¹²⁾ 그러나 1958년 제3차 당 대회 이후부터 黨은 제사를 완화하기 시작한 후, 1960년대 말부터 직계존속의 경우 사망 시부터 탈상 때까지 이를 묵인하였다. 이는 전통적 제사방식이 아닌 ‘사회주의적 제사’로 치러졌다. ‘사회주의적 제사’란 간소한 방식의 제사를 의미한다.¹¹³⁾ 1988년 이후부터는 4대명

111) 김송인, “결의,” 「조선문학」 (1992. 5).

112) 그 이유는 1) 戰亂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시기에 제사를 핑계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던 당에 대한 불만에 제기될 수 있고, 2) 제사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낭비되고 이것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손들의 불평·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3) 제사를 통하여 친족관념을 강하게 하고 宗派思想과 分派主義를 조장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공산집단의 전통문화말살」 (서울: 자유평론사, 1980), p. 124.

113) 김일성이 ‘전국농업자대회’(1974. 1. 10)에서 한 연설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다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 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7」, p. 21.

절을 휴무일로 지정함과 함께 祭禮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마다 돌아오는 故人의 제사날이 되면 그이 생전시의 혁명 과업에 대한 비판과 繼承을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黨이 착안한데서 비롯된다. 제사의식을 통해 주민에 대한 洗腦教育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당의 의도가 숨겨져 있으나, 장례, 조상제사, 성묘 등 유교적 전통풍습이 의식이 간소화된 형태로나마 유지되고 있음은 북한 주민이 조상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게 한다.

2. 社會에서의 儒敎文化

가. 男性優位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남녀 역할분업이 있었다. 남성은 대외적인 활동을 주로 하며 여성은 자녀 돌보기와 가사 일에 전념하였다. 유교적 의미로 夫婦有別이다. 그러나 초기 북한공산정권은 앵겔스의 사회주의 가족관에 기초, 남녀평등과 전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모색하는 사회주의 가족원리를 추진하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장려하였다.

북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주체적·혁명적·도덕적 여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30) 공포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1946. 9. 14)의 발효를 통해,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평등하게 하면서 여성 해방을 목표로 삼았다. 同법령 제1조는 “국가, 경제, 문화적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

을 가진다”라 명시, 남녀차별, 호주호적제도, 강제·매매결혼, 일부다처제, 공사창, 기생제도의 금지, 장자우대불균등 상속제 등을 폐지하고,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 남자와 같은 노동권리와 동일임금, 이혼의 자유, 재산상의 동등권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배 등을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남녀평등은 ‘사회주의 헌법’(1972. 12. 27)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제62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명시, 여성들을 잡다한 가정일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진출의 기회를 법적으로 제공하였다.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한층 상승시킨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 전통사회로부터 내려 온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종·복종과 가부장적 지향을 없애고 여성해방을 표현한 것이다. 법령세칙을 통해 여성들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차별대우를 금하게 하고, 여성을 부업과 가정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제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목적은 해방과 전쟁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 산업화 과정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으로 메우기 위해서였다. 성역할 분업에 입각한 공사영역의 분리를 지양하고, 여성도 공적인 생산영역에 적극적으로 통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이 가능하리라 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¹¹⁴⁾한 것이었다. “수레의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듯이 사회에서 남자들만 역할하여서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수”¹¹⁵⁾ 없다면 여성 사회진출을 단순한 행정실무적 조치 차원이 아닌 하나의 중대한 정치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촉진키 위해 김일성은 여성들에게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하면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며” 조혼을 하면 ‘시대의 낙오자’라는 경고를 주면서 그들에게 만혼을 권장하고 활동적 여성의 생산작업을 확충시키려 하였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을 촉구하고 산업화 시대에 여성이 산업전선에 참여할 것을 중용하고 있음이다. 이는 다음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집안에 파묻혀있어가지고서는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농작이나 뒤적거리고 남편과 아이들의 시중을 하는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 벽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을 체험할수 없으며 쌀이 얼마나 귀중한지, 천과 신발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안일해이해지고 자기 혼자만 잘 살아보려는 리기주의사상이 자라나게 되며 나중에는 나라와 사회를 쪼먹는 식충이로 굴러떨어질수 있습니다.¹¹⁶⁾

북한의 소설, 영화 등은 사회일꾼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소설 「비단섬」¹¹⁷⁾은 여성을 노동일꾼

114) 전숙자, “북한의 사회교육을 통해 본 여성상”(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북한문화와 여성생활」 발표논문, 1994. 12. 15), p. 70.

115) 김정일,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1. 10. 7), p. 379.

116) 위의 글, pp. 381~2.

117) 현희균, 「비단섬」, p. 338.

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중편소설 「조국의 품속에서」 118)는 여성이 직장생활로부터 느끼는 뿌듯함과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단편소설 「새벽노을」 119)은 처녀운전사의 열성을, 「나는 탄부의 안해예요」 120)는 탄광에서 남편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 「붉은기」 121)는 철도공장에서 남성도 하기 힘든 고된 일을 여성이 견디어 내는 걸 잘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도라지꽃」, 「편지」, 「산정의 처녀기」, 「청춘의 심장」,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 등은 여성들이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영상화하여 여자도 남자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에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도록 부추기고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도 있다. 1990년대 초 북한에서 유행한 “여성은 꽃이라네”란 대중가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가정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아들딸 영웅으로 키우는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위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네.

118) 류벽, 「조국의 품속에서」 (평양: 문예출판사, 1971), p. 104.

119) 지영환, “새벽노을,” 「조선문학」 (1993. 2).

120) “나는 탄부의 안해예요,” 「조선녀성」 (1980. 4), p. 36.

121) 림재성, 「붉은기」 (평양: 문예출판사, 1983), p. 443.

이 노래는 ‘혁명성’과 ‘여성다움’, ‘母性’¹²²⁾같은 전통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적 여성상을 보이고 있다.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꽃을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그들에게 가정, 사회, 국가에서 요구하는 혁명적 과업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명기시키고 있다. 김일성의 발언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혁명성과 함께 여성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녀성들이 자신의 해방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요.. 녀성은 녀성다와야 하오. 레절있고 검박한 언행과 몸가짐은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이오.”¹²³⁾

母性を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여성의 재가정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한 假定은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면 여성의 재가정화 대신 여성의 인력활용을 위해 남녀평등 및 여성해방정책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지만 그들이 주장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여성인력활용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들이 바라는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여성의 지위와 권리는 가정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유교적 경향의 남녀불평등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122) ‘여성다움’은 곧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의존성과 같이 전형적인 여성성을, 그리고 ‘母性’은 곧 어머니의 헌신성, 자애로움을 의미한다. 전숙자, “북한의 사회교육을 통해 본 여성상,” p. 81.

123) “녀성은 녀성다와야 하오,” 「조선녀성」 (1989. 4), pp. 4, 5.

남성우위는 부모들이 男兒를 선호하는 경향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남아선호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력 제공의 대가가 높기 때문이다. 여성은 -- ‘사회주의 로동법’ 제37조에,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남성에 비해 고된 일과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주로 주부)의 생산참여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은퇴 후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男子息에 의지하려 한다. 양녀보다 양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가족의 기능 가운데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을 중시하고 가족성원간의 상호 부양을 의무로 하는 유교적 관습을 그리 벗어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男兒가 혈통의 맥을 잇는다는 유교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손주를 간절히 바라고 며느리는 그의 뜻을 받들기 위해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감행하는 내용의 영화 「사랑의 노래」는 대 잇기 면모를, 장편소설 「거센 흐름」¹²⁴⁾과 중편소설 「끝은 길」¹²⁵⁾에선 어머니가 男兒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이는 나타난다. 귀순자 한상권은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¹²⁶⁾ 보다 직설적으로 김일성이 “어떤 사람들은 안해가 아들을 못낳는다고 해서 리혼하려고 합니다”¹²⁷⁾라 말할 정도로 남편이 男兒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124) 윤시철, 「거센 흐름」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5).

125) 김보행, 「끝은 길」 (평양: 문예출판사, 1970).

126) 귀순자 한상권 면담, 1995. 12. 6.

127)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연설, 1961. 11. 16), 「김일성저작집 15」, p. 337.

이러한 실례들을 토대로 볼 때, 북한여성들(특히 주부)이 산업일꾼으로서의 생산적 존재가치가 떨어지자, 주 생산인력이자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남성을 보좌하는 부차적인 존재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여성의 존재는 “일차적으로 남성들과의 관계에 놓여지고, 남성들은 국가와 김일성에 대한 충성으로 되어 있어 여성들의 입지는 對사회나 김일성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상태”¹²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나. 長幼有序

북한에서 경로사상은 1990년에 제정된 ‘가족법’을 통해 재차 강조되었다. 가족윤리의 확장인 長幼有序를 권장해 연장자는 분별있게 행동하고 연소자를 사랑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존중함으로써 사회·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서게 하려 하였다.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보다 중요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귀중한 동지로서 존경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웃사람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래사람을 따듯이 보살피 주고 이끌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²⁹⁾ 자기의 부모와 자식을 대함을 다른 어른과 어린이에까지 미치게 하려는 유교문화의 전통이 북한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범절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28) 김현숙, “북한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북한문화와 여성생활」 발표논문, 1994. 12. 15), p. 64.

12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p. 216.

「조선녀성」에선 나라의 꽃이며 생활의 꽃인 여성들이 부모와 노인을 대함에 고상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항상 갖추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¹³⁰⁾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는 강조된다. 지하철도나 버스에서 어른들을 존중하여 자리를 양보하고 동네에서도 웃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집도 같이 들어주는 등의 행동을¹³¹⁾ 아이들에게 실천적으로 행해야 할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공경에 대한 강조는 몇 소설에서 보여진다. 단편소설 「저녁노을」에선 애들이 동네 할머니를 할머니로 어른은 어머니라 부르고, 소설 「사랑의 샘」에선 이웃 아주머니를 작은 어머니로, 「먼길」에선 친구의 할머니와 누나를 할머니와 누나로 부르는 등 이웃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로사상은 아래의 기술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이 오래간만에 딸네집에 가느라고 어찌다 한번씩 뺨스를 타겠는데 버스안이 너절하고 추워서 할머니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걸모양이 곱고 안이 깨끗한 좋은 뺨스들을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려행하는 농촌주민들이 조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³²⁾ 공경의 자세는 노인을 친절히 맞이하는 「결의」¹³³⁾에서도 나타난다.

130) 「조선녀성」 (1994. 2), p. 36.

131) 「조선녀성」 (1989. 6), p. 36.

132) 김일성, “농업근로자 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2. 2. 16), 「김일성저작집 27」, p. 82.

133) 김송인, “결의,” p. 35.

그렇다고 소설에서 경로만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단편소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선 자본주의 색채를 풍긴 한 노인을 향해 가차없는 비판과 무례를 범하고 있다.¹³⁴⁾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그래, 령감은 대체 뭘하는 사람이우?>
 <해해... 그저 이러루한것들을 만들어 먹고사네. 임자나 다같은 로동자야.>
 <로동자라구?>
 나는 령감을 노려보았다.
 <그래, 령감이 로동자가 뭘지 아우?>
 <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제손으로 벌어먹는 사람이 로동자지 별 것인가.>
 <제손으로 벌어먹으면 다 로동잔줄 아우? 그래, 령감은 무엇때문에 일하우?>
 <먹고살자구 일하지. 새끼들을 먹여살리구 입히구... 그야 누군들 그렇지 않겠나. 임자두 공연히 흰목을 뽑네만 돈을 아니주면 일을 하겠나?>
 (이 령감이 사람을 어떻게 보구... 벌어먹을!)
 ...
 나는 령감을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령감, 로동자를 다시한번 그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무사치 못할 줄 아우.>
 <아니, 내가 어쨌단말인가? 이게 무슨 행패야. 영?>
 <그리구 다시는 다같은 로동자라는 말은 하지도 마우. 우리는 돈을 바라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알겠소? 돈은 령감혼자나 벌란말이요.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공장, 광산 같은걸 다 로동자들에게 돌려주신다는데 우리가 그래 령감의 그 때묻은 부스럭돈에 군침을 흘릴줄 아우?>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다.

귀순자 김영성의 고백에선 “녕감 더럽게 늙었구만” 말하는 등 늙은이에 대한 심한 무시를 나타내고 있다.¹³⁵⁾

134) 리성덕,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문학」 (1992. 4), p. 74.

135) 귀순자 김영성의 증언, 김영성, 「오, 수령님 해도 너무 합니다」 (서울:

이런 분위기를 못마땅히 여겼는지 여단장이 지나가는 대원을 붙잡아 세우고 콘크리트 벽의 곰보가 된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도 손으로 한 거야? 까치 등지 같은 여기를 털어내고 재시공하시오”했다. 그러나 대원은 말이 없다. 화가 치민 여단장은 그의 소속을 물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여단장을 힐끗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이 녀감도 대체 누구야. 지시할 것이 있으면 분대장이나 소대장을 통할 것이지”하는 말끝에 “녀감 더럽게 늙었구만”하고 악을 올렸다.

노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단편소설 「딸의 고민」에선 늙은이들이 존정보다는 동정을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¹³⁶⁾

... 어떤 사람들은 <괴벽한 령감>, <까다로운 령감>이라고까지 했다. 부모들이 늙었다는것을 깨닫는다는것은 서글픈 일이다. 더 슬픈것은 부모들의 늙음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령감 나이들수록 점점 더 괴벽해져...>

<늙으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

<그 령감 인제는 좀 그만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소설과 고백 등에서 묘사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동정(또는 무시) 차원을 뛰어 넘어 실생활에서 노인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귀순자들의 증언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어떤 특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귀순자 김대호·정기해는 “공경이 약하다,”¹³⁷⁾ 심지어 진광호는 “아주 약하다”¹³⁸⁾고 말하고 있다. 60까지 맞먹는다는 의미의 “60이 동창이다”란 말이 이미 유행어가 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특히 비행 청소년)들이 어른들에 거리낌없이 담배불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136) 한웅빈, “딸의 고민,” 「신념의 대오」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258.

137) 귀순자 김대호 면담, 1995. 4. 14; 귀순자 정기해 면담, 1995. 4. 18.

138) 귀순자 진광호 면담, 1995. 4. 17.

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나 전철 등에서 관련없는 노인에게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경향이 사라지고¹³⁹⁾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전통적 노인공경자세가 일반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승에 대한 존경 역시 상반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스승공경에 대해 알아보면, 교원을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 숨은 노력가로서 간주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문화와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교원,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훌륭한 미덕으로”¹⁴⁰⁾ 여길 정도다. “스승을 받드는 정도가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하다”¹⁴¹⁾고 한 前 김일성대학 교수, 조명철 박사의 증언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귀순자 홍금수와 김동훈 역시 이를 공감하고 있다.¹⁴²⁾

반면 귀순자 김대호와 오명선은 다르게 증언한다. 최근 고등중학교 교사들이 비사회주의 척결 명목으로 학생들을 “김정일 원수님께 충직한 아들, 딸이 되자는 구호에 걸맞게 교양한다”며 학생들의 사소한 잘못까지도 날날이 꾸짖으면서 구타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처음엔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있다가 점차 그 횡수가 누적되자 교사들의 비리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드는가 하면,

139) 귀순자 김정민 면담, 1995. 9. 11. 그러나 누군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거역시 신분사항이 보도되어 어떠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40) 변영립,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자,” 「근로자」 (1987. 5), p. 69.

141) 귀순자 조명철 면담, 1995. 8. 17.

142) 귀순자 홍금수 면담, 1995. 4. 12; 귀순자 김동훈 면담, 1995. 4. 11.

누적되자 교사들의 비리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드는가 하면, 밤에는 교사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단구타를 하는 등 보복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¹⁴³⁾

스승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교교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각종 잡부금 및 물품¹⁴⁴⁾을 징수하여 불만이 팽배하고 대학교원 역시 뇌물을 즐겨 받는 데 어떻게 스승을 존경할 수 있겠는지 사실상 의문으로 남는다.

웃어른에 대한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長幼有序가 보편적이 아닌란 걸 엿 볼 수 있다. 유교적 ‘親親而仁民’이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운 집단에서 스승 및 어른에 대한 공경은 아주 강하나 이 외 집단에서의 공경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무직에 비해 노동직 종사자들의 공경심이 형편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¹⁴⁵⁾으로 보는 조명철의 증언은 공경과 존경이 보편적이

143) 귀순자 김대호·오명선의 증언, 「최근북한실상」 (1995. 8), p. 15.

144) 각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중등반의 외화벌이 운동의 하나인 ‘꼬마계획’ 사업중 토끼기르기, 나물캐기, 파지·고철수집 등의 목표 미달자에게는 월 2원을 납부케 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시에는 교사독려 및 환경미화 등의 명목으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수시로 1인당 10~15원 정도 내게 하며, 매 신학기마다 교실을 미화한다고 비품 또는 돈을 가져오게 하는가 하면, 졸업 때는 학교에 남길 기념품 구입비로 학생 1인당 30원 정도를 강제 할당하고, 특히 건설현장 및 농촌을 지원한다던가 야영, 답사, 견학 시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시멘트, 도색류, 술, 담배 등을 징수하는 등 학교 사로청 및 소년단 소속 교직원들과 교사들이 각종 잡부금 및 물품을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각 학급 담임교사는 교사대로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학교에 열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는 상급학교는 어렵도 없다”며 학생을 구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학부모들은 최소한 담임교사 점심도사락이라도 싸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북한실상」 (1993. 8), pp. 33~4.

145) 귀순자 조명철 면담, 1995. 8. 17. 그는 공경심에 대한 회석은 생활총화에

지는 않지만 교육을 잘 받은 자는 웃어른 섬기기도 잘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사회의 특수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근대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을 예로 들자면, 공경과 존경이 지켜야 할 생활윤리로 남아 있지만 웃어른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인격 및 행위가 지극히 바른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경우 인격 및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나 아니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기 때문에 북한 공산정권에 협력치 않은 자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朋友有信

북한 주민은 이미 신분계층화되어 있다. 때문에 인간관계는 주로 유사한 계층과 직장동료간에 형성되어진다. 북한 당국은 사람들의 모임을 파벌주의의 요인이 된다고 믿어 친목단체들의 조직을 금지하고 감시체제를 가동해 인간관계를 경계하고 있다. 김정일은 체제에 대한 불평불만의 확산을 우려, (1) 3명 이상이 모여 음주하지 말것, (2) 조직생활 이외에는 3명 이상이 몰려다니지 말 것, (3) 자정 이후에는 불 켜는 일이 없도록 할 것¹⁴⁶⁾ 등 3개항의

서 비롯된다고 한다. 나이 차가 상당히 나더라도 생활총화에 들어가면 동등의 입장에 놓여 연장자에 대한 연소자의 무례한 행동이 자주 범해지며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6) 「최근북한실상」 (1992. 12), p. 21.

포고령을 하달하였다. 이로 인해 회갑 결혼식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전에 인민반에 보고해야 하며 차후 참석한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등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타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율타리 안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동료를 만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간의 의리나 신뢰 등은 체제나 이념에 상관없이 형성된다. 어려운 생활을 타개하기 위하여 끼리끼리 유대를 도모하고 싶은 친구라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¹⁴⁷⁾하려 하기도 한다. 서로 낯을 익혀 놓으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안면 차원을 뛰어 넘어 끼리끼리 모여 派를 형성하기도 한다.

물론 교제와 친분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는 1994년에 귀순한 대부분이 친구지간 믿음과 신뢰는 강하거나 보통이라고 하고 아무도 약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다.¹⁴⁸⁾

“친구중 누가 생일을 맞으면 평양의 전승각이나 청류관과 같은 고급 식당에 가서 한달 용돈을 한순간에 다 써버리고도 걱정보다 친구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었다는 생각에 흐뭇해하곤 했다”¹⁴⁹⁾는

147) 귀순자 정기해 면담, 1995. 4. 18.

148) 귀순자들 면담, 1995. 4. 12~18. 주로 집이나 공원 강변 등에서 친구들과 오붓하게 얘기하면서 친목을 돈독히 하고, 망년회나 애 돌잔치와 같은 집안 행사에 직장동료들이 모여 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잘 알 수 있다.

149) 귀순자 전철우의 증언, 「동아일보」, 1995. 8. 20.

전철우의 이야기는 친구를 위하는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최근엔 군·대학 등의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서로 믿고 살기 위해,’ ‘개인적 요구를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과거에는 종파분자로 몰려 처벌되었던 의형제 결의 등 소규모 조직을 암암리에 결성, “어떤 사상체제하에서도 의리만은 변치 말자”는 굳은 다짐을 하는 풍조가 유행¹⁵⁰⁾하고 있음을 볼 때 아주 각별한 친구지간에는 사상보다는 義가 앞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허물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일단 서로 경계할 필요가 있는게 보편적이다. 한 귀순자에 의하면, 아주 친한 친구지간에 의리와 신의가 있고, 친한 친구 둘이 모이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한 친구가 자신의 해당행위에 대해 밀고를 하더라도 끝까지 발뺌하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더 있는 경우 발뺌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귀순자 이옥금의 증언 역시 북한사회에서 친구지간의 의리와 신의를 축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계층간에는 생활고와 연관 정치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를 고발하는 경우는 없다.”¹⁵¹⁾ 또한 근래에는 인민들이 각성하여 밀고는 상당히 감소되었고 어지간한 불평은 서로 받아 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행위, 즉, 김일성·김정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사상적

150) 「최근북한실상」 (1993. 11), pp. 6~7. 보통 의형제의 경우는 3명 이내, 소규모 조직은 10명 미만으로 한정하여 결성하는데 이들은 서로 정표를 교환하거나 ‘입묵’(문신)을 하고 ‘사상보다 의리’를 위해 행동을 통일할 것을 굳게 약속하고 있다.

151) 귀순자 이옥금 면담, 1995. 4. 11.

발언을 가했을 때 가차없이 밀고 또는 고발하므로 정치적 애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 화해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핵심뇌수인 수령과 참모부인 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바로 적대행위이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체제비판적인 친구를 고발하는 것은 바로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지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朋友有信은 정치비판적 사안이 걸려 있지 않을 경우만 가능하다.

第 V 章 金日成父子 偶像化를 위한 儒敎的 政治社會化

김일성·김정일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작업은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주체사상을 모체로 집단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主體思想,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등에 의해서는 김일성 우상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정·학교·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교양·학습에 의해 김일성 개인숭배를 고착화시키고, 아울러 통치차원의 계층관리를 통해 일인독재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第IV章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주민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변화를 겪긴 했으나 상당부분 유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이 章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규범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1. 國家 家父長制의 適用

통치적 차원에서 김일성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과정과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공산주의 계급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家父長制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김일성 우상화작업과 김정일 후계체계수립 과정에서 국가적 수준의 家父長制가 등장하였다. ‘家父長的 忠孝觀’을 ‘國家 家父長制’에 교묘히 적용시킨 것이다. 國家 家父長制는 통치자가 주인이며 통치 받는 자는 家臣이

된다. 그것은 주인이 家臣에 온정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家臣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治者며 절대군주인 반면 인민대중은 被治者며 종속자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후자의 절대적 ‘충성’과 ‘복종’¹⁵²⁾은 평생 강요된다. 인민대중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된 효도의 연장으로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유교사회, 즉 가족 국가에로의 전환”¹⁵³⁾을 모색하고 있다.

수령에 충실해야 할 이유는 주체사상에 의해 우선적으로 설명된다. 인간중심 세계관을 표명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의해 표현된다. 자주성이란 외부의 간섭과 개입없이 김일성의 무한한 영도 하에 스스로를 꾸려 나감을 의미한다. 특히 사상에서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다. 이 집단의 의지는 수령의 것이므로 그 주체는 김일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수령유일체제를 확립하는 정당성을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은 민족적·자주적 의지를 담으면서 민족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단순한 주인의식의 수준을 뛰어 넘어 당의 유일사상과 결부해 김일성에 대한

152) ‘충성’과 ‘복종’은 구분된다. ‘충성’은 어떤 구실로 향해 있는 것이든 타인을 위해서건 집단을 위해서건 간에 -- 도덕적 신념이라는 이름 하에 -- 개인적인 것으로 깊숙이 자리하며, ‘복종’은 개인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내면적으로 양심과 관계할 수도 있으나 외적으로는 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다. J. Royce, *The Philosophy of Loyalty* (New York, 1909), pp. 16-7, 162, 357 이하, J. Ching, 「유교와 기독교」, 임찬순, 최효선 譯 (서울: 서광사, 1993), p. 16에서 재인용.

153) 이문웅,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 - 사회조직 및 신앙체계를 중심으로,” 한상복 編, 「한국인과 한국문화 - 인류학적 접근」 (서울: 심설당, 1982), p. 218.

위대성과 신비성을 합리화하면서 그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 충성과 개인적 상징주의 간의 구별을 체험하지 못한 주민을 외부세계와 완전 차단된 사회에서 일방적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집이 곧 국가’라는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⁵⁴⁾

또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주인의식을 강력히 심어 주고, 세계발전과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래야만 사회역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사회발전 및 사회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아닌 수령이므로 그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가족을 한 단위로 보는 대가정에서 수령과 인민대중은 治者와 被治者의 관계로 되어 있고 김일성은 최고 가부장적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그에 대한 충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어버이로 끝없이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¹⁵⁵⁾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154) 김갑철,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우사, 1984), p. 197.

15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 5. 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67.

이러한 당연성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전체사회로 비유해 집합주의화를 모색하고 있는 ‘有機體的 家族國家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수 있기때문 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때문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갑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 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 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보지 않을것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¹⁵⁶⁾

자기를 낳아 키워 준 생명의 모체인 부모에 효를 다하고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이끌어 준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모가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수령, 당, 조국이 정책적 잘못을 유발했다고 해서 수령, 당, 조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명기시키고 있다.

수령에게 忠孝를 다해야 할 또 다른 당위성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으로부터 얻어진다.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의 모든 성원들에게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력을 부여한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156)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66.

부모는 육체적 생명의 은인으로서 자식에게 육체적 생명을 줄 수는 있지만 사회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깃든 사회정치적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수령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 준다. 부모나 스승은 자식이나 제자의 생활을 돌 볼수 있어도 그들의 사회정치적 운명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든 성원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그들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따듯이 보살피준다. 이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은인, 스승, 어버이로서의 수령의 사랑과 은덕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 은덕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것이다.¹⁵⁷⁾

부모로부터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받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모체로부터 유리되어 성장하며, 육체적 존재가 죽으면 소멸되는 생명이므로 한계가 있으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깃들어 있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을 주는 부모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집단의 최고대표자를 받들어야 할 단순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혁명적량심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적 의무로 된다.¹⁵⁸⁾

그렇다고 누구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과 당에 대해 절대적·무조건적 충성과 효성을 다할 때 영생불멸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 받을 수 있고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¹⁵⁹⁾(1974. 4. 14)을 따르는 길이야 말로 수령이 부여한 사회

157)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생명체」, p. 57.

158) 위의 책.

159) 그 내용은 1) 수령(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목숨바쳐 투쟁, 2) 수령을 충성으로 존경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함, 3) 수령

정치적 생명과 정치적 배려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자신도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개인숭배와 그의 유일영도체계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수령의 無誤謬性和 全知全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주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易姓革命도 용납한 원시유교나 陽明學의 전통보다 더욱 더 보수적인 것”¹⁶⁰⁾이다.

김정일의 권력세습은 家父長制의 특징인 친자상속을 완성하는 것이며 장자승계를 정통으로 하는 한국적 권력이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에선 이를 ‘후계자론,’ ‘혁명계승론,’ ‘세대교체론’에 근거하고 있는 데, 결코 父子關係에서 오는 혈연적 세습이 아니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다. 혁명적 신념과 혁명적 의리를 가지고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로 수령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당연히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데 그가 바로 김정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김일성은 곧 김정일이고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아버지와의 일체감으로부터 자신 역시 아버지¹⁶¹⁾라

의 권위를 절대화, 4)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 5) 수령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 원칙 고수, 6)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강화, 7) 수령의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 8) 수령이 부여한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 9)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군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조직규율의 확립, 10)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자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160)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p. 58.

16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以民爲天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시며 인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한 데서 이는 잘 나타난다. 「평양방송」, ‘김

는 것을 역설하고, 유교적 가치체계인 人德論에 근거한 ‘人德政治’를 통해 인민들의 忠孝를 그에게 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帝王의 통치덕목으로, 김정일이 주민통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이 부친사망 후 공식 권력승계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대신 유훈관철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버지 노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遺訓政治’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이 그가 충성과 효성의 화신이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아버지로 향했던 충효를 자신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¹⁶²⁾

2. 階層管理에 의한 接近

정통유교사상에선 신분은 후천적으로 쌓은 德과 智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분의 귀속을 절대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 유교사회에선 선대의 신분이 후대에까지 귀속되었다. 이러한 귀속과 관료제의 발달로 사회계층이 명백히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士農工商이 분명히 구분되면서 四民의 차등의식을 초래하였고,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지주와 소작의 관계로 主從관계를 양산하였다. 또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功利主義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商工을 경시함으로써 경제와 산업기술을 저해 근대화를 상징하는 산업화·공업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17세기

정일혁명력사강좌 162회, 1995. 1. 15.

162) 「중앙방송」(1995. 7. 29)은 김정일이 “때로는 이른 새벽에, 때로는 깊은 밤중에, 때로는 식사시간에 그이께서 기념궁전 건설장을 찾으신 적이 몇 십번인지 몇 백번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김일성 사후 일년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금수산의사당을 찾는 등 아버지 사망 후에도 지극한 효성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초 농업기술의 발달과 특수작물의 상업화는 대농지를 경작하는 평민에게 부를 축적하게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양반의 계급을 취득할 수 있었다. 북한은 李朝時代 土農工商의 신분위계질서의 변형의 역사적 유산을 경험 삼아 주민의 신분변형의 가능성을 공표하면서 그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의 국자감이나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등 시험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던 제도를 북한은 없애 버렸다. 선발된 인재들이 관리에 임명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忠孝思想의 진의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한 유교적 전통을 없애 버린 것이다. 이는 平等主義에 입각한 정통유교사상에도 위배되고 있다. 정통유교사상은 인간의 人性은 타고날 때부터 같은 것이었으나 후천적 학습과 교화로 얻은 능력과 德性·知性에 의해 군자 또는 소인으로 성장되는 것으로 경직된 혈통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만민에게 기회를 다 주면서, 덕성공부인 ‘率性修道’와 지능공부인 窮理盡性 등을 열심히 하고 德과 智를 충분히 쌓을 때 그들의 능력여부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등급되어 졌다. 이로 인해 신흥 사회계층의 진취적 욕구를 한층 북돋게 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과거 선대의 불합리적인 신분귀속제도와 신분차별화정책을 체제유지 차원에서 고착화시키면서 계층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주민으로부터 김일성부자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구성인에 해당된다. 북한은 ‘세습제도’를 “착취사회에서 특권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직위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 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반동적제도”¹⁶³⁾이며 자본주의에서 남아 있는 제도로 규정짓고 이를

163)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414.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차별화되고 귀속된다. 핵심계층의 신분은 대를 이어 귀속되나, 하부계층의 신분은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보일 때 상승이 가능하고 이를 실현치 못할 경우 그들의 신분은 변화없이 그대로 남게 된다. 심지어 체제에 대한 위험인물로 간주되면 가차없이 탄압받는 계층으로 남는다.

김일성은 사후 일어날지 모르는 체제에 대한 부정과 자신에 대한 격하를 심히 우려해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 주었다. 북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산주의 역사상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준 예는 없었다. 권력세습은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제와 사회체제가 김정일을 구심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의 친인척 신분도 귀속된다. 그들은 당중앙위 정위원회에 7% 내외며, 그중 서열 30위 내에 들어 있는 자는 1970년대 55.6%, 1980년대 55.6%, 그리고 1990년대 41.7%¹⁶⁴⁾를 차지하면서 권력핵심부를 장악하였다. 그 외 빨치산 세력, 만경대학원 출신 등 김일성·김정일 측근 세력들의 신분 역시 반란·반항 등을 일으키지 않는 한 대를 이어 보장된다. 이러한 귀속은 북한 사회에서 신흥 관료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신분이 성분구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성분구분은 체제에 위험요소인 반당 및 반혁명세력을 색출하고 주민사상을 점검·통제하려 함인데, 계층별로 나누어져 정해진 성분은 대를 이어 귀속된다. 이는 봉건사회에서 출생에

164) 전현준·안인혜·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12), pp. 123~4.

의한 귀속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과 같다.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의 이상과도 거리가 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 1960년대 후반까지 이어져 온 '주민성분조사사업'은 성분구분을 위한 시초의 작업이었다. 관료 집단 외 인민대중의 충성과 복종을 끌어내고 사회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사상 예비조사를 한 것이다. 특히 1957년엔 중앙당 집중지도에 의해 반혁명분자의 성격을 규정 반당·반체제·반혁명성이 강한 개인과 집단에 대해 구속·처형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었다. 그 대상 범위를 자식세대에까지 미쳐 연좌제를 귀착시켰다.

1966년 4월에 진행된 '주민재등록사업'은 처벌대상범위를 직계 3대와 처가·외가 6촌까지 확대해 성분을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또는 기본계층) '적대계층'(또는 복잡계층)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하였다. '핵심계층'은 북한의 지도체제를 항상 지지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동요계층'은 일부 열성적인 체제지지자의 경우 핵심계층으로 승격될 수 있으며,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 일부 열성적인 체제지지자의 경우 핵심계층으로 승격될 수 있다. '적대계층'¹⁶⁵⁾은 유사시 남한에 동조할 수 있는 위협한 자들로 취급, 제재 감시 포섭대상으로 구분된다. 제재대상은 격리수용되거나 강제이주당하며, 감시대상은 항상 그들

165) 귀순자 김광욱(1995. 4. 13)은 '적대계층'을 일컫는 '복잡군중'이라는 말을 쓰이지 않고, 성분, 토대가 나쁘다는 말을 쓰며, 성분이 나쁜 사람이 절반쯤 된다고 한다. 한편 귀순자 김대호(1995. 4. 14)는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이 30% 정도된다고 한다.

의 동태가 당국에 의해 감시당하며, 포섭대상은 집중적으로 교양 받는다. 엄격한 성분구분으로 주민을 철저히 감시·통제하기 위해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를 정치범 집단수용소에 감금하여 불신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는 반면, 上位계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충성을 촉발시켰다.

이러 북한은 1972~74년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 파악하기 위해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1980년에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주민점검열사업'을 벌려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월북자 및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당세포 단위 내에서 매 분기 '근로자 생활평가'를 할 때도 당원 근로자의 토대가 영향을 미친다. 1부류는 토대가 좋은 사람, 2부류는 아버지의 성분은 좋지 않으나 어머니의 성분이 좋은 경우, 3부류는 아버지가 치안대에 관련된 적이 있다든지, 삼촌이 정치범이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부류를 기준으로 본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첨가해 평가서를 작성한다. 당원 뿐 아니라 일반 직장 종업원 전부가 평가 대상이 된다.¹⁶⁶⁾ 유사시 "총뿌리를 돌릴 반동 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평가결과 적발된 자는 철저한 감시·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평가작업을 지배인이나 간부들은 알지만 주민들은 대체로 모른다.

최근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동요방지와 주민생활통제를 위해 '통보지도원', '3호실', '신소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¹⁶⁷⁾ '통보

166) 귀순자 김대호 면담, 1995. 4. 14.

167) 「최근북한실상」 (1992. 12), pp. 19~20.

지도원'은 당간부들의 동향파악과 일반주민의 언동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 '3호실'은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친인척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 주민성분카드를 작성, 주민들의 입당이나 사무원 채용시 또는 해외근무 파견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소제도'는 "김정일동지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신소하면 김부자 교시지시내용과 위배되는지의 여부만을 검토할 뿐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은 도의시하고, 당정간부들이 엿힐 경우 보복 당하기도 해 주민들은 이를 또 하나의 주민 감시·통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생활통제 제도에 잘못 걸려든 주민들은 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학생에게 '생활평정서'를 바탕으로 정치사상적 동향을 감시한다. 체코유학 중 박창희 씨는 그의 생활평정서에 "위대한 수령님을 배블테기로 지칭한 적이 있는 수정주의 요소가 짙은 인물"로 낙인찍혀 그의 장래를 보다 어두운 장막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¹⁶⁸⁾ 이 여파는 그의 아들에게도 미쳤다. 10년간 군복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입당하지 못하였고 인간대우를 못 받고 있다.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성분과 행동여하에 따라 구조적 신분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개개인의 운명이 신분구분에 의해 결정되면서 11년제 의무교육을 제외한 대학교육, 직장생활 등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어 버렸다.

168) 귀순자 김영성의 증언, 김영성, 앞의 책, pp. 22-3.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성분이 나쁜면 대학진학이 불가능하였고, 1980년대에는 혈통에 따른 획일적인 분류가 사라졌고 대학진학도 허용되었으나 취업에는 제한이 뒤따랐다. 고위직이 되기 위해선 좋은 성분이 절대적이다. ‘간부사업’ 규정엔 능력과 충실성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 해방 당시 빨치산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간부로 등용된 반면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지주 또는 치안대에서 복무했다면 자식들은 간부로 등용되지 못했고,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8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은 이를 잘 시사하고 있다.¹⁶⁹⁾ 귀속적 지위가 인간의 능력, 성취, 그리고 자율성에 영향을 주고 권력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¹⁷⁰⁾하고 있는 셈이다.

성분조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심사대상과 기준을 바꿔 수시로 실시된다. 중앙당간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에서 각각 비밀관리함으로 개인은 성분자료를 알 수 없다.¹⁷¹⁾ 귀순자들 대부분은 취직, 입당, 유학 등에 앞서 때가 되면 집안의 신분내역을 부모로부터 듣는다고 전한다. 김광옥은 부모들의 대화를 엿듣고 자신이 나쁜 성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뒤 자포자기 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¹⁷²⁾ 김선일에 의하면 나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도 갈 수 없고 당원이 될 수도 없으며 원하는 직장에 취직되기

169) 귀순자 김동훈 면담, 1995. 4. 11.

170) 선한승,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p. 59.

171) 근래에 와서 사회안전부 자료가 해당 직장을 비롯 洞黨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172) 귀순자 김광옥의 증언,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 103.

어려우며 배우자 선택에도 지장을 받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깡패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어울려 강도·절도·강간 등을 일삼는다고 한다.¹⁷³⁾ 성분 또는 토대가 나쁜 적대계층은 좌절감·성취욕 상실과 함께 그들의 미래가 없음을 직감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시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김광옥은 부모가 1965년까지 중국에 살았다는 이유로 나쁜 성분으로 분류되어 중국유학시험의 마지막 심사에서 떨어졌다.¹⁷⁴⁾ 홍금수는 대학 입학시 6촌까지의 성분조사를 통해 반동이 있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한다.¹⁷⁵⁾ 대학에 진학 좋은 직장배치에 대한 기대와 신분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좌절하게 한다.¹⁷⁶⁾ 이러한 신분차별화로 인해 고등중학교 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신분상승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적대계층’도 사상교양에 의해 개조되고 사상과 행동양식이 혁명과 건설을 지향한다면 ‘핵심계층’이나 ‘동요계층’과 같이 혁명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사람의 성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늘 끊임없이 변한다”¹⁷⁷⁾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혁명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의

173) 귀순자 김선일의 증언, 위의 책, p. 138. 그러나 귀순자 김광규는 나쁜 성분으로 좌절하거나 범죄적 행위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한다(p. 96).

174) 귀순자 김광옥 면담, 1995. 4. 13.

175) 귀순자 홍금수 면담, 1995. 4. 12. 그러나 전문학교까지는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

176) 김광옥에 의하면, 대졸자중 60~70% 정도가 3대혁명소조원으로 나가려 하는 데 그 목적은 입당에 있고 간부등용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군에 가는 것 역시 입당을 위해서다. 귀순자 김광옥 면담, 1995. 4. 13.

177) 「김일성저작선집 6」, p. 43.

해서 평가해야 한다”¹⁷⁸⁾면서 혁명활동여부에 따라 신분이 변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김정일은 “복잡군중이라도 당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 들이라,” “실력있고 업적이 있으면 성분이 좋지 않아도 동용하라,” 그리고 “지난 기간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의 현 상태와 사상을 중시여기라”는 교시를 내린 적이 있다. 성분의 중요성을 완화하며 일단 노동당에서 포섭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당의 정책변화 역시 신분 상승을 바라는 下部階層의 분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下部계층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수령에 대한 충효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반동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면 신분격상이 된다. 불평불만자를 밀고하면 입당 등 각종 특혜를 주어 혁명의 동반자 선열에 동참할 수 있다. 적대계층이라도 수령과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장의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보증을 서 주면 성분이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증을 서 주었다가 문제가 생길 시 문책을 우려해 보증을 서 주지 않는다.¹⁷⁹⁾ 이러한 현실은 영화 「보증」, 「명령 027」, 「월미도」, 「조선의 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요약하면, 2세대가 과오를 범하면 3, 4세대가 영향을 받고, 3세대가 당에 충실했다면 4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¹⁸⁰⁾ 적대계층이 아무리 혁명적 과업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前세대의 과오가 확실

178) 위의 책, p. 133.

179) 귀순자 홍금수 면담, 1995. 4. 12.

180) 귀순자 홍금수 면담, 1995. 4. 12. 그는 제1세대를 빨치산 세대, 2세대를 전쟁 세대, 3세대를 전후복구세대, 4세대를 현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하면 現세대가 구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구제되지 못한 하부계층은 지속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으로 남으면서 신분의 차별화를 받는다. 이러한 신분차별화와 신분귀속제도는 궁극적으로 김일성 부자 우상화를 고취시키면서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

3. 教育에 의한 接近

仁·義·禮를 실천하는 데 있어 유교는 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유교적 의미에 있어 교육의 가치는 인간에게 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을 바로 심어 주고 세상의 진리와 인간의 섭리를 깨우치게 해 올바른 인간형성과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智·德을 겸비한 군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사회구성원을 가르쳐 사회전체를 밝게 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절대군주에게 백성을 사랑하고 삶의 행복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백성에게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 준 군주에 대해 충성과 보필로써 보답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교육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의 그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¹⁸¹⁾에 있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일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리에 입각한 인간상인 노동을 사랑하는 노동자,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주의적 사상을 가진

181) 북한 「사회주의 헌법」(1992), 제43조.

사람,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가 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당과 수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을 일컫는다.¹⁸²⁾ 따라서 교육의 방향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새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

집단주의를 지향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북한의 교육은 궁극적으로 김일성부자 이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 공산주의 도덕의 최고 표현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 품모에서 기본으로 되기 때문이다.¹⁸³⁾

북한 공산주의사회에서 神과 다름없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을 고취시키는 일환책으로써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확고한 주체적 입장과 태도 방법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 것, 반동적이며 비계급적인 모든 현상들과 투쟁하도록 하는 것¹⁸⁴⁾으로 투철한 계급투쟁 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인간개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본질에 있어 사상개조를 의미한다. ‘사상개조’는 “인간의 태도, 행동, 정향, 성향에서 정치태도, 정치행동,

182) 최경구·유문무, “북한의 주체이념과 사상교육,” 김문조 編, 「북한사회론」 (서울: 나남, 1994), p. 195.

183) 박인숙,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의 형성과정과 방도,” 「철학연구」 (1993. 1), p. 42.

184) 최경구·유문무, 앞의 글, p. 195.

정치정향, 정치성향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의도적으로 교육”¹⁸⁵⁾ 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북한 공산주의는 사상개조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와 혁명이론을 북한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배합시킨 당의 유일사상을 따를 것을 중용하고 있다. 당의 유일사상은 혁명실천지침이요 이는 곧 김일성의 유일사상이므로 그의 독창성과 혁명적 사고를 따르고 실천할 때 사상개조가 된다.

사상개조는 탁아소로부터 시작하여 대학 그리고 사회단체의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교육기관이 정치사회화기관이라 볼 수 있다.

탁아소에서 집단주의정신을 주입시키고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간식을 들 때마다 “김일성아버지 고맙습니다”란 감사의 말을 한다. ‘자비하신 아버지’란 말을 제일 먼저 배우고, 김일성의 사진을 보면서 유희를 하는 것 역시 김일성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일환으로 연결된다. “아버이 수령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¹⁸⁶⁾라는 아동들의 일치된 목소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초등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을 가르치나 이 역시 김일성에 대한 공경과 복종이 절대적 임을 주입시키고

185) 박문갑, “북한의 교육체제와 정치사회화,” 김갑철 외, 「북한학개론: 북한 사회주의 현재와 미래」 (서울: 문우사, 1990), p. 273.

186) 1985년 대한적십자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용우가 '9.15 탁아소'를 방문해 아동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응답임. 이용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최,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1995. 11. 10).

있다. 하물며 어떤 유치원에는 ‘김일성 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까지 차려 놓고 정치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 교육의 제도화는 어린 유아기부터 부모와 격리시키고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국가가 원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조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게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도록 교양하고 있다.¹⁸⁷⁾ 이렇게 양육된 아동들의 정치성향이나 정치태도는 오직 김부자와 당만을 위한 인간으로 성숙되고 있는 것이다.¹⁸⁸⁾

인민학교는 김일성부자 개인숭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이 정치사상교양으로 채워지면서 김부자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¹⁸⁹⁾ 고등중학교에서는 “주체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¹⁹⁰⁾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김일성부자 우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¹⁹¹⁾ 대학에선 주체의 사상이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7) 박문갑, 앞의 글, p. 276.

188) 위의 글.

189) 김일성 우상화와 충성심 고취 46%, 김정일 찬양과 세습의 정당화 19%를 활당하고 있다. 허숙,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고대 평화연구소 編,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3), pp. 76~142.

190)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 7. 22), p. 178.

191) 고등중학교 교과서엔 인민학교에 이어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김부자 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단체(少年團, 社勞靑, 女盟 등)에서도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한 작업은 계속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성으로 추진된다.

유교에서 智德을 갖춘 군자양성을 중시하듯이 북한은 智德體를 갖춘 교원의 양성에 관심을 가진다. 학생들의 정치사회화는 교원의 정치적 관점·신념 및 정치적 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교원들이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산주의 혁명가가 될 것을 당부한다. 그들이 공산주의적 정치태도를 가지고 혁명화, 노동계급화되어야만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행위규범과 함께 교원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도덕적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당의 지시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제자들에게 김부자에 대한 충실성을 고취시키고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그리고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이바지한다.

교원의 기능 및 역할 외 전 사회구성원의 효과적인 정치사상교양과 사상개조를 위해 당원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당원으로부터 핵심계층으로, 핵심계층으로부터 일반대중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은 사회를 사상적으로 개조하자면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원들을 먼저 교양하여, 그들이 핵심계층을 교양하고, 그 핵심계층이 광범한 계층을 교양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핵심계층을 교양하고, 핵심계층이 광범한 계층을

교양하는 것은 하나가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 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방법이다.¹⁹²⁾

정치사상교양과 교육은 정치사회화의 주요 기관이자 매체인 가정에서 시작되고 계속된다. 초기 공산주의사회는 “가정은 넓은 사상과 유습이 받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정은 넓은 사회에서 살아본 늙은 조부모로부터 부모들이 있는 관계로 생활의 여러 모에서 넓은 사상과 도덕, 풍습과 습관이 남아있게 되며 또 그의 영향이 퍼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후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서 해독적 영향을 미친다”¹⁹³⁾고 보고 넓은 사상의 전수장으로 여기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도의시하였다. 그러나 공산진영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역할 및 정치적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제도적인 가정교육을 조기교육기구의 보강장치로서 그리고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으로서 중시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성과 배합 및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¹⁹⁴⁾

비제도적인 가정교육에서 형성된 태도나 행동유형들이 학교로 이어지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가치관과 정향 그리고 개인의 행동

192)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p. 29.

193)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77.

194) 김일성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 및 사회교육의 의미에 대해,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은 서로 뗄 수 없으며, 이것은 언제나 병진시켜야하며 옹기 배합하여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처음에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교육을 거쳐서 그 기초가 닦아지는 것이며, 사회교육을 통하여 계속 완성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과 실현,” 「로동신문」, 1973. 10. 4, 「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540에서 재인용.

양식 및 태도들을 전수 받게 된다.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제도적인 교육기관보다는 그 역할이 작지만 가정은 특히 유아 및 유년에 권위자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복종 그리고 혁명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심어 주는데 깊은 뿌리를 심어 준다. 이러한 역할이 학교로 이관되더라도 가족의 역할과 기능은 적으나마 존재한다. 개인이 가정에서 습득한 가치, 태도, 관습, 생활규범 등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반면에 학교에서는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차츰 강화시키므로 가정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마련¹⁹⁵⁾이나 사람의 교육은 가정교육으로부터 출발 학교교육을 통해 학문적 기초를 다듬고 지속적인 사회의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원이 공산주의적 인간이어야 하듯이, “아이들을 공산주의 건설자로 길러내려면 부모들부터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고 공산주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¹⁹⁶⁾ 가정에서 부모가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전 가족이 공산주의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가정교육은 주로 어머니에게 맡겨진다. 자녀 양육 및 교양에 대한 어머니의 우선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족법 제6조¹⁹⁷⁾ --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 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여성이 자식을 낳고 기르기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키는

195) 박문갑, 앞의 글, p. 279.

196) 「김일성저작선집 3」, p. 219.

197) 1946년 구헌법 제22조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에선 모성 및 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비해 母性의 역할을 한층 부여하고 있다.

것은 당연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중요한 일이란 것을 명심시키면서 자녀교육에 만전을 다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이는 ‘有機體的 家族國家觀’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 육체적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가정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머니이기때문입니다.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첫 교양을 잘 주는가 못주는가 아이들의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어머니가 가정교양을 잘 주면 학교에서나 사회조직에서 교양하기 매우 험합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은 일생동안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입니다. 어머니가 준 인상은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좋은 교양을 받았습니다.¹⁹⁸⁾

보다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을 혁명화하는데 있다. “녀성들이 혁명화되지 못하고 뒤떨어진 사상을 가지고있으면 자신을 망칠뿐아니라 나중에는 남편과 아이들까지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¹⁹⁹⁾되므로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자체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²⁰⁰⁾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198) 김일성, “자녀교양에서의 어머니들의 임무,” pp. 339~40.

199) 김정일,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p. 380.

20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114~5.

第 VI 章 結 論

북한 공산주의는 반동적이고 혁명투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단정짓는 유교사상을 신봉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해 사회·국가기강을 유지하려 하였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 유교적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및 행위규범, 생활양식, 인간관계 그리고 통치자의 통치형태에 있어 유교적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교문화의 본질과 전통이 변화없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집단주의적 요소와 혼합된 채 발전되어 온 것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벗어난 것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실성과 보편성에 맞춰 북한의 유교문화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로 사실성은 유교적 본질과 전통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리고 보편성은 어떠한 현상의 일치성 보다는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교문화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본성 및 행위는 다 같지 않으며, 성장과정에 공통의 가치관 및 도덕관이 변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북한에서 유교적 요소의 보존, 변질, 또는 이탈은 통치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김일성이 전체주의를 고수하면서 힘에 의한 통치를 추구한 것은 德治主義를 핵심으로 하는 유교적 본질 및 정치윤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君臣관계를 명백히 설정해 上下간의 위계질서를 구축하고, 가족주의적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유교적 전통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문화 형태는 개인에 대한 이상화를 모색하면서 유교적 주요 실천사항인 家臣主義와 君臣主義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義의 차원이지만 개인승배를 위함이 결코 아닌 점에서는 전통의 변질로 볼 수 있다.

통치 차원의 계층관리는 유교적 통치관행을 이용한 것이었다. 김정일에게 권력이 세습되었고 지배엘리트를 비롯한 일반주민의 신분은 구분되었다. '핵심계층,' '적대계층'의 이분화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중간적 성격의 '동요계층'과 함께 삼분화시킨 성분분류는 신분귀속의 표본이 되었다. 신분의 차별화와 신분의 귀속을 통해 인간관계를 上下수직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 것은 출신을 근거로 양반\쌍놈을 구분하던 조선 시대의 유교적 전통을 모방하고 있지만 시험에 의한 인재등용이 없고 충성과 복종 여부에 따라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유교문화와 다르다.

교육에 의한 접근은 유교적 교육의 목표와는 다른 것이었다. 올바른 인간형성과 사회발전을 지향하고 知德을 겸비한 군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유교교육에 비해, 智德體를 갖추고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과 김일성부자 이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민통치를 강화하고 김일성부자 이상화에 기여한 '主體思想,'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등은 유교적 통치형태에 근본을 두고 있거나 그 본질의 변질성을 띠고 있었다.

'主體思想'은 인간을 사회역사의 주체로 보고 사회발전과 공산주의발전을 모색하였다. 이는 '朝鮮民族第一主義' 정신과 함께 자주

성을 지향함으로써 공산진영 국가들의 탈 사회주의적 외풍을 차단하는데 공헌하였지만, 유교에서 강조하는 愛民主義와 重民主義를 왜곡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또한 사회발전을 더디게 하였다. 이는 주체사상이 백성의 뜻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수령의 뜻을 받드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有機體的 家族國家觀’과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 의해 ‘國家 家父長制’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有機體的 家族國家觀’에선 대가정에서의 家長이,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선 영생불멸의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자가 바로 김일성(뒤를 이어 김정일)이기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김일성 부자는 家父長的 忠孝觀을 國家 家父長制에 교묘히 적용시켜 수령에 忠孝를 다해야 함을 규범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 안에서 김일성부자는 治者며 절대군주인 반면 인민대중은 被治者며 종속자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후자의 절대적 충성과 복종은 평생 강요되었다. 유교에선 天子는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기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생존과 안전 그들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고, 백성은 이러한 天子에 대해 충성으로 보답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선 인민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은혜보다 수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 忠孝를 우선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循環이 되고 있지 않다. 실지 사회세포인 인민대중 중심이 아닌 수령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인민이 사회발전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중시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있어 유교적 본질 및 전통의 뿌리가 없었다면 유교적 통치관의 변용에 의한 통치형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에 대한 孝, 家父長的 權威主義, 夫婦有別 등이 여러 분석대상으로부터 표출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성향은 공산주의 정권 초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복귀되고 있음이 第IV章을 통해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분단 후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족형태'로의 변형을 연출하면서, 낡은 사상을 전수하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어졌던 가족주의를 혁파하려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작동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하시키면서 가정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 장악한 뒤부터는 오히려 인민의 유교적 정서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고착화시켜 유일사상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불안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의 혁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혁명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기에는 혁명투사로서,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노동의 참 일꾼으로서 여성들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재촉받았던 비해 '가정의 혁명화' 시기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여성이 되어야 했다. 이로써 가정의 역할이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대두되었고 사라질 뻔한 가정에서의 유교문화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산공장가동이 여의치 않자 많은 주부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식의 양육·교육 및 남편보필에 주 관심을 가졌다. ‘여성의 재가정화’가 시도된 셈인데 혈연주의 및 가족주의, 家父長制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엔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및 김정일 세습체제의 공고화를 모색하는 한편 주민의 유교적 성향을 이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주민의 이러한 유교적 성향을 적극 이용해 자신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孝道觀, 夫婦觀 등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유교적 인식이 사회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부모에게 孝를 다하는 耆가 웃어른 섬기기를 잘하는 것이 유교전통의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통해서 본 長幼有序는 그 존재성이 미비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지 않다. 설명하자면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의미있게 여기고 있으나 그 외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적 親親而仁民이 사회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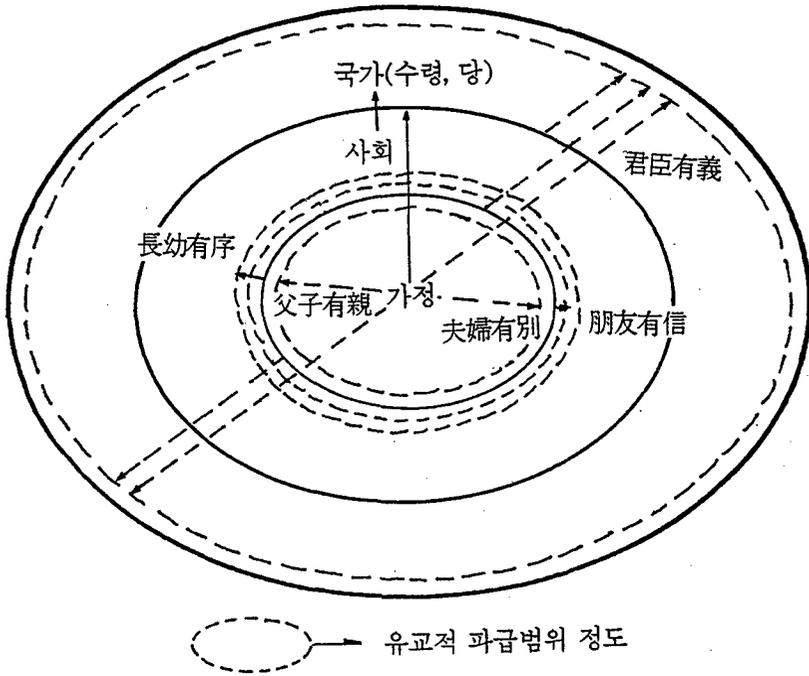
가정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그리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朋友有信이다. 가족주의의 복귀와 함께 부모를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정치비판적 사안이 걸리지 않으면 친구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 義의 차원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고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북한 당국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족주의’를 가정에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이 지니고 있는 유교적 인식과 전래의 인습을 한꺼번에 없애려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해 오히려 유교적 전통에 일부 타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집단주의를 배격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결과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적 가치관 및 행위규범이 유교적 그것들과 동시에 병존하는 생활유형이 형성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유교적 사회주의국가’로 결론짓는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은 유교적 행위규범이 가정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사회로 거의 확산되지 않은 채 바로 국가로 향하고 있다. 智德을 겸비한 군자가 되도록 수양을 쌓으며, 가정의 기강을 통해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려 하는 유교적 통치형태를 모방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의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忠孝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굳건히하려는 것이다. 이는 <圖表-1>에서 중국적으로 묘사된다.

全社会구성원에 집단주의 원칙을 주입시키고 智德體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바로 국가의 기강확립 차원에서이다. 유교적 修身齊家治國보다는 공산주의적 治國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결과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배제되어 유교적 愛人이 성취되지 않은 채 독재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治國형태는 주민이 ‘食衣住’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연명하게 하는 구조적 환경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

<圖表-1> 북한 사회구성원의 유교적 행위 정도



빈 면

북한 환경문화 연구 :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손 기 응*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환경정책의 특징

제 III 장 환경정책의 전개

제 IV 장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과 실태

제 V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빈 면

제 I 장 서 론

1. 연구목적과 방법

환경문제는 현재 각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환경오염과 파괴,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사회적 혼란은 인류 역사상 전례없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에 의해 초래되었다. 지구 생태계는 각 국가가 그들의 경제발전과 물질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차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다. 각국은 이 은행의 주주이며 그들의 자산은 공기, 물, 토양, 동·식물, 광물질 등 환경자원이다. 특히, 자본주의 혁명에서 추동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던 지난 수백년간 각국은 이 인류공통의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차용하여 그들의 필요에 충당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차용한 것을 갚는다는 고려는 추호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 각 국가가 지구은행에 되돌려준 것이라고는 유독성 가스, 산업폐기물, 독극물 등의 쓰레기 뿐이었다. 이에 따라 대기, 토양, 하천, 해양, 산림 등이 오염, 파괴, 황폐화 되었으며, 지구상의 어느 국가, 국민도 이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인류의 생존조건과 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탐구, 개발, 발전되어온 과학기술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문명이 이제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발전사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며 자연을 침해하여 개조해 온 인류가 지구상에 건설한 것이 인류의 낙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묘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지구적인 문제이다. 어느 국가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의해 비롯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환경은 지구상에 인간이 편의로 구분해 놓은 국가간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좀 더 좋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간 삶의 터전인 우리의 자연환경은 하나이며,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이다.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이 그것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이 모든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각국의 정치, 사회, 학계에 성숙되어가고 있으며, 국가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가고 있다.

북한도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환경손상과 공해를 모르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이룩하였다는 북한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에도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문화위생적인 자연조건과 생활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북무한다는 북한당국도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민족 공통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함은 물론, 질적으로 개선하기 하기 위한 노력의 사전작업으로 북한의 환경문화 분석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북한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인식에 바탕한 북한의 환경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환경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는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어려움은 자료수집이다.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이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위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이나 담화가 교시로 받아들여져 국가정책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도적인 지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여러 형식으로 발표한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들을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포함하는 북한환경정책의 특징과 내용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정과 논문들을 참고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표물을 참고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이 그대로 정책화된거나, 더구나 실천으로 전개되어지는 않는, 형식적·선언적인 성격을 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규정, 지침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윤곽과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이와 같은 접근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환경의 오염과 파괴의 정도를 파악해 보려는 환경실태분석에 있어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글을 중심자료로 활용한다.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신(神)적인 존재로 추앙받으며, 추호도 그 진실성이 의심되어질 수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스스로 행한 연설과 담화 속에 나타나는 북한의 환경손상실태에 관한 언급이 객관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의 환경관련 북한의 영화와 논문, 그리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방북하여 북한을 현지 촬영한 영상자료를 1차자료로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좀더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남북한주민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살아 가야 할 유일한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인간답게 살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려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의 생존환경인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하나로서 전체를 이루는 환경이란 동전의 양면이며,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건전한 자연적 환경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적 환경이 바람직한 자연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¹⁾

인간은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과 제약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형성

1) 이러한 시각은 분석의 대상물 '단위체', '환경요소', 단위체와 환경요소간의 '의존적 상관관계'란 세가지 중심변수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생태학적 접근방법(Ökologische Betrachtungsweise)에 근거하고 있다. Gi-Woong Son, *Umweltemilitarismus. Sozio-Militarismus und Öko-Militarismus* (Hamburg, 1992), pp. 12~20 참조.

해 나간다. 북한의 환경문화에 관한 이 글의 논의는 따라서 남북한 주민이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한반도에서 형성하여야 할 바람직한 총체적인 문화, 「통일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작업이다.²⁾ 또한, 한반도내에 하나의 바람직한 환경문화형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준비하는 사전 탐구작업이다.

2. 개념규정

이 글에서 「환경(Environment)」이라 함은 인간의 생존과 어떠한 유의미(有意味)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와 조건들의 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환경은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함은 인간의 자연적 환경만을 의미하고 있는 개념의 사회적 일반성에 비추어 이하 환경이란 단어는 인간의 자연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글에서 「문화(Culture)」란 그것이 나타나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정, 노동세계, 지역사회 등 그들 생활의 지평층속에서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가치관과 그것에 준한 행위양식을 의미한다.³⁾

-
- 2) 통일문화의 개념과 분야별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문화연구 上·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 3) 북한은 문화를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가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한다. 북한의 문화인식에 있어서 특성은 문화중 정신문화와 정신문화의 계급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정신문화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정신문화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환경문화(Environmental Culture)」는 사회의 구성원이 그들의 자연 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태도·가치관은 물론, 그것에 준한 행위 양식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연환경의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문화는 사회구성원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환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연환경에 대한 행위양식, 그리고 구성원의 총체적 행위의 결과로서 조성된 자연환경의 실태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사고 및 행태에 의해 피동적으로만 규정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및 행태와 자연환경 자체의 반응이 조응하여 형성된다. 그것은 또한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현상이다.

북한의 환경문화는 따라서 구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자연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자연환경에 대한 행위와 태도, 나아가 그 결과로서 조성되어진 자연환경의 실태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자연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과 가치관을 전반적이고 실증적이며 객관성있게 추적해 보기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술한 1차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배계급⁴⁾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인식과 그

예술을 개화시키며 도덕의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정신문화는 물질 문화에 비해 민족적 특색과 사회주의적 특성이 더욱 뚜렷하여 계급적 성격을 첨예화한다는 것이다. 손기웅/길태근,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1994), pp. 11~19; 「사회주의문화건설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1~22; 「백과전서 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808;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p. 365~366 참조.

것에 바탕을 두고 정립되어진 행태의 기준들을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정책으로 이름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지배계급이 만든 인식과 행태의 기준들에 일정정도 구속적인 영향을 받는 북한주민 전반의 행태결과 조성되어진 자연환경의 실상을 환경실태란 이름하에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외 이 글에서 「환경자원(Environmental Resource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원」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환경자원은 농·수산물과 같이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거나, 에너지로서 혹은 공산품의 원료의 형태로 쓰여지는 자원 외에, 토지, 물, 공기, 해양, 대기, 나아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리적 재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생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적 환경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환경자원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에 인간의 생태적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⁵⁾

한편, 북한에서는 「환경」, 「환경오염」, 「환경보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선 환경은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이나 정황’으로 규정하여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

4) 북한사회주의사회의 보편적, 특수적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계급에 관하여는 손기웅/길태근, 앞의 글, pp. 19~37 참조.

5) 손기웅, “갈등과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환경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3집 1호(1993), pp. 219~224 및 손기웅, “환경자원의 군사적 사용과 그 생태적 영향: (비)연료광물질과 토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2호(1994), pp. 245~268 참조.

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⁶⁾ 그러나, 일상적으로 환경이란 말이 자연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우리와 같다. 또한, 환경오염은 ‘환경물질의 농도가 사람들과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⁷⁾

그리고 「환경보호」란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인 자연과 인간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한편,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의 목적은 병 없이 오래 살려는 인간의 염원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주려는데 있다고 한다.⁸⁾ 환경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 토양의 정결도를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공기와 물, 토양은 유기체존재의 필수적인 3대구성요소로서 그것들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발육, 생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⁹⁾

6)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북한), 「현대조선말사전」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88), p. 2447.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 858.

8)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392~393; 안천훈,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 법전”, 「근로자」, 제7호(평양: 근로자사, 1986), p. 25.

9) 안천훈, 위의 글, p. 28.

제 II 장 환경정책의 특징

1. 환경정책의 경제성

북한 환경정책의 전반적 특징은 크게 그것의 경제성과 정치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경제성이란 북한의 환경정책이 환경자원을 보호·증식하여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환경 혹은 환경자원의 생명성을 인식하여 보호하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만을 이용한다는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적 자세(管理的 姿勢)가 아니라, 환경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보호·증식하여 그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지배적 자세(支配的 姿勢)에서 환경정책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¹⁰⁾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성의 강조는 그들의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환경을 대하는 기본관점이 인간은 환경의

10) 환경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관리적 자세와 지배적 자세에 관하여는 Gi-Woong Son, *op. cit.*, pp. 275~280 및 Andrew Dobson, "Ecologism", in: Roger Eatwell/Anthony Wright (ed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216~238; Klaus M. Meyer-Abich, "Bedingungen des Friedens mit der Natur", in: Jörg Calließ/Reinhold E. Lob (eds.), *Praxis der Umwelt- und Friedenserziehung, Bd. 1* (Düsseldorf, 1987), pp. 710~717 참조. Arne Naess는 이를 'Deep Ecology'와 'Shallow Ecology'로 구분하였다.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1973), pp. 216~238 참조.

일부임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공생공영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환경을 이루어 간다는 조화관에 기초하여 환경을 동반세계(Mitwelt)로 보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환경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구충족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중심적 환경관의 사상적, 철학적 기초는 주체사상이다.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¹¹⁾,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에서 보여주듯이 주체사상은 철저한 인간중심적 사고관이다.¹²⁾

환경에 대한 정복관과 지배관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환경관에 기초한 주체사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¹³⁾, “공산주의자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¹⁴⁾라면

11)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2: 전대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근로자」, 제12호(평양: 근로자사, 1973), p. 49에서 재인용.

12) 「주체사상에 대하여」, p. 13: 안천준, 앞의 글, p. 26~27에서 재인용.

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전국록화의 위대한 구상」(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 4.

14) 김일성, 앞의 책(1993), p. 142.

서 자연과의 투쟁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임무의 하나로, 주체혁명위업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제시하였다는 김일성의 교시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인 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보람찬 투쟁”¹⁵⁾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과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관련법에서도 인간중심적 환경관과 정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종합적인 국토관리계획속에 담겨진 환경관련 법규정의 하나로 자랑하는 토지법(1977년 4월 29일 채택)의 제5조에는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¹⁶⁾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인 법전으로 선전되고 있는 환경보호법(1986년 4월 9일 채택)에서는 법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환경보호법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서 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경보호법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규제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내용들이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거나, ‘공화국환경보호법은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환경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비롯한 전반내용들을 규제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환경보호법이 규제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내용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회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15) 전대영, 앞의 글, p. 49.

16) 김일성, 앞의 책(1993), p. 270.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혁명적인 법전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¹⁷⁾ 등의 자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 알 수 있듯이 환경정책의 경제성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적 환경관과 그것에 근거한 환경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북한에서 정책전반의 방향과 골격을 형성하는 지도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의 교시속에 나타나는 환경관련 언급중 거의 대부분이 경제정책에 관한 연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환경정책의 경제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환경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의 정치적 성격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환경정책의 정치성

가. 주체사상과 환경정책

북한체제를 유지, 지속, 통합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출발한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이후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후 김일성주의화를 거쳐 1992년 헌법의 채택을 통해 맑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 오늘날 주체사상은 순수이

17) 안천훈, 앞의 글, pp. 26~27.

테올로기로 격상되었다. 그 동안 주체사상은 김일성체제의 유지, 체제의 정당성구축과 정통성확보,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대남혁명과 통일노선의 합리화, 대외정책의 외교적 기조로서의 역할은 물론, 권력계승의 정통화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보완, 변모, 체계화되어 오늘날 북한체제의 유일사상으로 정식화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사회주의건설 혁명투쟁의 기반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무장된 인민대중의 집단적 대중운동에 두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상적 측면에서는 유일사상에 의해 획일화된 인민대중을,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조직화된 대중집단화를, 그리고 사회운동적 측면에서는 대중적 혁명운동으로서 군중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체제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유도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생산증대와 건설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통제와 집단화를,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의 환경정책은 이와 같은 주체사상과 그 세부정책에 수렴되어 기능하고 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사업과 대중운동에 인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조성과 보호운동, 제방공사, 도시복구건설, 국토관리사업 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보호사업으로 치장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사상교육의 강화와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각인시키는 사상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과 지지가 유도되고 인민대중에 대한 집단화와 통제가 진행되어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나. 권력세습과 환경정책

북한의 환경정책은 김정일어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성,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는 단순히 지도자가 교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영도가 계승되는 문제라면서 후계자문제의 중요성을 특히 소련, 중국등 사회주의국가의 경험과 관련하여 부각시켰다.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는 후계자는 수령이 창시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해서 선포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투철히 옹호 및 고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계자가 지녀야 할 품모로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환경보호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김일성이 시작한 환경정책을 김정일이 덕성과 영도력을 바탕으로 지속함은 물론,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데 열의를 보여 줌으로써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다. 구

체적 문건으로는 1984년 11월 19일 전국국토관리부문활동가대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란 편지가 김정일이 환경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라고 추정된다. 이 글에서 그는 김일성이 ‘해방직후 친히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와 삽질한 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은 내외 계급의 적에 반대하는 피투성이의 투쟁과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수반한 곤란하고도 복잡한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왔으며,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현명한 지도의 결과 ‘만년대계의 창조물이 수없이 건설되고, 경작지와 산림, 유용한 동식물과 수산자원이 증식되고, 하천과 도로, 연안은 정연하게 꾸며져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일은 이어서 국토관리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제까지의 투쟁은 첫 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⁸⁾

김정일이 환경분야에 있어서 권력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음은 북한의 방송매체에 의해 선전되고 있다. 그 예가 북한의 선전영화이다. 영화 『국토건설의 새력사』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쟁으로 불타버린 산들의 녹음이 우거지게 하시려고 청산에서 전후 산림조성의 봉화를 지펴주시였습니다. 청산에 뿌리 내린 나무들은 오늘도 조국의 일목일터에 부어주신 숭고한 그 뜻

18) 金正日, “國土管理事業を改善強化するために: 全國國土管理部門活動家大會の參加者におくつた手紙 1948年 11月 19日”, 金日成/金正日, 『自然環境の保護 造成』(東京: チュチュ思想國際研究所, 1987), pp. 163~193 참조.

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땅으로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연안과 영해관리 사업을 잘 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라고 김정일의 환경정책을 찬양하고 있다.

또한, 영화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에서는 김정일이 60년대부터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기점은 김일성이 1940년대 항일투쟁시부터 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그의 권력의 카리스마를 확립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허리치는 눈무지속을 뚫고온 행군의 휴식참에도 한대의 나무, 한포기의 풀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나무대신 가랑잎과 삭정이로 피운 우등불에 대원들의 언땀을 녹여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면서 이 시기부터 김일성이 조국산천에 “나무숲이 들어차게 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 나가시였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¹⁹⁾

다. 대남선전과 환경정책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산업화와 공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며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해를 주

1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1977), p. 13.

는 여러가지 공업배설물과 유해가스, 배기가스와 방사성물질, 각종 소음과 진동, 땅이 꺼져내려가는 것' 등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과 파괴의 위협은 공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반드시 있게 되는 동반현상이 아니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계급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있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최대이윤과 생산이익이란 관점에서만 환경을 보고 '이윤만 얻을 수 있다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꺼리낌없이 하며 공해산업도 마구건설'하는 반면에 "비생산적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 자본가들은 자기의 돈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자금과 설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획득을 위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져온 결과에서 빚어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다.²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제도 자체가 낳은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반동통치배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은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공해로 인한 인간환경의 파괴는 현대산업건설에 반드시 뒤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떠벌이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²¹⁾

20) 안천훈, 앞의 글, pp. 25~29 참조.

21) 전대영, 앞의 글, p. 54.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보호사업은 한갓 선연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본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경영활동이 개인의 주관적 욕망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사업은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영리목적에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은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추진되는 환경보호사업과 관련 법규정마련은 사회적 여론과 압력에 못이겨 채택하는 실현담보가 없는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여러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환경의 혹심한 파괴와 오염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서는 ‘엄중한 후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공업생산과 류통과정에서 생기는 산업공해와 도시경영의 불합리, 도시주민의 지나친 밀집에 의한 도시공해의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생활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류의 재부는 수없이 탕진되고’ 있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해는 이미 <핵무기에 비길만한 인류의 적>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남한에서는 환경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공해병에 걸려 불행을 겪는 참혹한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²³⁾

22) 전대영, 앞의 글, p. 55.

23)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 1986년 4월 7일 북한 부주석 리종욱이 행한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은 대남선전축면에

진정한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는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어 있고 모든 것이 리윤추구에 복종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뒤집어 엮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²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일치함으로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직하고 진행하며 인민대중은 이 사업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마련하여

서 북한의 환경정책이 담당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잘 보여준다.

“공해기업체들에서 마구 내뿜는 독한 연기와 유독성폐수로 인하여 서울 뿐아니라 남조선의 모든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심히 오염되고 산림과 물고기를 비롯한 동식물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공해 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동식물이 257종이나 되며 예로부터 경치아름답고 수산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났던 남해바다가 생물이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인 책동으로 공해현상이 얼마나 참혹한 지경에 일렀는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민주주의의 폐허지대>일 뿐아니라 생명체들이 제대로 존재할 가능성마저 말살되어가고 있는 가장 흑심한 공해지대입니다.

공해가 심한 자본주의나라들의 가혹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온 나라가 말그대로 하나의 아름다운 큰 공원속에 있는 우리 조국의 찬란한 모습은 공화국정부의 환경보호시책이 얼마나 정당하며 우리 인민이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자랑높은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로동신문」, 1986.4.8.

24) 전대영, 앞의 글, pp. 49~55 참조.

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한다.²⁵⁾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더하여 사회주의에서도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 창조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였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로동계급과 그 당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라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주체사상이 구현되었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대하는 것을 근본관점’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는데 철저히 복종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²⁷⁾

그리고 이 체제를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으로 이끈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예지있는 환경보호정책’에 의해 오늘날 북한은 공해없고 녹음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다고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국가적 관심이 돌려지고 예견성 있는 모든 대책이 취해짐으로써 공해없는

25) 김일성, 앞의 책(1993), p. 393.

26)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2; 전대영, 앞의 글, p. 49에서 재인용.

27) 안천훈, 앞의 글, p. 27.

공업화를 실현하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수많은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한 결과 '환경보호의 기본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이르러 북한 전역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옛 선조들이 한갓 꿈으로만 생각하던 <장생불로의 락원>이 산 현실로 펼쳐지고 세상사람들이 것처럼 부러워 말하는 <공해없는 나라>, <공원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²⁸⁾ 그리고 "인민들은 공해라는 말조차 모르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속에서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북한은 주장한다.²⁹⁾

북한의 선전영화 『금수강산 내조국 노래부른다』, 『사계절 아름다운 나라』,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 『오랜 문화의 나라』, 『국토 건설의 새력사』, 『폐허우에 솟아난 조선』, 『조선의 새모습』, 『전진하는 조국』, 『평양의 모습』, 『우리가 본 평양』, 『평양을 찾아서』, 『조국기행 개성시』, 『조국기행 함경남도』, 『조국기행 함경북도』, 『조국기행 강원도』, 『조선지리 함경북도』, 『조선지리 함경남도』, 『백두산』, 『금강산』, 『금강산으로 가자』, 『금강산, 조선의 명산 묘향산』, 『묘향산』, 『오가산』, 『지하의 명승 석화궁, 창광원, 송도원』 등과 북한의 과학교육영화 『천연기념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동굴, 식물, 마양송어』, 『우리나라 노루와 사슴』 등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결같이 반복하고 있다.³⁰⁾

28) 『로동신문』, 1986.4.8.

29) 김일성, 앞의 책(1993), p. 395.

30) 자연환경과 관련된 이상의 북한영화는 민족통일연구원의 특수자료실에 소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적인 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³¹⁾ 북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간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3자는 서로 역사법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항거하는 개인의 방위수단으로서 인권이란 개념조차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인권에 관한 기본인식에 따른 것이다.³²⁾ 다만, 1992년 4월 29일 그들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란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민을 위해 시혜적 차원에서 건전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건전한 환경조성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반사적인 혜택을 입을 따름이다.

장되어 열람한 것들에 한정된 것이다.

- 31) 한국은 헌법 제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 32) 법무부, 「북한법연구 6: 노동법」(서울: 법무부법무실, 1987), p. 19.

라. 대외정책과 환경정책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은 대외정책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환경관련 김일성의 교시나 법규정 마련을 북한도 대기·물·토양·해양의 오염방지와 동·식물보호 등의 환경보호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밝혀질 바와 같이 환경보호에 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나 환경관련 법규정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가 실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해주고 있다.

환경정책의 천명이나 법규정의 채택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교류·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마찰을 예비하여 자국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1977년 6월 21일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채택한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정령』과 이것을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1978년 8월 12일 정무원결정 제106호로 제정한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³³⁾ 이들에는 12해리 영해주장과 200해리 경제수역의 주장외에도 경제수역내 해양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타국과의 마찰을 예비하고 있다.³⁴⁾ 또

33) 제3장 1절 「다」 참조.

34) 북한은 1960년대까지 자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진행과 함께 해양관할권

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자국내 투자활동과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³⁵⁾ 이상과 같은 북한 환경정책의 특징은 다음에서 살펴볼 북한환경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의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영해에 대하여 북한은 1955년 내각결정 제25호에 의해 12해리의 영해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정내용을 외부에 선언하기 위한 공식적인 입법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후 북한은 1968년의 푸에블로호(Pueblo)사건이나 1975년의 쇼오세이마루(松生丸)사건을 통하여 자국의 영해가 12해리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즉, 미국에 대하여는 억류승무원의 석방타결문서에 북한의 12해리영해 주장과 푸에블로호가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으며, 일본에 대하여는 압록강하구 신도근처에서 조업중 나포되었던 쇼오세이마루호의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12해리의 영해를 채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1977년에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을 동해와 서해에 각각 선포하였다.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 200해리를 그을 수 없는 수역에서는 반분선을 적용하였다. 군사경계선은 기산선으로부터 50해리, 서해에서는 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85년, 1986년, 그리고 1990년에 소련과 해양을 포함한 국경선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북한과 중국간의 해양경계확정 협상에 선행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12해리 영해를 선포한 것은 현재 세계각국의 실행 및 관행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한만 및 경성만을 포함하는 직선기선의 채용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넘는 것이다. 경제수역과 관련해서도 외국의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군사수역의 경우는 휴전협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긴장상태를 전제로 한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창위, “북한의 해양법정책”, 통일원,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I」 (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4), pp. 67~119 참조.

35) 제3장 2절 「나」 참조.

제 III 장 환경정책의 전개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라 크게 두시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북한 환경정책의 제1기는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의 토지법(1977년)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에 대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인식분야는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수립을 본격화하지는 않은 시기이다. 두번째의 시기는 1980년대 환경보호법(1986년)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북한이 환경문제를 산업화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환경보호에서의 과학화를 요구한 시기이다. 환경정책의 제1기는 해방직후부터 전쟁중의 시기, 전후 사회주의건설 도입의 60년대, 토지법채택의 7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환경정책의 제1기

가. 해방직후부터 전쟁기의 환경정책

해방직후에 북한은 우선 일제 식민지통치 결과 황폐화된 산림에 의한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그리고 그나마 남은 산림에 대한 남벌

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북한에서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선전되는 1946년 보통강 개수공사의 착공, 그리고 1947년 산림조성사업의 전 군중적 운동화의 추진과 금강산의 자연보존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이점을 엿볼 수 있다. 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서 한 격려사』를 통해 김일성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요구하면서 대자연개조사업을 시작할 것과,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서 평양시민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보통강일대를 풍치 좋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만들기 위한 제방공사인 보통강 개수공사를 평양시민들이 애국적 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적극 밀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³⁶⁾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서 식수에 참가한 일꾼들에게 한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란 담화에서는 해방후 사람들이 나무를 몽땅 찍어 산을 못쓰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인민정권기관들이 산에서 나무를 무질서하게 베어내는 현상을 방지하고 나무를 많이 심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애국심의 문제라며 산림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해 대중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⁷⁾

한편, 김일성은 1947년 9월 28일 외금강휴양소 일꾼들과 한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 휴양지로 꾸리자』란 담화에서 금강산의

3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27~230 참조.

3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02~207 참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금강산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김일성이 ‘금강산에 있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게 하며 바위 같은데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바위에 후대들에게 물려줄 좋은 구호를 새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라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환경손상행위는 예외임을 직접 밝힌 점이다.³⁸⁾

전쟁기간중의 시기에 김일성은 파괴된 도시 - 특히 평양 및 대도시 - 를 복구건설할 때 환경적, 위생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선이 치열하던 1951년 1월 21일 김일성은 도시설계일꾼들에게 한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란 담화에서 전선형편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인 평양의 복구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전쟁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할 것과 도시건설시에는 공장과 기업소를 주택구역과 분리하여 강하류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을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³⁹⁾

나. 사회주의건설 도입기의 환경정책

전쟁이후 추진된 사회주의건설 도입의 시기에 발표된 김일성의

38) 김일성, 위의 책, pp. 443~449 참조.

3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76~282; 김일성,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앞의 책 (1993), pp. 49~60 참조.

환경관련연설을 살펴보면 북한의 건설목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인다. 우선 입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인조섬유의 원료가 되는 목재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강조하였다. 1958년 5월 11일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이란 연설에서 김일성은 조림사업이 목화를 심는 것과 같이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조림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의 남벌을 금지하며 화전을 일구지 못하도록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과서에도 써넣고 신문, 잡지, 라디오를 비롯한 모든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⁴⁰⁾

둘째,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일성은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는 구호 아래 산이 많은 북한에 산을 이용한 과수원을 늘이는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여 북한 주민들의 과실소비의 해결은 물론 의화별이에도 기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과수원의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과수원으로 한다는지, ‘울창한 산림과 전망이 큰 립지를 개간대상으로’ 삼는다는지, 또는 ‘산을 일군다 하여 함남도 수동군이나 평남도 덕천군에서처럼 산을 몽땅 벗겨버리는 식으로’ 일구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1961년 4월 7일 조선노동당

4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54~260 참조.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에서 한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란 담화에서 김일성은 인민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며, 과수원을 일구는데 산림이 없는데와 다박술밭, 송충피해지, 혹은 묵은 화전등을 이용하여 산림이라는 국가재부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⁴¹⁾

셋째, 해방직후부터 근 20년간 추진한 산림조성과 보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남벌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자 김일성은 1965년 5월 25일 당, 정권기관 지도일꾼들과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 앞에서 한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란 연설에서 산림보호정책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는 ‘평안북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송충잡이를 한다고 하면서 산에 불을 놓아 산림을 몽땅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한심한 일을’ 하였다고 비판한 뒤 이러한 엄중한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산들이 벌거숭이로 된 것은 송충피해를 입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농민들에게 필요한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경제림을 조성한다고 하여 본래 있던 나무를 다 베내고 조그마한 나무모를 가져다 옮겨다 옮기는’ 등 경제림조성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며, 오히려 산을 벗기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관리성은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여 산림을 무성하게 함으로써 큰물 피해로부터 논밭을 보호하

4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57~70 참조.

는데 힘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⁴²⁾

넷째, 국토관리사업과 국토건설계획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주의체제 표방하에서 북한은 토지, 산림, 강하천, 도로, 항만, 영해, 호소와 같은 국토와 자원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만 있었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시기에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2월 10일 내무성 및 도시경영성일꾼협의회에서 한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김일성은 그간 국토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총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써 ‘대동강에는 그전에는 송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황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다음부터는 물고기가 적어’졌고,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때 중요한 농경지를 침범하였으며, 도시의 규모를 크게 확대해 농촌과의 불균형적 발전이 나타났다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내무성에 ‘국토 및 자원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보호관리하며 그 리용정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유일적인 관리체계’를 세우는 임무를 부과하고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 데서는 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과 나라의 발전전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과 지역별국토건설계획을 세워서 내무성은 윤곽적인 틀을 제

4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55~359 참조.

시하고, 상세한 국토건설계획은 국가건설위원회 설계총국이 맡도록 하였다.⁴³⁾

다. 토지법 채택기의 환경정책

화학, 금속, 비료, 군수산업등 중공업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한 북한에서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토지, 강·하천, 항만, 호소 등에서 오염과 파괴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2년 12월 5일 김일성은 자연과학부문일꾼협의회에서 행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이란 연설을 통해 공해방지대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날 북한이 공해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왔지만, ‘우리 당이 공해방지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은 표현’이라며 사상사업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지금 유독성물질을 내려보내고 있는 광산, 방직공장, 화학공장들에서는 시급히 유독성물질을 침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앞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공해방지대책을 선차적으로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공업건설에서 공해방지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석유화학공업을 지나치게 발전시켜 많은 원유를 유조

4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68~184 참조.

선으로 실어나르게 되면 바다에 원유가 새여 물고기자원이 없어 질 수' 있으므로, '승리화학공장에 쓸 원유는 배로 실어오지 말고 관으로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⁴⁴⁾

김일성은 1973년 7월 26일 주석명령 제1호로 당의 자원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자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면서 『자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산림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고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것, 이로운 식물자원을 많이 조성하고 잘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벌릴 것, 이로운 동물들을 적극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냥을 금지한 동물을 잡지 말 것,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것, 토지를 적극 보호관리할 것, 지하자원보호사업과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감독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 자연보호구·동물보호구·식물보호구·바다새번식보호구·수산자원보호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구역을 새롭게 정할 것, 가스·먼지·방사성물질과 어지러운 물과 독있는 물들을 아무데나 내보내어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자원보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과 특히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 자원보호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한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할 것, 정무원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이것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 사회안전 및 감찰기관들은 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보호에 관한 법을 어기는 현상과의 법적

4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521~523 참조.

투쟁을 강화할 것등을 요구하였다.⁴⁵⁾

김일성은 수산자원보호증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다면서 1976년 10월 24일 주석명령 제7호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연해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할 것, 민물고기자원을 적극 보호할 것, 모든 공장·기업소·협동농장들에서 수산자원에 해를 줄 수 있는 독있는 물질을 강과 바다에 흘려보내지 말 것, 수산자원보호증식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 것,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⁴⁶⁾ 이상을 통해 환경자원의 남획과 남벌, 그리고 수질오염과 공해현상이 이 시기에 이미 심각해졌음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규정마련과 감독·통제가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토지법은 이러한 요구에 의해 채택되어졌다.

북한의 국토개발, 특히 지역개발은 전쟁복구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초기에 그 기본방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과 행정시설을 분산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원료와 연료기지에 근접한 내륙공업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군사방호(軍事防護)적인 개발정책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수반하였다. 이것을 시정하면서 절대경지면적의 확장과 강·하천 유역의 개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절대경지면적의 무절제한 이용과 낭비방지를 위해 채택된 것이 1976년의 자연개조 5대방침이었다. 5대방침은 관개사업, 토지정리개량사업, 다락발전설사업,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산치수사업, 간석지개발사업등이며, 이것들이 법제화

45) 김일성, 앞의 책(1993), pp. 222~225 참조.

46) 위의 책(1993), pp. 248~252 참조.

된 것이 1977년의 토지법이다.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토지법을 채택하면서 김일성은 『토지법에 대하여』란 연설을 통해 토지를 밭갈이 하는 땅뿐 아니라 강하천, 산림, 도로, 간석지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무엇보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만들고 그것에 기초하여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⁴⁷⁾ 토지법 제15조에는 국토건설총계획의 원칙으로서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시에 각 지역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며, 경제발전방향과 전망에 부합되도록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토건설총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토지의 정리·개량·보호·개간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조성의 방향과 산림의 보호·이용대책, 이로운 동·식물의 보호대책, 천연기념물 보호대책, 수산자원 보호대책, 공해현상 방지대책 등으로 토지법의 제17조에 나타난다.⁴⁸⁾

한편, 이 시기에 김일성은 산림조성정책의 일환으로 기름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는 “경지면적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림을 많이 조성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유지작물을 많이 심지 못하고 있는데 기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밭에만 매달려서는 기름문제를 해결할 수 없

47) 위의 책, pp. 253~268 참조.

4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 1977년 4월 29일”, 위의 책, pp. 269~284 참조.

습니다. 우리는 산을 리용하여 유지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해야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기름문제의 해결을 위해 쪽가래나무와 호두나무 등을 심을 것을 강조하였다.⁴⁹⁾ 또한,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잎도 많아 사료로 쓸 수 있고, 나무는 불을 때거나 목재 및 펄프원료로도 쓸 수 있다면서 가로수로서 아카시아와 플라타나스를 심을 것을 지시하였다.⁵⁰⁾

70년대에는 또한 북한이 해양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북한은 1977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정령』을 만들었으나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평양방송에 의하면 동규정은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들이 북한의 경제수역내에서 바닷물이나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인민과 자원에 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78년의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의 제4장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은 경제수역에서 이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제31조), 외국인·외국선박·외국항공기는 이에 관한 해당법규를 지켜야 하고, 사람의 건강과 자원에 해를 주며 바닷물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4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1977), pp. 52~104 참조. 북한이 청소년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기름나무림조성의 노래」는 기름나무조성운동의 정도를 가능하게 한다. “아름다운 내나라 산에 산마다, 기름나무 더 많이 심어나가자, 아버지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의 행복을 심어나가자, 우리는 영예로운 기름나무근위대, 기름산 보물산 행복의 동산을 어서어서 꾸리자.”

50) 김일성,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도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2년 9월 5일”, 김일성, 앞의 책(1993), p. 10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1977), pp. 49~50.

말아야 하며(제32, 33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제34조)고 규정하였다.⁵¹⁾

이와 같이 환경정책을 사회 및 자연전반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환경보호에 있어서 과학화의 요구, 그리고 공해에 대한 대책수립의 요구 등이 서서히 제기되었던 70년대는 북한의 환경문제인식과 그 대책이 제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2. 환경정책의 제2기

가. 환경보호법 채택기의 환경정책

북한 환경정책의 제2기는 환경보호법(1986년)이 채택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북한이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환경보호에서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요구한 시기이다. 또한, 국토관리의 감독과 통제의 수단으로 법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국토관리와 환경정책의 전반에 김정일이 전면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이 이 시기 환경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1) 손기웅, “소련·러시아의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현황과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4권 1호(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239~244; 김찬규, “북한의 경제수역에 관한 고찰”, 『북한법률행정논총』, 제5호(1982), p. 93; 박춘호, “북한의 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6집(1984), pp. 91~92; 이용희, “남북한 해양환경 보전분야 협력방안”, 『해양정책연구』, 제8권 2호(1993), pp. 315~339 참조.

우선, 김정일의 글과 환경보호법속에서 엿볼 수 있는 80년대 북한 환경정책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1984년 『국토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란 편지에서 김정일은 첫째, 1980년대의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 목표⁵²⁾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하고 둘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른 국토관리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없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행하는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토관리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장과 주택지건설시에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는 원칙, 토지관리를 잘하여 토지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원칙, 산림의 조성과 보호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 하천관리를 잘하여 홍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연안과 영해의 관리를 잘하여 폐수나 해일에 의한 피해를 막고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을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제시하

52) 1980년 10월 10일 개최되었던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이 목표는 1987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된 경제발전 제3차 7개년 계획(1987년~1993년) 기간내에 실행되도록 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연간 1000억kw의 전력, 1억2000만t의 석탄, 1000만t의 강철, 170만t의 비철금속, 2200만t의 시멘트, 720만t의 화학비료, 15억m의 직물, 1100만t의 수산물, 1500만t의 곡물, 그리고 30만ha의 간석지개간이다. 대부분 공해유발산업인 이들 중공업부문에 대한 무리한 할당량 부과는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간석지개간 역시 심각한 환경손상과 변형을 초래하였다.

였다. 또한, 과학화를 위해서는 전자계산기나 항공 및 우주사진기술 등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한 산림과학연구활동, 중요도시나 산업지구에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없애고 분진이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학기술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기술연수회, 기술혁신토론회, 경험발표회 등의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국토관리설계에서도 과학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구하였다.⁵³⁾

환경정책에 있어서 과학화의 요구는 이제껏 국토관리사업의 일부로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운동적 환경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환경오염방지운동이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사후대책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관리의 개선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국토관리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법규범과 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완성시켜 국토관리에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검사취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이나 규정의 준수실행사항을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허가등록 결재 제도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국토관리에 대한 규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

53) 金正日, 앞의 글, pp. 163~193 참조.

주의 애국주의교양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가 재삼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제 요구는 결국 이미 이시기에 북한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김정일의 환경정책의 평가, 요구, 제안 등이 법제화되어 정식화된 것이 1986년 4월 9일 채택된 환경보호법이다. 김일성은 그 이튿날 발표된 『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란 담화를 통해 치산치수사업, 이로운 동물과 희귀하고 유익한 식물의 보호증식, 거리와 공원들에 대한 녹화사업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일꾼들이 ‘인민의 충족답게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것만큼 교양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옹계 배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높이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라면서 감독·통제기관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감독과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⁵⁴⁾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등 전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환경보호사업

54) 김일성, 앞의 책(1993), pp. 392~405 참조.

의 근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고(제3조), 그것을 위해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며(제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제6조), 무엇보다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환경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제5조).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실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제7조)과 북한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와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II장과 III장에서는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IV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규정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되나, 그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제39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의 규정에는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제47조), 북한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 해를 끼친 사람 또는 선박도 억류하여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⁵⁵⁾

55) 「로동신문」, 1986.4.10.

환경보호법의 제7조를 근거로 북한은 “환경보호법은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이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러한 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책동을 막고 인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이러한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있다.⁵⁶⁾ 북한은 1989년까지 대소의 국내·외 비핵(非核)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여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핵물질로 한반도를 생태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극력 비난하였다.⁵⁷⁾ 그러나, 북한이 핵무

56) 안천훈, 앞의 글, p. 27.

57) 1980년대에 들어서만 북한은 1982년 8월 1~2일 도쿄에서 개최된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서 제한된 핵전쟁구상을 규탄하였으며, 1985년 1월 28일 인도 뉴델리의 『핵군비축소와 세계평화에 관한 제1차 6개국 수뇌자회담』, 1986년 6월 4일 도쿄의 『비핵평화의 태평양을 위하여』란 주제의 국제토론회, 1986년 8월 6~7일 테헤란의 이스파하에서 『핵군비축소와 세계평화에 관한 제2차 6개국 수뇌자회담』, 1986년 9월 6~8일 평양의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 1987년 2월 14일 『비핵세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국제회의』, 1987년 7월 30~31일 도쿄의 『군축과 핵무기 폐절을 위한 아세아 불교도들의 토론회』, 1987년 8월 1~3일 히로시마의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1987년 9월 24~26일 평양의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비핵 평화와 반제 현대성을 위한 국제회의』, 1988년 10월 18~21일 평양의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1989년 1월 7~11일 파리의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였거나 개최하여 핵무기와 화학무기, 그리고 대량살상무

기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쟁점화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핵에 관한 국제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 및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⁸⁾

한편, 북한은 환경보호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은 물론 공산주의 도덕교양, 준법교양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교육사업등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보호법의 제정을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

나. 1990년대의 환경정책

1990년대 북한 환경정책의 특색은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해 추진한 합영법의 연장선상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1992년의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시행세칙』, 1993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토지임대법』, 그리고 1994년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 등에 나타나는 환경오염관련 규정이 그것이다.⁵⁹⁾ 또한, 환경문제의 기술적 해결

기의 개발과 사용에 대하여 극력 반대함을 주장하였다. 1989년 7월 1일부터 개최되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정치행사로 진행되었던 『평화 군축 핵무기 없는 세계안전센터』 및 『자연 및 환경보호 새 국제공보 및 통신질서와 기타 세계적 문제해결센터』에서 북한은 핵물질에 의한 온갖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군비경쟁을 종식하며 핵무기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0~1989) 참조.

5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0~1994) 참조.

59) 제3장 3절 및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서울: 통일원교류협력국, 1994.9) 참조.

책을 모색하면서 과학화와 현대화를 제한적이거나 추진하고 있음을 이와 관련한 북한의 논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⁰⁾ 환경보호에 관한 행사로서 1990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며,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1993년 6월 3일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일꾼들과 유엔개발대표부의 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한다.⁶¹⁾ 국가환경보호위원회는 1993년 2월에 설립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성격과 활동은 아직 불분명하다.⁶²⁾ 그리고 환경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환경관리계획이나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처벌에 대한 지침의 마련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60) 리영철, “폐설물없는 생산공정”, 『국토』, 제4호(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1), pp. 15~16; 김찬한, “공업기업소와 환경보호”, 『국토』, 제5호(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1), pp. 18~19; 김룡담, “소음에 의한 환경오염”, 『국토』, 제3호(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2), p. 18; 김룡담, “공해방지 기술의 당면한 과제”, 『국토』, 제3호(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3), pp. 15~16; 럽재성,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유엔대회에서 채택된 <의정21>과 기후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기상과 수문』, 제3호(평양: 농업출판사, 1993), pp. 46~47 참조.

61) 동행사에서 당시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 리건일은 “지구환경변화와 우리의 민족적 의무”라는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로동신문』, 1993.6.4.

62)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 황상춘은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민족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글을 통해 한국이 다량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국이 북서태평양 해양보전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을 주관하려는 노력을 ‘세상을 웃기는 노릇’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천리마』, 제7호(평양: 천리마사, 1994), pp. 89~90. 그러나, 그는 “이 기구를 내오기 위한 회의는 응당 남조선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여야 한다”면서 동지구자체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남북한 모두가 회원국인 NOWPAP의 틀내에서 환경분야에 관한 남북한 협력과 교류가 다국적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손기웅, 앞의 글(1995), pp. 244~245.

한편,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서 환경관련국제회의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양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된 북서태평양 해양보전계획(NOWPAP)에 북한은 한국과 일본, 중국, 소련/러시아 등과 함께 참가하여 사업추진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NOWPAP은 공식정부간 교섭회의로서 1991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2년 10월에는 북경에서 개최되어 북한이 해양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가 첨예하게 등장한 이후 3차회의부터 북한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동아시아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방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1991년 7월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던 UNDP동북아환경회의에 북한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참가하여 사업추진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공식정부간회의의 성격인 동회의를 UNDP는 1992년 3월부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⁶³⁾

북한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테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대회(UNCED)에 참가하여 환경에 대한 인공적인 파괴적 영향을 막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제반 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 2000년까지 지구환경계획을 수록한 『의정21』, 기후체계에 위협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중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기후협약』,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며 그 지속적 이용과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63) 외무부국제경제국,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결과보고서 (1993.2.8~11, 서울)」, (서울: 외무부국제경제국, 1993.2) 참조.

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에 가담하였다.⁶⁴⁾

환경관련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활동은 그러나 핵무기개발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북한이 1990년대 이전에 국제적으로 가입하였던 환경관련국제회의의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은 환경관련 유엔전문기구와 유엔산하기구에 대한 남북한의 가입현황을, 그리고 <표 III-2>는 환경관련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남북한의 가입현황을 나타낸다. 또한, <표 III-3>은 남북한의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현황을 보여준다.⁶⁵⁾

<표 III-1> 남북한 환경보호관련 유엔전문 및 산하기구 가입 현황

기 구 명	남한가입	북한가입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4
국제해사기구(IMO)	1961	1986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7	-

64) 럽재성, 앞의 글, pp. 46~47 참조.

65) 손기웅, 앞의 책(1995), p. 243.

<표 III-2> 남북한 환경보호관련 정부간 국제기구 가입 현황

기 구 명	남한가입	북한가입
아세아개발기구(ADB)	1965	-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IUCN)	1966	1963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국제수로기구(IHO)	1972	1987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9
국제포경위원회(IWC)	1979	-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

<표 III-3> 남북한 해양오염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연 도	협 약 명	남 한	북 한
1954	유류오염방지협약	가 입	미가입
1966	만제홀수선협약	가 입	가 입
1966	민사책임협약	가 입	미가입
1969	공해개입협약	미가입	미가입
1971	기금협약	미가입	미가입
1972	런던협약	가 입	미가입
1972	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가 입	가 입
1972	콘테이너선 안전협약	가 입	가 입
1973/78	MARPOL협약	가 입	가 입
1974	SOLAS협약	가 입	가 입
1978	선원훈련·증명·관리기준에 관한 협약	가 입	가 입
1979	해상수색 및 구조협약	미가입	미가입
1982	유엔해양법협약	가 입	가 입
1989	해난구조협약	미가입	미가입
1990	유류오염의 예방,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미발효)	미가입	미가입

3. 환경보호관련 법규정

북한의 헌법과 토지법,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 나타난 환경보호 관련 조항과 그 밖에 북한이 채택한 관련 법규정을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강·하천관리, 조립, 동·식물보호, 상·하수도 및 환경 위생, 해양환경보호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 <표 III-4>이다.⁶⁶⁾ 표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산림보호 및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법규정을 채택하였다.

66) 환경보호관련 법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전의 법규정을 생략하였으며 법규정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표에서 생략하였다. 대륙연구소, 「북한법률집 전5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통일원, 앞의 책(1994.9) 참조.

<표 III-4> 환경보호관련 법규정

구분	법령	일시	내용	비고
헌법	사회주의헌법	1992.4.29 개정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57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126조). 공업, (...),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5항). 국토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250조).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86.4.9 최고인민회의법령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잘 보호하며 적극개조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새롭게 규제하기 위해 환경보호법(총 5장 51조)을 채택	
토지법	토지법	1977.4.29 최고인민회의법령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이로운 동식물보호, 천연기념물 보호, 수산자원보호, 공해현상 방지(17조).	
강하천관리	토지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하여	1960.7.5 내각결정 제37호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강하천 개수 및 제방공사와 해안 방조제공사(6조 2항),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공장·기업의 유해물 방지장치(17조)	1955. 2. 28 내각결정 제21호 <토지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관하여> 폐지
	관개하천관리사업의 개선 조치를 강구할데 관하여	1957.11.15 내각결정 제111호	하천제방 및 해안방조제의 보호사업을 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수행(1조)	
	중소규모의 관개하천사방공사를 전 인민적으로 전개할데 관하여	1957.12.7 내각결정 제123호	한발과 수해의 피해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규모의 관개하천사방건설 공사를 농업협동조합들과 조합원 자체의 역량으로 진행(1조), 지방자재원천과 모든 예비를 최대한 동원(2조), 기술적 지도방조대책 강화(3조)	

구분	법령	일시	내용	비고
조림	임야관리령 영 결정서	1946.6.4 임시인민 위원회 결정 제 30호	삼림을 부흥·조성하기 위해 보안림을 지정(2조 10항), 애림사상 고취를 위한 도서발간 및 강연회개최(2조 11항), 합리적 벌채계획을 수립하여 임상의 파괴를 방지(3조 4항), 입목벌채는 매년의 성장률이 벌채할 임적을 보충할 만한 범위내에서 시행(8조), 임야관리령위반자의 규정과 처벌(33조~51조)	
	임야관리 령위반자 처벌규칙	1946.6.27 임시인민 위원회 결정 제 36호	임야에 방화한 자, 보안림에서 도별한 자, 보안림을 侵襲한 자를 유기지역에 처함(1조), 임목을 도별한 자(3조), 삼림을 훼손한 자(4조), 임야내의 금렵구 또는 금지기간중 임야내에서 수렵한 자를 처벌함(6조)	
	특별보호 림에 관한 규칙	1949.12.30 농림성규 칙 제30호	국토보안, 풍수해방지, 수원함양, 보건위생, 학술연구에 의의를 가진 산림을 특별보호림으로 설정(1조), 특별보호림내에서 농림상의 허가없는 채벌, 개간, 토석·수지·수피·수초근의 채취, 채굴 및 방목은 엄금(2조)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1950.1.10 내각결정 제2호	산림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축적 및 그 항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산림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그 임무(2장), 특별보호림의 설정(3장), 산화방지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그 의무(4장),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9장)	
	식수조림 사업강화에 관한결정서	1950.3.21 내각결정 제69호	지도일꾼들이 식수조림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투쟁이 미약하고 결함을 보이고 있어 식수사업, 양묘사업, 사방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결정(1~7조), 산림녹화에 인민들이 자각정 열성으로서 참가하도록 광범위한 선전공작을 문화선전상에 책임(8조)	
	조림사업 소에 관한 규정	1950.4.8 농림성규 칙 제5호	조림사업소를 각도 인민위원회 농림처 직속으로 하여 묘목생산, 조림무육 사방공사를 실시(1조)	1949.1.14 농림성령 제7호<조림사업에 관한 규정> 폐지

구분	법령	일시	내용	비고
조립	도로수보호 및 식수 강화 대책에관하여	1952.2.27 군사위원 회명령 제 236호	도로수의 난벌을 엄금하며(1조 1항), 난벌된 도로의 전선에 걸쳐 10m 간격으로 식수(1조 2항)	
	식수조립사업 및 산림 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6.2 내각결정 제 17호	매년 봄(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과 가을(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에 애립주간을 설정(4조), 동주간에 표어, 포스타, 라디오, 방송 등 선전방법을 광범위 조직·동원(2조), 1957년이내로 산림애호 주제의 영화제작과 교재편입(3조)	
	동해안지구의 치산치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관하여	1958.5.30 내각결정 제66호	동해안지구의 수력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홍수피해와 한발피해를 조절하며 논과 밭에 과수를 원만히 보장(1조)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 데 관하여	1958.7.10 내각결정 제83호	각종 과수목을 비롯한 다종한 수목을 가로별로 식수하여 평양시를 녹화할 데 대한 대책 강구(9조 3항), 녹지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1958년 부터 평양고등건설전문학교에서 도시녹화기술일꾼 양성(9조 7항)	
	식용유의 증산과 식물성 식유의 생산을 급속히 증개시킬 데 관하여	1958.11.24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내각공동결정	식용유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한지와 산녹지들에 야생유지자원을 인공조성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조직·전개(2조 1항 ㄱ)	
	도시원림화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9.6.30 내각결정 제48호	도시원림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자기 향도를 사랑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교양(1조), 1959년말까지 원림협회를 조직하고 1960년 1월부터 동협회의 월간지 <조선원림>을 발간(4조)	
	식수절을 제정함에대하여	1971.3.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김일성이 1947년 4월 6일 문수산에 올라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교시한 것을 기념하여 4월 6일을 식수절로 함	

구분	법령	일시	내용	비고
동·식물 보호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1946.4.2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동·식물이 학술연구를 위해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1조), 일정행위를 금지·제한(4조)	
	수렵에 관한 규정	1947.4.26	범, 곰, 흰곰 등을 제외한 양생조수를 허가 없이 잡지 못함(1조)	
	어업에 관한 규정	1949.12.22 내각결정 제191호	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할 때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취소(8조 1항), 유독물, 폭발물 또는 전기를 사용한 수산 동·식물 채포행위를 엄금하나 海獸 포획에는 예외(10조)	
	천해양식과 담수양어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	1958.11.24 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와 내각공동결정서	천해와 담수에서의 자원조성과 생산을 계획화 하는 동시에 일체 어로는 허가에 의하며, 광산·공장·기업소들로부터 유독물질이 강하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1959년 내로 강구(3조 2항)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하여	1959.2.16 상임위원회 정령	허가없이 유해조수의 야생조수를 잡는 것을 금함(1조), 야생조수보호구 및 바다새번식보호구를 설치(6조), 물고기와 조개는 규정된 기간내에 규정된 크기를 넘는 것들만 잡을 수 있음(8조), 어족 보호구를 설치(10조), 식물보호구를 설치(13조)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한 정령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1959.4.12 내각결정 제29호	각 중앙기관 및 도 인민위원회는 유용한 동·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키는 사업의 인민경제적 의의를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1조), 교육문화성은 각급학교 교과서에 동·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키는 데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며, 1959년내로 백두산, 묘향산, 자모산, 오가산을 자연보호구로, 선천담도, 철산원도, 통천알섬, 응기알섬을 번식보호구로 설정(4조), 산란기에 연어 및 송어잡이를 금지하고 광산공장으로 부터 유독물질이 강하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대책 강구(10조)	

구 분	법 령	일 시	내 용	비 고
상·하수도 및 환경위생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서	1947.5.21 내각결정 제59호	위생검열원은 시설의 위생적 조건과 생활 환경을 일상적으로 검열·지도하며(1조), 국가위생검열원 및 각 위생검열원에 환경 위생검열원 2명을 두고(3조), 각 위생검열원 원장 및 검열원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5조)	1948. 2. 4 북조선인민 위원회결정 제112호 <위생검열원 규정> 폐지
	<위생검열원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1949.12.30 보건성규 칙제13호	환경위생검열원은 상수도·하수도·시가·주택·시장·공동변소·묘지·화장장 등의 시설에 관하여 검열지도하고(1조 4항), 공장은 주택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대에 건설하며(9조), 공장·광산·기업소의 책임자는 온도·습도·풍속·조명·소음·분진·가스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함(37조). 상수도 시설지대에는 原水의 수질 및 수원지보호에 적당한 위생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130조), 토지 및 건물의 사용관리자는 일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하수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155조), 공장·광산·기업소·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상수도에 주입금지(157조)	
	수도에 관한규정	1950.1.21 내각결정 제12호	수원지구역내에 일체 유해물과 기타 오물을 방류하지 못함(5조)	
	위생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조직전개 할데관하여	1958.5.19 내각결정 제52호	도시 및 노동자구에서 분변을 비롯한 일체 오물을 위생적으로 반출 처리할데 대한 대책을 강구(2조 7항)	
해양환경 보 호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	1977.6.21 중앙위원 회 정령	해양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이용,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과 같은 인민과 자원에 대한 유해행위 금지	
	경제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 선박 및 외국 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1978.8.12 정무원결 정제106호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양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이용(1조)	

구 분	법 령	일 시	내 용	비 고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법	1992.10.5 최 고인민회의 상회의 결정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 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 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 지하거나 제한(11조)	
	합영법시 행세칙	1992.10.16 정무원결정 제14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음(5조)	
	자유경제무 역지대법	1993.1.31 최 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 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 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 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13조)	
	토지임대법	1993.10.27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 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10조). 환경 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5항)	
	외국인기 업법시행 규정	1994.3.27 정 무원결정 제 13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 을 승인하지 않음(9조). 국민들의 건강보 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2항)	
	자유무역 항규정	1994.4.28 정 무원결정 제 20호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 야 함(24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25조).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3 항).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 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 (4항).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 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 지의 벌금(5항)	

4. 환경보호구

북한은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식생이 좋고 희귀한 동·식물이 있는 경치 좋은 곳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백두산자연보호구를 비롯하여 오가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칠보산이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다. 희귀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구로는 동계, 대홍동, 신전, 금석, 당아산, 천불산, 사수산, 천마산, 백산, 양암산, 금수봉, 대각산, 수룡산 동물보호구 및 클락새보호구가 있다. 또한, 희귀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맹산 흑송, 양덕 송이버섯, 백암 부채붓꽃 보호구를 비롯하여 신미도, 삭주 온천, 황포 만삼, 장산곶, 수양산, 멸악산, 두류산, 차일봉, 운만대 신의대, 관모봉, 그리고 무봉식물보호구 등이 있다(<표 III-5> 참조).⁶⁷⁾

67) 통일원, 「북한의 자연지리와 사적」 (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4), pp. 319~351; 조선·평양,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p. 51 참조.

<표 III-5> 환경보호구

구 분	보호구 이름	위 치
자 연 보호구	구월산 자연보호구	황해남도 은률군, 안악군
	금강산 자연보호구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묘향산 자연보호구	평안북도, 자강도, 향산군, 구장군, 영원군, 회천시
	백두산 자연보호구	량강도 삼지연군
	오가산 자연보호구	자강도 화평군, 량강도 김형직군
	칠보산 자연보호구	함경북도 명천군
동 물 보호구	대각산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곡산군, 신평군, 수안군
	사수산 동물보호구	함경남도 정평군, 요덕군, 평안남도 대흥군
	양암산 동물보호구	강원도 판교군, 세포군
	자미산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연탄군, 봉산군
	천마산 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천마군, 대관군
	우암 물개보호구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식 물 보호구	장산곶 식물보호구	황해남도 통연군 통연반도
	운종산 식물보호구	평안북도 선천군 신미도
	수양산 식물보호구	황해남도 해주시, 신원군
	삭주온천 식물보호구	평안남도 삭주군 온천로동 지구 거문산
	관모봉 고산식물보호구	함경북도 경성군 매향리, 연사군 삼포리
	두류산 식물보호구	강원도 천내군, 법동군, 평안남도 양덕군
	부전호 식물보호구	함경남도 부전군
	차일봉 식물보호구	함경남도 부전군, 량강도 풍서군
바닷새 보호구	바닷새 번식보호구	강원도 통천군 알섬
	바닷새 보호구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알섬
조 개 보호구	밥조개 보호구	함경남도 신포시
굴 보호구	자연굴 보호구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5. 환경보호관련 기관 및 단체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북한의 행정당국과 조직, 환경보호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 그리고 민간단체들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1992년 10월 북경 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총국(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명의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⁶⁸⁾ 동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환경의 오염여부를 조사·추적·감독하는 정부의 기구로서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총국, 환경감시국(Environment Monitoring Bureau), 해양국(Maritime Bureau) 등이 있으며, 또한 중앙에서부터 군·시·읍·동에 이르는 하부 행정조직에도 환경감시체계가 상설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건성과 위생소 및 검역소도 환경오염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수산업위원회(Fishery Commission), 천해양식 및 항만관리부(Department of Cultivation of Shallow-Sea Productions and Harbours Management), 기타 과학연구소와 각종 교육기관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보호연맹(Union of Environment Protection)과 수질보호연합(Water Conservation Association) 등이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인민계몽활

68) 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DPRK, *National Report of the DPRK on the Marine Environment* (Beijing: Second Meeting of Experts and National Focal Points o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1992.10.26~30) 참조.

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전염병방지, 물공급과 관리, 항만건설, 해양운송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 환경보호교육을 병행시키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각 분야의 어떠한 전문가도 즉각 환경보호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기관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 해양대학, 수산업대학, 건설대학, 의학대학 등의 대학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활동할 기술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모든 대학들과 기타 유사한 연구소들에서는 수십가지의 환경보호에 관한 강좌가 공통으로 강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환경보호연구소 뿐만 아니라 동해 및 서해 해양연구소, 수문기상대(Hydro-Meteorological Service), 과학아카데미연구소, 기타 대학부설 특별실험소에서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조선자연보호연맹(The Korean Natural Conservation Union)과 과학기술연맹(The Science and Technology Union)은 일반인들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교양적인 기술과 다양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출판활동과 TV를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활동도 알리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동보고서에서 주장된 내용이 북한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선전적인 공표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의 여지는 남아있다.

제 IV 장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과 실태

1. 환경오염과 파괴의 구조적 원인

북한은 대를 이어 가는 위대한 수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가장 우월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인민을 위해 전적으로 복무한다는 국가가 탁월한 선진적인 환경보호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인민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의무로서 공기와 물, 토양의 정결도를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과학적이며 이상적인 환경보호정책을 통해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지상낙원을 이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없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이러한 선전과는 달리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환경손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심각한 오염현상에 시달리고 있음이 사실로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적 여건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동·식물도 제대로 보호·관리되지 못하고 남획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우월성,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비생태성과 북한체제가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로 요약될 수 있다.

필연적으로 환경파괴적인 사회일 수 밖에 없다면서 극력 비난했던 자본주의사회에 비하여 그 생태적 우월성을 주장했던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구조적으로 비생태적일 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무슨 일을 하려들지 않았으며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자원과 생산수단이 국가나 협동농장의 소유가 되어 주민각자가 여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산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동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치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동기도 가지지 못하였다.⁶⁹⁾

둘째, 계획경제체제에서 최우선적 과제는 계획된 목표량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자원의 한계속에서 운영되는 경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하였고 여기에 대한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환경보호적 설비마련에 대한 투자는 자연히 소홀하게 되었고 그것이 누적되자 환경보호적 산업형성을 위한 구조조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셋째,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원, 특히 에너지분야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절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자원이 비효

69) 북한에서 노동에 상응한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관하여는 손기웅·길태근, 앞의 글, pp. 60~62, 90~91 참조.

을적으로 사용되어져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

넷째,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를 표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과 경험의 국제적인 교환에는 물론,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인 노동분업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립경제체제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북한내의 자원만을 써야 함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

다섯째, 낙후된 북한의 기술수준과 빈약한 경제력이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환경손상에 대한 대책은 물론 그 예방에 필요한 기술력을 북한은 보유하거나 축적할 수 없었다. 또한 기술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필요한 설비마련을 위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배태한 또 다른 원인으로 북한이 국가적으로 추진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모두가 비환경적이었던 사실은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공업중심의 발전전략을 들 수 있다. 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 일반은 모두 성장전략으로 중공업중심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공업중심의 성장정책은 생산수단의 성장이 소비수단의 성장보다 더 신속히 성장한다는 레닌의 명제로부터 「중공업우선의 테제」를 도출하여 이를 경제발전의 절대적 법칙으로 교리화하여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러나, 중공업중심의 성장전략은 이들 사회내에서 자본주의사회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신기술의 개발·도입을 통해 생산의 경제적·생태적 효율화를 동반하는 내포적 생산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단지 대량생산에 머물면

서 자원의 대량적·비효율적 소비와 생태적 파괴의 확산을 수반하는 기계화만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⁷⁰⁾ 따라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산업은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소비재를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자와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며, 더욱 많은 산업폐기물, 폐기가스, 폐수를 양산하여 환경파괴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체제전환후 이들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은 물론, 중공업중에서도 에너지·금속·비철금속·비료·군수산업 등 공해유발산업에 대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파괴를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 1960년대이후 추진한 4대군사노선에 의한 군사화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4대군사노선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전국토의 요새화」정책과 상시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새없이 반복되는 대·소규모의 군사훈련은 토양과 생태계등 환경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였다. 또한,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군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무기, 탄약, 기타 군수물자들의 엄청난 생산은 또 다른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그외에 70년대에 채택한 자연개조 5대방침에 의한 다락밭 건설, 80년대에 10대전망목표로 추진한 간석지개간, 농산물 증산을 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 등이 환경손상의 원인이 되었다.⁷¹⁾ 여기에 대해서는 제IV장 2절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에서 구체적으로 살

70)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서울: 나남, 1992) 참조.

71) 북한연구소, “북한 환경실태의 현주소”, 「북한」(1995.2), pp. 47~95 참조.

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환경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환경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당일꾼들과 지도일꾼들이 환경정책의 지도·감독·통제에 소홀하였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그것은 또한 환경실태에 관한 논의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만일 지난 기간 우리 일꾼들이 산림을 보호하며 쓸모있는 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더라면 오늘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적지 않은 일꾼들이 우리가 한 연설을 잘 보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량강도에서는 우리가 가서 직접 조직하여준 조림작업반까지 다 없애 버렸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나무를 심지는 않고 찍어 쓰기만 하였으며 또 어떤 지방에서는 하천부지와 화전들에 나무를 좀 심고는 산림조성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무를 더 심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한 1973년 4월 23일의 『농촌수도화를 다그치며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리자』도 그 예중의 하나이다.⁷²⁾

또한, “우리 당은 이미 195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림조성문제를 토의하고 경제림을 많이 조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한동안은 기름나무림조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나 지금은 잠잠하여졌습니다. 당에서 무슨 과업을 내놓으면 처음 얼마동안은 꿩다가도 오래가지 못하고 인차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일꾼들의 사업에서 큰 결함입니다. 경제림조성운동을 벌

72) 김일성, 앞의 책(1993), pp. 211~212.

릴데 대한 과업을 내세운 다음 당중앙위원회에서나 정무원에서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라고 연설한 1976년 10월 14일의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에서는 당일뿐 뿐만 아니라 행정일꾼에 대하여도 비판하고 있다.⁷³⁾

그외에 환경정책의 추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는 중간조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로청이 그 예로서 김일성은 “지난 기간 사로청조직들은 일을 벌려만 놓고 어느것 하나 근기있게 끌고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한때에는 사로청조직들이 <록화근위대>를 조직해가지고 나무심는 운동을 한다고 떠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이 나무심는 운동을 널리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틀어쥐고 나갔더라면 오늘 우리나라의 산들은 다 록음이 우거진 산으로 되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⁷⁴⁾ 환경정책이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원인은 김일성이 1976년 10월 22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경제림조성사업을 널리 벌릴데 대하여』란 담화에서 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서 단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 일꾼들은 무슨 일이든지 당에서 제기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떠들면서 하지만 얼마 안가서 쫓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제일 나쁜 버릇입니다.”⁷⁵⁾

73) 위의 책, p. 237.

74) 위의 책, p. 193.

75) 위의 책, p. 242.

북한이 우월성을 그토록 강조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사회정치제도 자체가, 북한이 위대성을 그토록 강조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 자체가 구조적인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환경손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그 대답 역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당이 공해방지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은 표현이며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지 않으며 후대를 사랑하지 않는 옳지 못한 사상의 표현입니다. (...)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애국주의사상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비판한 1972년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⁷⁶⁾,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동·식물과 땅같은 것을 사랑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애국주의정신이 부족하여 동·식물을 잘 보호하지 않고 나무를 되는데로 찍어다 불을 때며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사업도 잘하지 않고 있다는 1973년 2월 28일의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⁷⁷⁾, 공해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며 공해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에 무관심한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다는 1979년 6월 4일의 『함경남도 도당위원

76) 위의 책, p. 191.

77) 위의 책, p. 199.

회와 중요공장, 기업소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⁷⁸⁾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주민들내에 사상의식이 결여된 것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환경보호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사상교육사업과 그것을 감독할 통제사업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1973년 주석명령 제1호로 『자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할 때 자원보호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더불어 사회안전기관과 감찰기관이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⁷⁹⁾ 1976년 주석명령 제7호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하여』를 발표할 때는 수산자원 보호증식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 것과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 것을 명령하였다.⁸⁰⁾ 또한, 1986년 4월 10일 국가행정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것만큼 교양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옹기 배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높이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 감독통제기관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호관리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라고 통제사업의 강화를, 그리고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환경보호사업을 한사

78) 위의 책, pp. 300~301.

79) 위의 책, pp. 222~225 참조.

80) 위의 책, pp. 248~252 참조.

람같이 펼쳐 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면서 사상사업의 강화를 명령하였다.⁸¹⁾

김정일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84년의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국토관리에 대한 규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할 것과 이와 병행하여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를 지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는 환경보호법의 제5조에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고 법규정으로 집약되어 명문화되었으며, 동규정은 사상교육강화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북한체제나 김일성과 김정일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과 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와 그들에 대한 감독 및 통제의 강화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자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첫째가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고단한 물질생활을 이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심신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81) 위의 책, p. 404.

2.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

가. 대기오염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비생태적 요인과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환경손상의 실태를 그 진실성이 추호도 의심되어질 수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촬영 영화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오염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공업화의 력사는 공해의 력사’이지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국가적 관심’을 돌려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등 예견성 있는 모든 대책을 취함으로써 ‘공해없는 공업화를 실현하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하였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⁸²⁾ 또한, 공해방지와 더불어 예지있는 환경정책을 실시한 결과 ‘환경보호의 기본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평양지방의 아류산가스의 농도가 국제적인 허용기준에 비하여 무려 15분의 1이나 낮고, 공기와 수질이 좋은 등 북한 전역이 노동당시대에 와서 세상사람들이 것처럼 부러워 말하는 공해

82)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27, 1984), p. 441; 전대영, 앞의 글, pp. 49~50.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⁸³⁾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도시 특히 중공업도시에서의 공해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공해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함흥지구의 대기오염이다. 함흥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도시로서 그중에서 지역의 70%가 공장지대인 함흥시 홍남구역에는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홍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모방직공장 등에서 나오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제해결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9년의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와 중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란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공해현상을 막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함흥지구는 다른데보다 공기가 맑지 못하다며 자신이 함흥에 올 때마다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완전히 없앨 것을 강조하였으나 화학공장들에서 아직도 유해가스냄새가 난다고 비판하였다.⁸⁴⁾ 또한, 이듬해인 1980년 7월 10일에는 『함경남도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이란 연설에서 지난해 전체 당원과 인민들이 달라붙어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을 막을데 대한 과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83) 「로동신문」, 1986.4.8.

84) 김일성, 앞의 책(1993), p. 299.

하고 공장과 기업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함흥시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함경남도당위원회와 함흥시당위원회, 함흥지구의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 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이 채택된 다음에도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들은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어떠한 해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다시 비판하였던 것이다.⁸⁵⁾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이 개선되기는 커녕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음은 1989년 8월 27일 『마전유원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동연설에서 ‘함흥시의 공해현상을 막으려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공해현상을 막자고 구호나 부르면서 소극적으로 달라붙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공장, 기업소의 낡은 설비를 보수할 때 강판을 가지고 현 바지를 깎듯이 땀때기를 하다보니 해마다 보수를 하여도 설비가 계속 못쓰게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⁸⁶⁾

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현상은 함흥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77년의 『토지법에 대하여』란 연설에서 김일성은 지난 기간 도시건설에서 주민구역과 공장구역을 분리하여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이 공해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도를 하였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면서 “그러한 실례로 청진시 도시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청진시 복구건설계획에 대하여 엄격히 비판하였으며 새로 짓는 살림집은 청진시내의 공

85) 위의 책, pp. 316~317.

86) 위의 책, pp. 428~429.

장 가까이에 짓지 말고 공장연기가 미치지 않는 라남지구에 짓도록 하였습니다”라면서 청진내륙지역의 주민들이 김책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 등에서 나오는 매연과 이황화탄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⁸⁷⁾ 그외에 제철, 제련, 화학, 군수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극심하다.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에는 아황산가스와 수은연기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며,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자강도의 만포, 강계등 군수공업지대와 탄광지대도 대기오염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대기오염은 북한의 영화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영화 『폐허우에 솟아난 조선』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평양, 함흥, 강계, 남포, 원산 등의 공장지역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전후 폐허속에서 현대적인 공업을 일떠 세웠다고 자랑하고 있다. 영화 『조국기행 함경북도』에서는 선철과 강철을 생산하는 김책제철소에서 솟아나는 매연을 볼 수 있으며, 영화 『조선의 새모습』에서도 공업화의 상징으로 공장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2년 12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을 촬영한 남북문제연구소의 영화중 『다시 찾은 함흥』편 역시 흥남비료공장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해로 안개가 낀듯 흐릿한 함흥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함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표 IV-1>은 동북아지역 주요국가들의 오염집약도를 나타낸다.

87) 위의 책, pp. 257~258.

오염집약도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국내총생산량(GDP)으로 나눈 것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활동수준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낸다. 오염집약도는 환경과 관련한 국민경제의 경제-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오염집약도는 SO_x가 48.5톤/백만달러, NO_x가 17.6톤/백만달러로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CO₂ 역시 자본주의사회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⁸⁸⁾

<표 IV-1> 동북아시아 국가의 오염집약도(오염물질배출량/GDP, 1990)

	SO _x (t/백만달러)	TSP (t/백만달러)	NO _x (t/백만달러)	CO ₂ (t/천달러)
한 국	6.8	1.8	3.9	0.28
중 국	54.8	57.7	20.2	1.86
일 본	0.4	0.1	0.7	0.10
몽 골	42.5	n.a.	30.4	2.80
소 련	9.3	n.a.	3.8	0.60
북 한	48.5	n.a.	17.6	1.60
미 국	3.9	1.6*	3.7	0.24
세 계	7.3*	5.0*	5.0*	n.a.

(* 표는 1980년대 후반)

88) 소련의 경우 오염집약도는 구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GDP를 계산할 경우 실제 오염집약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pp. 15~16.

나. 수질오염

공기외에 물 또한 오염되고 있다. 그 실태 역시 김일성의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아직 우리의 하수도시설에는 갖추지 못한 것이 적지 않으며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통강과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오수관들을 다른데로 돌리는 공사가 잘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강, 대동강 같은 좋은 강에 계속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해전부터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광산, 탄광들에서는 나쁜 물을 강에 막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광산, 탄광들에서 나오는 물에는 독이 있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물질을 강하천에 그냥 흘러 보내면 물고기를 몽땅 죽여버릴 수 있을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1962년 9월 5일의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수질오염의 역사가 오래됨을 알 수 있다.⁸⁹⁾

김일성은 또한 1963년 6월 30일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란 연설을 통해 ‘지금 강에 물고기가 적은 것은 공장이나 광산들에서 유독성물질을 내려보내는 것 과도 주요하게 관련’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번 강조하였으나 아직도 “광산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그냥 내려보내고 있으며 평양방직공장에서는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대동강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광산과 공장들에서 강에 유독성물질을 그냥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전에는

89) 김일성, 앞의 책(1993), pp. 97~98.

옥류교까지 무리를 지어 올라오던 물고기들이 지금은 만경대앞까지 왔다가는 약냄새를 맡고 다시 바다쪽으로 내려갑니다”라고 다시 비판하였다.⁹⁰⁾ 1964년의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는 황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다음부터 광산에서 흘러드는 유독성물질 때문에 그전에는 많던 대동강의 송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⁹¹⁾

1970년대는 물론 80년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72년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서 김일성은 당이 공해방지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⁹²⁾ 1978년 11월 9일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란 연설에서는 하천관리사업을 잘 하려면 탄광, 광산들에서 버력과 미광을 아무데나 몽땅 버리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탄광, 광산들에서 버력과 미광을 아무데나 망탕 버리기 때문에 강바닥이 높아지고 강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고 있습니다. 청천강바닥이 높아진 것도 조양탄광을 개발하면서 버력을 망탕 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였다.⁹³⁾

1989년 4월 20일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김일성은 “대동강물을 평양시에는 음료수로 리용하고 있으며 대동강과 그 지류들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관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시를 비롯하여 대동강을

90) 위의 책, pp. 183~184.

91)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18, 1982), pp. 171~172.

92)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27, 1984), p. 522.

93) 김일성, 앞의 책(1993), p. 286.

끼고 있는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잘 갖추어 놓지 않고 오수를 망탕 흘려보내기 때문에 대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수질오염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⁹⁴⁾

한편, 수질오염이 농약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가끼이에 있는 바다가에서는 논에 친 농약의 영향으로 인해 왕새우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1984년 4월 26일 『칠색송어를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파악할 수 있다.⁹⁵⁾

1986년 제7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대동강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6mg/l,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8.3mg/l이라면 대동강의 맑음을 최초로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면서 자랑하였다.⁹⁶⁾ 그러나, 오수와 하수, 그리고 폐수에 의해 대동강이 오염되었음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그는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에서는 상·하수도관리문제, 오물처리문제, 공해방지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으나 그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⁹⁷⁾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영화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에서는 “광산을 하나 개발하고 공장을 하나 앗혀도 강물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그 뜻이 있어 공장들에서는 오수정제시설들이 광산들에는 미광침전지들이 건설된 것이 아닌가”, “우리 당의 환경보호정책으로 수려한

94) 위의 책, p. 410.

95) 위의 책, p. 383.

9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 799.

97) 김일성, 앞의 책(1993), p. 407.

산천에 맑은 공기, 맑은 물 넘치니 약동하는 모습 끝없이 안겨 옵니다”, “어딜가나 고기떼 흐르는 강, 이것이 바로 환경보호법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공해를 모르는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 이 사실 역시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2년의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그는 도시주민들에게 음료수를 잘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들에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1973년의 『농촌수도화를 다그치며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리자』란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연설에서 김일성은 평남관개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숙천군 창동리에 가서 하루저녁을 지내면서 그곳 농민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개공사를 빨리 하여 농민들의 먹는물 문제부터 해결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천군 책임일군들은 평남관개공사가 끝난지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농촌주민들의 먹는물 문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창동리에 나가 알아보니 그곳 농민들은 아직도 어지러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숙천군 창동리에는 농업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여러 번 잤다왔고 도의 간부들도 많이 다녔지만 누구 하나 그곳 농민들의 먹는물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이다.⁹⁸⁾

깨끗한 음료수공급문제는 그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1978년의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지금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많이 지어 놓았지만 상하수도시설을 잘 갖추어주지 못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얼마전에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 가보니 다층살림집을 지어 놓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을 잘 갖추어주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라고 비판하였다.⁹⁹⁾ 최근까지도 깨끗한 먹는물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방지 작업이 농촌은 물론 도시, 특히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수도 평양에서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에서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비판한 앞서의 연설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수질오염은 하천관리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역시 김일성의 연설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2년의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하천관리사업을 잘하면 농경지를 비롯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산들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될뿐 아니라, 하천정리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할 것없이 하천관리사업을 잘하지 않고’ 있다고,¹⁰⁰⁾ 그리고 1964년의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도 “국토와 자원

98) 위의 책, p. 202.

99) 위의 책, p. 293.

100) 위의 책, p. 111.

이 모두 국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있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데는 없었습니다. 어항이나 호소, 강하천을 놓고 보아도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만 있었지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라면서 하천관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란 1965년 11월 17일의 연설에서는 강·하천을 잘 정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밭머리가 뜯기여 나가고 그 흙이 흘러내려가서 강바닥이 자꾸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¹⁰¹⁾

강·하천에 대한 관리, 상·하수도 및 오물처리시설, 유독성물질의 방류 등에 대한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방북 해외동포 및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해갑문 건설이후 남포지역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나온 폐수가 대동강으로 역류하여 평양의 식수원인 대동강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끓여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호텔에서 신덕샘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제일의 철광산이 있는 무산, 그리고 남양, 회령 등과 중국의 도문시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공장, 펄프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및 도시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 역시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 시멘트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폐수에 의해 식수로 사용할 수

101) 위의 책, p. 155.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들 폐수와 유독성물질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북한은 1992년 NOWPAP 제2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해양과 해양생태계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수질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올바른 환경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측의 해양에 생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동보고서에서 조차 부분적인 해양오염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흥과 해주만과 같은 동해의 경우 폐기물이 지금까지는 해양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공업화가 진전되고 해양에 물질이 축적되고 생물학적 집중화가 진행된다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함흥과 원산만에서는 가끔씩 얇은 기름층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해양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낡은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것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서해의 경우 압록강의 입구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¹⁰²⁾ 1992년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중 『원산지역을 찾아서』편은 원산공단과 인근 함흥공단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2) 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op. cit.*, pp. 4~15 참조.

다. 토양오염과 산림파괴

북한의 토양도 오염되었다. 토양이 오염되고 척박해진 원인은 우선 다량의 비료와 농약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 식량의 양적인 증산을 위해 비료를 가장 많이 빨아 먹는 작물인 옥수수를 대규모 재배하게 한 정책은 토양을 척박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부족한 식량의 증산을 위해 벼와 옥수수만 계속 심은 것도 토양척박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화학비료의 다량투여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지력이 떨어졌으며, 농약의 다량살포는 토양오염을 초래하였다. 귀순한 농업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보다 거의 두배에 이르는 양의 비료를 사용한다고 한다.¹⁰³⁾

한편, 토양은 광범위한 산림파괴에 의해 침식되거나 유실되었다. 김일성은 1947년의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란 담화에서 산림조성사업을 강조한 이후 산림을 남별하지 말며 조림사업을 적극 벌릴 것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여 왔다. 1950년 1월 농림, 수산부문지도일꾼연석회의,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1954년 5월 전국임업부문열성자회의,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보고, 1956년 11월 민청중앙위원회일꾼들에게 한 연설, 1958년 5월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꾼들앞에서 한 연설,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61년 9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보고,

103) 북한 농업기술자 출신 귀순자 이민복의 증언, 「월간조선」(1995.7), pp. 321~339 참조.

1962년 9월 5일 도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 1962년 11월 20일 내무성 일꾼들에게 한 연설, 1963년 8월 량강도당전원회의, 1964년 2월 10일 내무성 및 도시경영성 일꾼협의회, 1964년 8월 평안남도당전원회의, 1965년 5월 25일 당, 정권기관 지도일꾼과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65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1970년 2월 전국지방산업일꾼대회, 1970년 10월 황해남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1972년 2월 16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 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등의 연설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¹⁰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파괴와 손상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에 대해 거듭 비판하는 김일성의 연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에게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산림이 인민의 소유로 된 것만큼 그것을 애호 관리하여야 하겠으나 일부 사람들은 나무를 망탕 찍어 산을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1947년의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¹⁰⁵⁾, “우리는 흔히 일제놈들이 나무를 망탕 찍어 썼다고 욕합니다. 그놈들은 조선이 자기 나라가 아니다보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동안 나무를 적지 않게 망탕 찍어 썼습니다”라는 1958년의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¹⁰⁶⁾, “아직도 일부 지방들에서는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는 사업을 제대로

104) 김일성, 앞의 책(1993), pp. 208~211 참조.

105)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3, 1979), p. 206.

106)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12, 1981), p. 257.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지 않고 있으며 심어 놓은 나무도 잘 관리하지 않아 적지 않은 나무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나무가 깊은 산골에나 있지 별방을 낀 산들에는 거의 없습니다”라는 1964년의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등이 그 예이다.¹⁰⁷⁾

또한, 지금 산림을 잘 가꾸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태가 나서 강바닥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뚝을 쌓고 다른쪽에서는 산을 벗기는 한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화전을 일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도 계속 화전이 증가하여 “이번에 기차로 함흥에 가면서 보니 신성천에서부터 양덕고개밑까지 골짜기의 산들을 거의다 벌거벗겼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사태가 나고 대동강바닥이 높아지며 룡라도 같은 섬들이 자꾸 커집니다. (...) 이번에 부수상동무들이 지방에 내려갔다와서 보고한테 의하면 만포, 위원, 초산 일대에서 45도이상의 심한 경사지까지 새땅을 개간한다고 하면서 산을 벗겼다고 합니다”라는 1965년의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다. 동연설에서 김일성은 경제림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새 나무를 심기전에 본래있던 나무를 다 베어 산을 벗겨 비가 오면 사태가 나는 작태도 지적하였다.¹⁰⁸⁾

산림파괴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은 거의 해마다 계속되었다. “아직도 일부 지방들에서는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지 않

107)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18, 1982), p. 180.

108) 김일성, 앞의 책(김일성저작집 19, 1982), p. 356.

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심어 놓은 나무조차 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강군의 실례가 바로 그러합니다. (...) 좋은 아카시아나무, 가독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보라는듯이 기름나무림표말을 쫓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기름나무림조차 잘 가꾸지 않다 보니 몇대 안되는 분지나무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 이러한 결함은 비단 통강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다른 시, 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라는 1965년의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¹⁰⁹⁾ “자강도에서는 내각결정을 어기고 화전을 일구어 숲한 산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 위원군, 초산군, 우시군 일대를 돌아보았는데 화전을 일구느라고 나무를 망탕 찍었기 때문에 산이 못쓰게 되고 장마때 사태가 나서 산 밑에 있는 밭까지 못쓰게 되었습니다. 국토관리성에서도 경제림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귀중한 나무를 적지 않게 찍어 버렸습니다”라는 1966년 11월 30일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¹¹⁰⁾ 등의 연설이 그 예이다.

산림파괴는 북한주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다락밭건설이었다. 1976년의 『알곡 1,0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김일성은 “자연개조 5대방침은 첫째로 발관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을 하며,

109) 김일성, 앞의 책(1993), p. 154.

110) 위의 책, p. 163.

넷째로 치산치수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가지 자연개조사업가운데서 우리가 당장 힘을 넣어 빨리 밀고 나가야 할 것은 발관개, 다락밭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치산치수사업입니다”라면서 그 중에서 산지대가 많은 북한에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드는 것은 알곡증산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다락밭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앞으로 가까운 몇해사이에 15만~20만 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111) 그러나, 김일성은 다락밭건설이 산림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1989년의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은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다가는 술한 땅을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라면서 자신의 지시를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112)

북한의 야산 대부분이 민둥산이 된 것은 다락밭 건설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북한주민에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 농민에게는 석탄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땀값이 필요하였고, 석탄을 땀다 하더라도 불쏘시개용 장작이 필요하여 농민들은 나무를 찍어 쓸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재난이 산림파괴에 일조를 하였다. 집을 지으려 해도 자재가 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림법이 엄하여도 산림파괴행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자원에 대한 소유의 협

111) 위의 책, pp. 227~229 참조.

112) 위의 책, p. 416.

동화와 국유화에 의해 주민들이 산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었고 내것이 아니란 생각으로 나무를 마구 찍어 썼던 것이다.

식량부족이 또한 산림파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화전민이 하는 대로 풀과 나무를 베고 무조건 밭을 만드는, 이른바 띄기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다. 식량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행태를 당국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다.¹¹³⁾

산림남벌과 다락밭 및 띄기밭건설로 인한 산림황폐화의 실태는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중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의 최북단 청진, 나진』편에서 평양에서 청진으로 가는 도중 차창밖을 촬영한 영상에는 다락밭건설로 인해 철로주변의 야산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흔적을, 산림을 남벌하여 주택가 주변에 나무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두고온 고향 신의주, 영산』편에서는 다락밭으로 인해 산이 완전히 벗겨진 영상인근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

한편, 나무는 정치적으로도 훼손되고 있다. 김일성은 물론 김정일이 위대함을 선전하기 위하여 나무밑줄기의 껍질을 벗겨 충성의 글을 새긴 이른바 「구호나무」를 북한 곳곳에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에는 일제시대때 항일유격대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기 위해 새겼다는 구호나무를 곳곳에서 발견하였다고 선전

113) 「월간조선」(1995.7), pp. 321~339 참조.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 후에 정치적 목적으로 꾸민 것에 틀림없다. 북한영화 『백두산』에는 구호나무를 유리관으로 봉하여 혁명사적지로 정하여 놓고 일반인들이 참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과학영화 『오가산』에서는 오가산의 원시림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충성의 글 ‘항일명장 김일성장군 천만년 장수 1938’, ‘백두광명성은 조선독립광명성, 광복조선명성은 세계의 광명성 전민항쟁 1944’ 등이 새겨진 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토지와 산림은 물론 북한은 자연의 바위까지 정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위에 정치적 구호를 새기는 행위는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 북한영화 『금강산으로 가자』에서는 수려한 금강산의 바위들에 ‘주체사상’, ‘김일성만세’,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등의 수많은 구호글들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중 『해주지역 방문기』편에서는 수양산의 정상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깎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의 장문의 김일성찬양 글귀는 물론, 김일성의 생가 모습까지 바위에 새겨놓았음을 볼 수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금강산 등의 바위들은 김일성추도문으로 또 다시 수난을 겪었다. 금강산에는 ‘조선아 자랑하자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었던 영광을’이란 대형글귀가 새겨졌다.

라. 동·식물 남획

동·식물에 대한 보호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방직후부터 자연에 대한 것을 학교 교과서에도 넣고 책으로도 많이 써서 학생들과 인민들을 널리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며 지어 동식물을 보호중식할데 대한 국가의 법령을 어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사업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작노루를 잡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잡기 때문에 복작노루가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114) (...) 일정한 기간 번식시킨 다음에 잡고 또 몇해 동안 잡지 않고 번식시켰다가 잡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은 보기만 하면 잡습니다”라는 1966년의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와115), “산짐승도 잘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루와 꿩과 같은 산짐승은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때에는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하겠으나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망탕 잡아 먹었습니다. (...) 몇해전만 하여도 황해남도에 노루와 꿩이 많았는데 최근년간에는 그것을 너무 많이 잡았기때문에 지금은 얼마 없다고 합니다”라는 1973년의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라는 연설이 그 예

114) 서부 마식령 이남지대에 서식하는 복작노루는 부드러운 갈색털을 가졌으며, 숫컷은 입술밖으로 날카로운 잇빨이 나와있다. 아카시아잎과 콩을 주식으로 한다. 북한영화 「우리나라 노루와 사슴」 참조.

115) 김일성, 앞의 책(1993), pp. 163~164.

이다.¹¹⁶⁾

또한, 1959년 6월 11일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란 연설에서는 어족들을 계획적으로 보호증식해야 하는데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물고기종자를 없애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¹⁷⁾ 그외 바다의 물고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는 풀을 베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풀이 영양가가 있다는니 그것을 섬유원료로 쓸 수 있다는니 하면서 바다속의 풀을 모조리 베어내 물고기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한 1963년의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와¹¹⁸⁾ 우리나라에는 호수도 많고 강·하천도 많기 때문에 양어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지 않아 반두로 새끼고기까지 다 잡기때문에 물고기를 제대로 기를 수 없다는 1966년의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등에서 동·식물의 남획실태를 엿볼 수 있다.¹¹⁹⁾

이상에서 자료와 정보의 제한 속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글, 북한의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의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추적해 볼 수 있다. 북한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유사한 방식의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여 왔음을 상기할 때, 즉 북한의 제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추구한 근대화정책의 보편성 - 예를 들어 계획경제체제와 중공업중심의 발전전략 - 을 북한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체

116) 위의 책, pp. 199~200.

117) 위의 책, pp. 82~83.

118) 위의 책, pp. 184~185.

119) 위의 책, p. 164.

제와 정책의 근원적인 비생태성으로 인해 오늘날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상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환경실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²⁰⁾

120) 서독과 외부투자자들이 동독기업의 인수에 있어서 가장 꺼리는 부분이 바로 동독산업체의 환경오염이었다. 독일 Ifo경제연구소의 평가에 의하면 2000년까지 동독지역을 서독의 환경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독지역에 투자되어야 할 비용은 약 2,000억DM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에 1,250억DM, 공기정화시설에 230억DM, 쓰레기처리시설에 340억DM, 오염지대정화에 110억DM, 식수문제해결에 170억DM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독지역과 비교한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실태에 관하여는 통일원, 「독일통일실태 자료집: 정치·외교분야」 (서울: 통일원통일정책실, 1993.4), pp. 77~79 참조.

제 V 장 결 론

북한의 환경관은 사상적, 철학적으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한다는 주체사상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인간의 욕구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게 하는 철저한 인간중심적 자연지배적 환경관을 낳았다. 그 결과 환경 혹은 환경자원은 가능한 한 많이 보호·증식되어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질 대상과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 질적으로 개선된 삶의 영위를 위해 형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환경문화는 환경에 생명성을 부여하여 존중하는 바탕위에 환경을 인간과 더불어 공생공영하는 동반세계로 인식하면서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부분만을 사용한다는 환경조화적이고 환경관리적인 환경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한 바람직한 환경문화의 형성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체제의 정책과 사상교육에 구속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환경조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보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현실이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제도중에서도 가장 환경보호적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하였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력에 의한 예지있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펼친 결과 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였다는 북한에서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고 파괴되며 동·식물이 남획되는 등 환경문제가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의 수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체제의 선전이 그 체제의 수령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 환경실태의, 나아가 북한체제의 현주소이다.

주민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을 표방한 북한의 환경정책은 그 본래의 목적 보다도 다음과 같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졌다. 첫째, 환경정책이 주체사상에 수렴되어 인민대중의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각인시키기 위한 사상교육 및 조직화의 수단으로, 노력동원운동의 추진명분으로, 동원에 대한 자발적 참여요구의 명분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관련하여 사상적, 이론적 능력을 갖춘 후계자로서의 품모와 덕성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상징조직의 일환으로 김정일을 환경정책의 전면에 등장시켜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일환으로 이용하였다. 셋째, 공해없는 나라 북한, 공해병의 나라 남한이라는 대남선전적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넷째, 환경정책을 대외선전적 차원에서 북한도 환경보호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환경관련 마찰을 선제적으로 예비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용하였다.

결국, 북한주민은 체제의 선전과는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란 이름하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동원되고 통제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의 정신과 교시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김정일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가 남북한주민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공통의, 유일한 삶의 터전임을 직시한다면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문화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남북한 모두가 긴급히 대처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환경조화적인 환경관의 정립이 남북한주민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행태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가치관의 공유를 위한 노력은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 바람직한 환경문화의 형성을 위해 현 시점에서 힘을 쏟아야 할 방향은 한국내에서 주민들이 환경조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일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경분야에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해보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공동협력은 상호 공통의 삶의 터전을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다.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과 남북한간에 내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는 상호 공동협력을 통한 접근가능성이 큰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²¹⁾

북한의 환경문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적 운동으로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벗어났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과학화, 기술화, 현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및 과학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이 북한 자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북경의 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양오염의 감시와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¹²²⁾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은 우선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경제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최근 발표된 북한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이 공동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121) 손기웅,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 방안연구”,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II: 남북교류협력분야』, (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3), pp. 7~106 참조.

122) 동회의에서 북한은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와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폐수와 하수의 처리에 관한 보다 개선된 설비와 기술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에 소요되는 재정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서태평양지역의 각국에 의해 허용된 기준치와 생태적 정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서 해양수질에 관한 지역적 허용기준치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적 해양환경보호에 필요한 전문가와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op. cit.*, pp. 17~18.

같다.

우선, UNEP산하 지구환경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반도내 환경오염감시를 목적으로 한 공동협력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 내·외의 대기오염측정과 감시활동, 바람·비·강물 등을 통해 오염원천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활동, 수질에 대한 공동측정 및 감시활동,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의 감시활동,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측정과 감시활동, 멸종해 가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활동 등이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둘째, 환경보호적 생산설비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공동연구이다. 생산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줄이면서 원료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그 사회의 기술발전수준에 비례한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폐열 등을 이용하는 원료의 종합적 이용, 폐기물을 2차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 및 제품설계, 폐기물회수이용기술 등과 같은 환경보호적인 생산기술의 개발이 공동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자연재해에 관한 공동연구로서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보, 예방 및 조직적인 대책수립의 분야이다. 자연재해는 돌발성, 지역성, 반복성, 주기성을 가지므로 여기에 관한 정보교환 - 재해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 재해방지기술 등 - 을 통해 발생원인, 주요특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환경손상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환경자원에 관한 공동연구로서 남북한이 개별적 자원을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자원체계를 공동

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자원체계라 함은 자원자체 혹은 주요자원과 이 자원을 전환하여 최종생산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설비, 기술, 운송수단, 정보 등을 의미하는 보조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체계연구는 해당지역의 사회문화체계 및 환경체계와 밀접한 관련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해당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 자원에 대한 양·질적 측면에서 장·단기적인 수요전망 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자원에 대한 공동연구, 특히 지열·풍력·태양열·파도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그외에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 동해의 소련·러시아의 방사성물질 투기에 대한 오염조사,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이동성대기오염 및 황사현상에 대한 조사 등도 공동협력의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은 쌍방의 직접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기 전에는 쌍방만의 대화보다는 기타 관련국가가 포함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대화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이 회원국인 NOWPAP이나 기타 환경보호관련 국제기구가 대화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류와 협력의 추진과정에서는 공식적인 협상단보다는 기술전문가, 관련학자들에 의한 남북한간 실무적 접촉을 국제기구의 지원아래 선행하여 이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대표단간의 협상

에 앞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실태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공동조사시에는 관련 국제기구의 파견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작업이 진행된 후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인센티브 등 교류와 협력의 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 강·하천 및 해양오염이 남한에만 피해를 주고 북한을 피해갈 수는 없다. 중국에 의한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이, 동해에 폐기된 소련/러시아의 방사성물질이 남한에만 해를 미치고 북한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을 초월한 문제인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은 제로섬(Zero-Sum)이 아닌 비제로섬(Non Zero-Sum)분야이다. 국가간의 군비축소나 경제의존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이기심에 의한 공정치 못한 행태로 어느 일방이 타방에 비해 보다 큰 이익/손실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 해가 될 수 없는 분야이다.¹²³⁾ 환경문제에 대한 상

123) 물론,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폐기물의 80%를 버리고 있는 선진국과 세계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의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개발도상국간의 불평등문제, 그리고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보호기술을 상품화하려는 선진국과 환경보호적 성장이란 세계적 추세로 인해 자국의 경제개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간의 남북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호협력이 「Win-Lose」관계가 아닌 「Win-Win」관계임을 깨닫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때 이념에 의한 대립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기에 아직도 냉전이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 최소한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환경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_____. 「전국록화의 위대한 구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대륙연구소. 「북한법률집 전5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上·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12.

법무부. 「북한법연구 6: 노동법」. 서울: 법무부법무실, 1987.

- 「백과전서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평양). 「현대조선말사전」.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88.
-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외무부국제경제국.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의 결과보고서 (1993.2.8~11, 서울)」. 서울: 외무부국제경제국, 199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0~1994.
- 조선·평양.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통일원. 「독일통일실태 자료집: 정치·외교분야」. 서울: 통일원통일정책실, 1993.
- _____.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서울: 통일원교류협력국, 1994.9.
- _____. 「북한의 자연지리와 사적」. 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4.
-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서울: 나남, 1992.
- 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DPRK. *National Report of the DPRK on the Marine Environment*. Beijing: Second Meeting

of Experts and National Focal Points o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1992.10.26~30.

Son, Gi-Woong. *Umweltmilitarismus. Sozio-Militarismus und Öko-Militarismus*. Hamburg: LIT-Verlag, 1992.

2. 論 文

김룡담. “소음에 의한 환경오염”. 「국토」, 제3호. 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2.

김룡담. “공해방지기술의 당면한 과제”. 「국토」, 제3호. 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3.

金正日. “國土管理事業を改善強化するために: 全國國土管理部門活動家大會の參加者におくつた手紙 1948年 11月 19日”. 金日成/金正日. 「自然環境の保護 造成」. 東京: チュチュ思想國際研究所, 1987.

김찬규. “북한의 경제수역에 관한 고찰”. 「북한법률행정논총」, 제5호. 1982.

김천한. “공업기업소와 환경보호”. 「국토」, 제5호. 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1.

럼재성.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유엔대회에서 채택된 <의정21> 과 기후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기상과 수문」, 제3호. 평양: 농업출판사, 1993.

리영철. “폐설물없는 생산공정”. 「국토」, 제4호. 평양: 중앙과학

- 기술통보사, 1991.
- 박준호. “북한의 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6집. 1984.
- 북한연구소. “북한 환경실태의 현주소”. 『북한』, 제2호, 1995.
- 손기웅.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 방안연구”.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II: 남북교류협력분야 1993』. 서울: 통일원정보분실, 1993.
- _____. “갈등과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환경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3집 1호. 1993.
- _____. “환경자원의 군사적 사용과 그 생태적 영향: (비)연료 광물질과 토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2호. 1994.
- _____. “소련·러시아의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현황과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4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길태근.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문화연구 上·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안천훈.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 법전”.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1986.
- 이용희. “남북한 해양환경 보전분야 협력방안”. 『해양정책연구』, 제8권 2호. 1993.
- 이창위. “북한의 해양법정책”. 통일원.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I』. 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4.
- 전대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1973.

- 황상춘.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민족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천리마」, 제7호. 평양: 천리마사, 1994.
- Dobson, Andrew. “Ecologism”. in Roger Eatwell/Anthony Wright (ed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Meyer-Abich, Klaus M. “Bedingungen des Friedens mit der Natur”. in Jörg Calließ/Reinhold E. Lob (eds.). *Praxis der Umwelt- und Friedenserziehung, Bd. 1*. Düsseldorf, 1987.
- Naess, Arne.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1973).

3. 북한영화

- 「국토건설의 새력사」
- 「금강산」
- 「금강산으로 가자」
- 「금강산, 조선의 명산 묘향산」
- 「금수강산 내조국 노래부른다」
- 「묘향산」
- 「백두산」
- 「사계절 아름다운 나라」
-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
- 「오가산」
- 「오랜 문화의 나라」

- 「우리가 본 평양」
- 「우리나라 노루와 사슴」
-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동글, 식물, 마양송어」
- 「전진하는 조국」
- 「조국기행 강원도」
- 「조국기행 개성시」
- 「조국기행 함경남도」
- 「조국기행 함경북도」
- 「조선의 새모습」
- 「조선지리 함경남도」
- 「조선지리 함경북도」
- 「지하의 명승 석화궁, 창광원, 송도원」
- 「천연기념물」
- 「평양의 모습」
- 「평양을 찾아서」
- 「폐허우에 솟아난 조선」

4. 기 타

- 「국토의 최북단 청진, 나진」 (남북문제연구소 촬영영화, 1992)
- 「다시 찾은 함흥」 (남북문제연구소 촬영영화, 1992)
- 「두고은 고향 신의주, 영산」 (남북문제연구소 촬영영화, 1992)
- 「원산지역을 찾아서」 (남북문제연구소 촬영영화, 1992)
- 「해주지역 방문기」 (남북문제연구소 촬영영화, 1992)
- 「로동신문」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 대 석*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북한의 문화정책 및 교류방향

제 III 장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제 IV 장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평가

제 V 장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제 VI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빈 면

第 I 章 序 論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상이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체제와 이념을 수용, 발전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언어, 문학, 예술, 종교 등 문화전반에 걸쳐서 광범한 이질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더우기 남북한이 교류 및 대화를 거의 단절한 상태로 지난 50년을 보내오면서 문화의 이질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오늘날 민족문화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분야 남북교류는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문화교류는 민족의식의 동질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단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즉 폭 넓은 문화교류는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민족의 내적통합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문화교류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이고 피상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더우기 지난 2~3년간은 북한의 핵문제, 우성호 송환문제 등 남북한 사이의 몇 가지 첨예한 문제들로 인하여 문화분야 남북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1994년 10월 미·북간 핵협상의 타결과 그 후속 조치인 금년 6월 경수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남북한 관계도 점

차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즉 올해를 기점으로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문화분야 남북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본 연구는 어렵게 성사된 남북문화교류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새로운 교류의 방향과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남북문화교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북한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교류에 임하는 입장을 분석하려 한다.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 되고 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교류에 임하는 자세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측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일성 사후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교류에 임하는 북한측의 입장을 예측·분석하려 한다.

III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문화교류의 전개과정 및 현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류 침체의 구조적 원인 및 교류 프로그램 자체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려 한다. 문화교류의 추이는 크게 70년대의 남북한간 문화교류 모색기, 80년대의 여건조성기, 그리고 90년대의 제도화 시도기 등 단계적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남북교류는 한반도 내외적 정세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구분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본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문화교류가 지닌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려 한다. 문제점들은 크게 구조적 요인, 정책적 요인, 그리고 교류 시행시 발생하는 자체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어 진다.

IV장에서는 기존의 문화교류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시도 하려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교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문화교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었던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시 남한측의 평양 공연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과 1990년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석한 남한측 연주단 공연, 그리고 제3국에서의 남북합동공연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V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반복학습’ 전략이란 한마디로 문화교류가 남북한 두 행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적(positive-sum) 행위라는 것을 남한측이 북한측에게 반복되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 확신시켜 주는 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한측은 무엇보다 교류 원칙의 확립, 교류 시행상의 일관성 유지, 교류의 상대적 독자성 확보 등을 꾸준히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문화교류의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문화정책 및 교류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동신문」, 「조선문학」,

「조선예술」 등 북한의 1차문헌과 함께 남한의 주요 일간지, 통일원 및 각종 연구기관의 관계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한다. 아울러 남북문화교류 경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류과정에서의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수집, 분석한다.

第 II 章 北韓의 文化政策 및 交流方向

남북문화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 문화 전반을 추동시키는 기본원리를 규명함으로써 남북문화교류시 북한의 교류에 임하는 원칙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이 중시하는 요소들을 밝혀냄으로써, 남북문화교류시 그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파악했을 때라야, 비로소 남북문화교류시 우리가 택해야 할 교류의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화정책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남북한이 현재 보이고 있는 문화상의 차별성과 동질성, 긍정성과 부정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남북문화교류가 감상적 통일염원의 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통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문화정책의 지향점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

1. 北韓 文化政策의 基本方向

가. 北韓에서의 文化의 概念

북한의 문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북한에 있어서의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은 북한 고유의 철학적 세계관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거하면 문화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이와 같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고유한 문화란 사람이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 사람의 고유한 활동양식, 그리고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지워진다.¹⁾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북한의 문화개념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과 함께 민족을 문명화하는 것을 문화의 주요목표로 한다.²⁾ 여기서 민족을 문명화한다는 것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 즉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을 더욱 더 문화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³⁾ 즉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합된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주체적으로 건설할 때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성장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적 특성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는 민족적 특성과 함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북한의 문화론에 따르면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는 진보적인 문화이며, 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는

1)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8~10.

2) 위의 책, p. 16.

3)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제1집, (1993), p. 14.

문화는 반동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넓고 반동적인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민족적·계급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혁명은 사상·기술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3대혁명이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들이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한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의 혁명을 계속하여야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 까지의 과도기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당면 전략적 과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문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발전은 인민대중들의 민족 자주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고양하여 민족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며, 또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문학예술 분야에서 ‘주체의 문예이론’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⁴⁾

4) ‘주체의 문예이론’에 관하여는 김재용,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비판적 연구,” 『통일문화연구(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73~410 참조. 아울러 보다 상세한 북한의 문화정책에 관하여는 이현경·최대석, “남북한

나. 文化政策의 樹立과 推進實態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북한의 문화는 그 존재가치가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혁명투쟁의 사상적 무기에 있다는 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이러한 결정론은 다양성이라는 문화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들의 이념적 관점에 따라 선택한 것 이외에는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해 버린다.

북한문화를 결정론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관점은 바로 김일성의 '교시'이다. 북한은 '당의 유일적 지도'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책수립에 있어서 당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의 구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시'가 정책의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문화의 결정론적 논리는 1962년 11월 김일성이 작가, 예술인에게 내렸다는 다음과 같은 교시에서 잘 나타나 있다.

... 문화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 문화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⁵⁾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32~349;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5) 「김일성 저작선집 2」, p. 579.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특기할 사실은 60년대부터 김정일이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1966년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968년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 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0년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을 거쳐 1972년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선전선동부 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시절에 직접 창작하였다는 「피바다」 등 혁명문학 작품들을 재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는 등 문화정책을 통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시도하였다.⁶⁾ 이후 김정일은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등의 저작을 통하여, 또는 작가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그리고 4·15 창작단의 지도를 통하여 문화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김정일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문화정책 분야의 각종 문건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김정일의 '지적'으로 대체됨으로써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발간된 「주체적 문예이론연구」(문예출판사 간행, 전5권)는 종래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김일성의 교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김정일의 지적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 「철학사전」의 1970년 판과 1985년 판의 '문화'항목들에 대한 풀이를 보면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두 사전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1985년 판에서는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한 문화혁명을 강조하는 김정일의 지적이 돋보인다.

6) 이우영, 앞의 책, pp. 55~56 참조.

정치, 경제, 군사 등 여타의 분야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아직 유효하던 시기에 문화예술분야에서만 유독 김일성의 교시가 김정일의 지적에 그 자리를 물려준 것이다.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북한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김정일이 '사상교양의 무기'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먼저 권력을 계승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정당성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거두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91년에 「작가들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여야 하며 또 당 문예노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5대 명제」를 발표하는가 하면,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통해 구체적인 창작지침을 지시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무용예술론」(1992.5), 「미술론」(1992.6), 「음악예술론」(1992.6), 「주체문학론」(1992.6) 등 모든 예술분야를 포괄하는 저서를 잇달아 출간한 바 있다.

아울러 90년대 들어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문학」, 「조선예술」 등 주요 신문과 잡지의 편집방식이 김정일의 문화에 관한 지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조선문학」은 1992년부터 「명제해설」란과 「위대한 업적」란을 마련하고 있다. 「명제해설」란에서는 김정일이 제시한 문화정책들을 소개하고, 예술가 및 모든 인민들이 이러한 방침의 내용과 의미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함을 힘주어 강조한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란은 작가들이 집필자가 되어 자신들의 창작에 김정일의 직접적인 교

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회고하고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 1994년 1월호에 실린 다음 글은 북한 문화전반에 있어서 김정일의 확고한 위치를 확인해 준다.

문학사업전반을 놓고 볼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문학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에 <무용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을 집필완성하여 세상에 선포하신 것은 우리 문학예술분야의 대경사이며 문학예술의 본령을 잃고 있는 세계 문학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세계문화사에 특기할 사변중의 위대한 사변입니다... 정녕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시야말로 문학예술의 거장주의 걸출한 거장이시며 위인중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십니다.⁸⁾

‘교시’와 ‘지적’에 기초한 북한의 문화정책은 구체적으로 당에 의해 수립되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된다. 노동당 비서국 산하의 선전선동부는 북한사회의 조직적 특성으로 보아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과학연구소 산하의 문화연구소 등 문화관련연구소에서 이론서 등이 집필되고 있어 북한 문화정책의 수립에 이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정무원 산하의 문화예술부와 문화예술단체인 문예총, 작가동맹 등은 산하의 「4·15 창작단」, 「백두산 창작단」 등 창작단체, 「조선예술」, 「조선문학」 등의 기관지 등을 통해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7)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1993), pp. 35~36.

8) 「조선문학」(1993. 1), p. 33.

다. 朝鮮民族第一主義 精神 및 民族文化遺産繼承 政策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구호가 함축하고 있듯이 북한은 해방이후 줄곧 문화정책의 목표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현에 두어왔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이후 주체사상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주체와 자주라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보다 민족주의를 정책의 구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은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및 ‘민족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들 구호나 정책이 진정으로 민족적 역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에서 나온 자주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은 김정일 ‘로작’으로 일컬어지는 「주체문학론」의 일부이다.

...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산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체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갈 수 없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수 없다... 특히 문학작품에서 우리 수령이 제일이며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이 격조 높 이 우러나와야 한다.9)

9)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7.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란 결국 김일성 유일사상이며 심화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체제고수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¹⁰⁾ 즉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진정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에서 나온 논리가 아니라 가중된 외우내환 속에서 방어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합리화 시책이다.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정책으로 왕릉복원, 민족악기의 개량사업, 리조실록의 번역사업, 팔만대장경 완역사업 등 ‘민족문화유산계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2년 5월 황해도 개풍군에 소재한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을 방문하고 “왕건이 우리나라의 통일국가를 세운 첫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건릉의 증축을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일 역시 왕건릉의 개건에 깊이 간여한것으로 알려졌다.¹¹⁾ 한편 왕건릉 개건에 앞서 북한은 1993년 5월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의 증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 1992년 5월에는 발해유적 발굴조사사업을 연해주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민족문화유산 계승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단군릉의 발견주장이다. 북한은 1993년 9월 28일 단군의 유물과 유골이 출토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로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단군 유골 및 유물의 발견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¹²⁾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1993년

10)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70.

11) 「로동신문」, 1994. 2. 1.

12)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자.” 「로동신문」, 1993. 10. 4.

10월에는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 단군릉 발굴결과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과 민족문화유산계승정책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민족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정책은 주체사상이 그러하듯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문화유산발전의 필연성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한 해명을 주시면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문학예술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우리 당의 민족자주로선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었다.¹³⁾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문화유산에는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 두기만 할 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 것도 있다. 그것은 민족문화유산 자체가 지난 시기 인민들과 함께 여러 사회계층에 의해 창조된 조건에서 시대 계급적인 제한성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¹⁴⁾

즉 민족문화유산계승의 정책적 목표는 민족문화 그 자체의 발전에 있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문화유산 계승정책이란 어디까지나 ‘당성’과 ‘로동계급적 원칙’에 의해 선택된 제한적인

13) 신경균, “유산과 전통에 대한 주체적리해,” 『조선문학』(1994. 2), p. 51.

14) 위의 글, p. 53.

것이지 과거의 모든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민족문화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관점에 대한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 高位級會談 協商過程에 나타난 北韓의 文化交流 原則

가. 「기본합의서」採擇過程에 나타난 北韓의 交流原則

북한의 대남 문화교류정책의 원칙 및 방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 부문의 남북문화교류 관련조항의 타결과정시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¹⁵⁾ 이는 「기본합의서」가 남북한간에 상이점을 제거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이룬 최초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남한측은 「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안을 제시하였다. 즉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통해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한다”와 “남과 북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체신, 학술·교육, 문화·예술, 언론·출판, 종교, 보건, 환경, 체육, 과학·기술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이다.¹⁶⁾

15) 남북고위급회담은 쌍방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990년 9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모두 8차례 진행된 바 있다. 남북한은 제5차 고위급회담(1991. 12)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합의서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회담(1992. 2)에서 발효되었다.

16) 통일원, 「남북고위급회담 주요쟁점에 대한 쌍방주장 비교표」(1993. 2), p. 238.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북과 남은 과학, 기술,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각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여 협력한다”는 초안을 제시하면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개방하자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인민이 서로 단합하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건전하게 일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병폐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이처럼 깨끗한 우리사회를 악취 풍기는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⁷⁾

결국 타결과정에서 북한측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에 대한 남한측의 제안을 마지 못해 동의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남북한 사이에 언론매체가 상호개방될 경우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유입되고,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정치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⁸⁾

북한측은 같은 이유에서 언론인 교류와 종교교류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은 반대의 명분으로 언론인 교류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면 해결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17) 위의 책, pp. 242~244.

18)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p. 21 참조.

북한이 종교교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의 종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북한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를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 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헌법조문에서 보듯이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종교가 외세개입의 매개체로서 체제동요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으로 볼 때, 종교교류를 회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반면 북한측은 문학예술,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는 남북간에 예술단 교환, 국제예술제 공동참가,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등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타결과정을 거쳐 「기본합의서」의 문화·예술분야 관련 조항인 제16조가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이다.

나. 「부속합의서」採擇過程에 나타난 北韓의 交流原則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남북한은 1992년 3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7회, 위원장 접촉 1회, 위원접촉 6회의 타결과정을 거쳐 제8차 고위급회담(1992.9)에서 교류실천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의 남북한 쌍방의 제의 및 주장에 있어서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측은 「부속합의서」 제9조 3항과 관련하여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 등을 통한 학생, 교직원, 작가,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사회문화분야 관련인원간의 상호 교류”의 실시를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교류대상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물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교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¹⁹⁾ 특히 북한측은 종교인, 언론인 교류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임으로써 「기본합의서」 채택시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북한은 남한측의 “남북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교환하자”는 제의(제9조 2항)에 대해 예술단 표현 및 예술단 교환 시기 등의 명기를 회피하면서 “문학예술분야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²⁰⁾ 결국 남한측은 북한측 안을 대폭 수용, 제9조 2항을 채택하였다.²¹⁾

19) 통일원 회담사무국, 「사회문화공동위 수첩」(1995), p. 26.

20) 위의 책, p. 25.

21) 제9조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북한은 1985년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 예술단의 교환을 함께 주장한 바 있으며,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와 송년통일전통음악회 행사에도 적극적이었다. 더우기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은 소위 혁명가극인 「꽃피는 처녀」의 공연을 위한 예술단의 교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민족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예술단을 상호교환하지는 남한의 제의를 거부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이는 북한예술단의 서울 공연에 대한 우리측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한 태도로 보여진다. 즉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북한측 의도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²²⁾

북한은 제9조 4항에서 다른 예술작품, 문화유품,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²³⁾ 이는 북한이 그들의 예술수준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하겠으며, 또한 지역특성상 고구려 및 고려시대의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문화유품의 교환전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예술작품과 문화유물 등의 교환전시에는 다른 문화예술분야의 교류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인적교류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체제붕괴의 위협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 협력을 실시한다.”

22)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p. 24.

23) 제9조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제11조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거나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한측의 원안을 거의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동안 제3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행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진출 역시 직접적인 인적교류를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체제에 미치는 여파가 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측의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보여준 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남북문화교류에 가장 적극적인 분야는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와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진출이다. 한편 예술단의 교환방문은 명시하기를 거부하였으나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언론매체의 교류 및 개방문제에는 소극적이며, 언론인 그리고 종교교류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3. 金日成 死後 北韓의 文化政策 및 交流의 方向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문화정책은 당분간 김일성의 사망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사망 이전에 이미 문화분야에서는 김정일체제가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이 북한 문화예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 문화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문화와 관련된 각종 문건에서 김정일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충성의 붓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우리르며 다지는 우리 작가들의 충성과 신념의 맹세입니다.²⁴⁾

<너 이제는 어찌했니 수령님대원수님이 안계시니>
 어린것 두는 반짝이며 거침없이 대답한다
 <김정일원수님이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도 심오한 진리
 어린것도 쉽게 똑똑히 깨닫고있다.²⁵⁾

위의 문건들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김정일의 권위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문화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80년대 후반 김정일에 의해 이미 추진된바 있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민족문화유산 계승이라는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정당하다는 사상적 통일을 보다 굳건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앞으로도 북한의 문화의 이론과 실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는 문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일성의 업적을 미화하고 그를 민족보다 우위에 두어왔던 북한 정권은 체제고수를 위해서도 김일성 유일사상을 계속적으로 지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90년대 들어 민족문화의 범주에 ‘혁명적문학예술’을 포함시킨 바 있다. 여기서 혁명적 문학예술이라

24)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홍석중, “우리는 그이만 우러릅니다,” 『문학신문』, 1994. 7. 18.

25) 백인준, “마음의 성장,” 『문학신문』, 1994. 7. 25.

함은 소위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의 전통을 말한다. 이는 김일성의 항일혁명 문학을 민족문화유산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김일성의 업적을 미화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우기 “혁명적문학예술이 질적 내용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²⁶⁾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고전문화유산 보다 오히려 김일성의 혁명적 문학예술을 우위에 두는 논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한편 김일성 사후 그에 대한 찬양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 들어 북한의 문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11월 3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일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격려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이 문화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북한의 현 상황이 ‘사상교양의 무기’인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 김정일은 앞으로 북한의 문화정책 전반을 직접 관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에 있어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²⁷⁾

북한의 문화정책을 김정일이 주도해 왔다는 사실은 남북문화교류 역시 김정일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1990년말 서울에서 있었던 평양민족음악단의 공연성과를 전하는 「로동신문」의 기사는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26) 신경균, 앞의 글, p. 55.

27) 김정일의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신상옥, 최은희의 김정일과의 대화녹음에도 나타난다. 김정일은 신상옥, 최은희와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내 집무실에서 대화(1983. 10. 19)를 나누면서 “우리 에- 남북교류에서 첫번째가 뭐가 하던 우선 문화교류다, 문화합작이다, 그렇게 하는데 내 타산이 그렇습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1), p. 268 참조.

남조선의 한 연주는 ‘평양민족음악단의 예술적 수준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악기를 개량한 것을 봐도 좋고 연주수준도 대단히 높아 좋고 프로도 매우 다양하여 좋다. 이처럼 세계적 수준에 오른 음악예술을 지도하신 분이 다름아닌 김정일선생님이시라니 머리가 숙여진다. 참으로 김정일선생님은 천재적 예지를 지니신 분이다. 나는 당신들이 부럽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김정일 선생님의 영도를 받고 싶다. 나는 북한과 남의 음악예술에서는 이미 통일이 되었다고 본다. 김정일선생님께서 만년장수하시기를 절절히 바라는 우리 이남음악인들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²⁸⁾

위 기사에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사실은 북한에서 남북문화교류의 성과가 김정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이제까지 남북문화교류의 주요 책임자가 김정일이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현 체제하에서 북한이 남북문화교류에서 중요하게 내세울 정책은 김정일이 주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기초한 민족문화유산 계승정책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민족문화유산 계승정책을 통해 민족문화유산 자체가 시대계급적인 제한성을 면할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낡은 사회제도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문화유산 중에는 없애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모든 민족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관점을 ‘복고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민족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남한은 건국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목표 아래 전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비록 남북한간에 ‘민족문

28) 「로동신문」, 1990. 12. 24.

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모두 '민족문화의 계승 내지는 창달'을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류의 활성화 가능성을 예시한다 하겠으며, 아울러 교류의 전개방향을 제시해 준다 하겠다.²⁹⁾

넷째,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간간히 유연성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학부문에서 우선 이광수의 작품들이 북한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춘원의 장편소설인 「개척자」와 단편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가 북한의 문예정책을 반영하는 「현대조선문학선집」 제8권에 수록되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춘원을 '친일반동작가'로 매도하고 문학사 논의에서 제외시켜왔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재평가까지는 못되어도 하나의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도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이 책에서 과거 문학예술의 유산에 대해서 과감한 해금을 실시하는데 그중에서 궁중음악에 대한 부분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궁중음악을 과거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비판하여 왔다. 남북문화 교류시 남한이 선보인 궁중예술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여 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은 궁중예술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계급적 원칙에서 봉건제왕과 량반에게 복무하던 궁중예술의 반인민성을 폭로비판하여야 하며 궁중예술형식을 그대로 되살리는

29) 박상천, “북한의 민족문화 유산 계승 정책에 대한 고찰,” 『북한학보』 제18집 (1994), p. 13.

경향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궁중음악 가운데서도 음악이나 무용의 가락에 대하여서는 덮어놓고 봉건적이며 반인민적인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궁중음악이나 무용의 가락도 원천은 어디까지나 인민음악과 민족무용에 있다... 우리는 궁중음악, 궁중무용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알맹이를 찾아내어 우리의 민족예술을 민족적 바탕 위에서 풍만하게 발전시키는 데 살려 써야 한다.³⁰⁾

궁중음악이나 궁중무용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과거 북한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북한의 남북문화교류 정책은 이전과 달리 비교적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0) 「주체문화론」, p. 26.

第 III 章 南北文化交流의 現況

1. 南北文化交流의 展開

가. 1950~60年代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이어 9월 9일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남북한의 두 정부는 통일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을 풍성하게 내놓았으나, 북한의 무력에 의한 통일시도로 분단상황은 고착화되었다. 또한 동서냉전에 의한 적대적 대결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1957년 제2차 전국기자대회시 남북언론인교류를 제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58년 12월에 제17차 올림픽 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북한 인민배우 박영신이 남북공동 영화제작 및 연극경연대회를 제의하였으며, 1966년에는 북한의 언어학자 홍기문은 남북기자교류를 제의하였고, 조류학자 원홍구는 남북과학자교류를 제의한 바 있다.³¹⁾ 그러나 이러한 북한측의 제의들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교류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채 「대남호소문」 형식을 빌어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3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1995.8), p. 10.

나. 1970年代

본격적인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시도는 1970년대 들어 국제적인 긴장완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해방 25주년에 즈음한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무모한 대남 적화노선을 버리고 “개발과 건설과 창조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평화통일구상」선언과 함께 이듬해인 1971년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하고 북한측이 이를 수락하여 분단 26년만에 남북대화가 처음 시작되었다.³²⁾

이후 남북한은 70년대 중반까지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오가며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과 정치적 차원의 남북조절위원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교류의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은 1977년 12월 제25차 실무회담을 끝으로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담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7·4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 3월 부위원장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70년대의 남북교류가 별 진전이 없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회담기간 동안의 인적교류와 그것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 직통전화의 개설을 통한 고위당국자간의 연락채널 설정, 「7·4 공동성명」의 채택·발효 등 그 성과는 크게 보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제2권(1986), p. 284.

다. 1980年代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는 1984년 9월 북한이 서울과 중부 일부지역의 수해와 관련한 구호물자 제공 제의를 해오고, 남한측이 북한과의 접촉재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락함으로써 재개되었다. 한편 이를 계기로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다시 재개되어 제8차 본회담(1985.5)에서 남북한 쌍방은 광복 40주년을 맞는 그해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남한측 제의)과 예술공연단(북한측 제의)의 교환방문에 합의하였다.³³⁾ 이에 따라 남북문화교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방문이 성사되어 1985년 9월 21과 22일 양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한 예술단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남북교류의 역사에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가 이같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예가 없었던 만큼 이 행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1984년 LA 올림픽과 1986년 북경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체육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 참가하기 위한 제1차 체육회담(1984.4)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모두 세차례에 걸친 체육회담은 아무런 실질적인 합의를

33) 이후 남북한 쌍방 적십자사는 모두 네 차례의 비공식접촉과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1985년 8월 22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제3차 실무대표접촉에서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그리고 기타 인원 51명으로 구성된 총 151명의 방문단 규모와 1985년 9월 20일에서 23일까지의 방문시기에 대한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못본 채 소련의 LA 올림픽 불참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유산되고 말았다.

남북경제회담(1984.11~1985.11)은 정부차원의 실무회담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모두 5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문서나 물자교류를 성사시키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남북경제회담은 최초의 관리급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교역품목, 자연자원 공동개발, 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 연결,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폭 넓은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경제분야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1985.7~1985.9)이 이루어져 북한측이 제의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과 우리측이 제의한 「통일헌법 협의기구 구성문제와 평화통일 기반조성 문제」를 놓고 두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졌으나 본 회담의 의제와 회담형식에서 의견이 엇갈려 역시 결렬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에 들어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대화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의 경직된 대화자세로 인하여 회담의 개최 → 중단 → 재개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적십자회담을 제외하고는 남북문화 교류가 본격적인 의제나 내용으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라. 1990年代

정부는 1988년 7월 7일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통합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은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7·7 선언」은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남북한 사회의 상호신뢰 및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³⁴⁾

정부는 「7·7 선언」의 후속조치로 해방이후 금서로 여겨져 왔던 많은 북한 및 공산권 자료와 도서를 특정기관을 통해 일반에게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며(1988.10), 월·남북 문학인 작품에 대한 선별적인 해금조치를 취하여 북한의 문학작품이 서점에 선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학생간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육당국회담(1988.7)을 제의하기도 하였다.³⁵⁾

한편 정부는 1990년 2월 통일민속 잔치인 「정월 대보름 답교놀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부와 통일원 공동으로 「남북문화교류의 5원칙」을 발표하였다. 「남북문화교류의 5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분단 이전의 우리민족 전통문화를 우선 교류한다.
- ② 승부 및 경쟁적 분야는 배제한다.
- ③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방식은 지양한다.
- ④ 쉽고 작은일에서부터 시작한다.
- ⑤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등이다.

34) 통일원, 「통일백서」(1990), p. 51.

35) 비록 무산되었으나 정부는 이 제안에서 쌍방 각기 1,000명 규모의 조국순례단을 정하여 남한측 학생들은 판문점을 통해 백두산으로, 북한측 학생들은 판문점을 통해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교류행사를 제의하였으며,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축구, 남여농구, 남여배구를 1차종목으로 시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진전되면 음악, 미술, 무용 등 각 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위의 책, p. 58 참조.

「남북문화교류 5원칙」은 단속적인 문화교류의 추진을 지양하고 보다 정기적인 안목에서 문화교류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9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³⁶⁾를 발족시켰으며,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³⁷⁾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간의 접촉·왕래·교역·협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공공재정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1990.8)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적인 제도화의 시도와 더불어 남북한은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 특히 「기본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6)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 부처 차관급 14인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3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실정법은 「국가보안법」이 유일한 것이었으며, 「국가보안법」체계내에서 남북한 주민들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규제되어 왔다.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9)에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 양측은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여 1992년 5월에는 「기본합의서」 제22조³⁸⁾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문화교류의 추진을 위한 공동기구로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들 공동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1992년 9월 17일에는 4장 20조 50항으로 구성된 「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부속합의서」 제3장은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사업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민정부 등장 이후 정부는 1993년 「문화창달5개년계획연구」안을 수립하면서 남북문화교류의 단계적 방안으로 ① 문헌자료와 작품교류, ② 문화예술인 교류, ③ 민족 동질성 회복실천의 3단계 전략을 수립해 놓고 그 세부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의 포기과 함께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교류를 추진할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과거의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³⁹⁾

38) 「기본합의서」 제22조는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9)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창달5개년계획연구」(1993. 10), p. 239.

이상과 같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문화교류의 5원칙」의 천 명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기본 합의서」에 기초한 남북간에 문화교류를 위한 공동기구의 설치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문화교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아래 제 분야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남북문화교류의 현황은 다음 절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2. 南北文化交流의 推進現況

가. 文藝分野

19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더불어 실시된 예술단의 공연을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한간의 문화교류는 1990년 8월 1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교류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보장함으로써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문예분야 남북교류의 첫번째 사례는 황병기 등 14명의 남측 국악인들이 북한의 조선음악가동맹의 초청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통일음악회」(1990.10)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초청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오는 등 동 행사가 정치성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예술 행사로 보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화합 및 남북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들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범민족통일음악회」에서 남한측 국악인들은 시조, 사물놀이, 민요, 대금 독주 등의 전통음악 연주를 선보였다.⁴⁰⁾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1990.12)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황병기의 답례형식의 초청에 북한측이 융합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평양민족음악단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북한측의 공연내용은 서도명창, 옥류금⁴¹⁾ 독주, 가야금 독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동 공연을 통해서 민요조의 노래들은 순수 전통음악에서 많이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옥류금 등 개량악기와 그 연주기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뉴욕에서는 「남북영화제」(1990.10)가 개최되어 남북한 영화 각 7편에 대한 시사회가 열렸다.

이러한 국악인들의 상호방문 및 제3국에서의 영화교류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문화교류의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이후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 왕래에 의한 문화교류는 1990년 남북 국악인 교환공연 이후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교포 밀집지역에서 교포 문화예술단체의 주선하에서 제3국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우기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분야 남북한교류는 교류건수에 있어서나 교류인원에 있어서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형편이다.

40) 동 행사는 남북한 이외에 미주·구주·소련·중국·일본 등지에서 온 15개 해외교포 연주단체 및 230명의 음악인이 참가하여 199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평양의 2·8문화회관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41) 소리가 맑아 금강산 옥류동의 물소리 같아서 옥류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 악기는 공후를 발전시켜 개량한 악기이다.

통일원에 의하면,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된 이후 1995년 7월 30일까지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총 193건(932명)이었으며, 이중 23건(398명)이 성사되었다.⁴²⁾ 즉, 남북문화교류의 성사율은 신청건수의 약 11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표 1> 문화예술분야 남북교류내역 현황

건/(명), (1989.6.12~1995.7.30)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4 (3)	3 (3)	
1990	26 (78)	20 (72)	4 (50)
1991	66 (457)	44 (417)	8 (209)
1992	39 (142)	39 (142)	2 (81)
1993	19 (71)	18 (68)	2 (21)
1994	20 (126)	17 (112)	4 (32)
1995	19 (54)	15 (45)	3 (5)
계	193 (932)	156 (859)	23 (398)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이러한 문화분야 대북접촉은 최근들어 더욱 부진한 실정이다. 남북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1991년에는 총 66건(457명)의 대

42)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1995. 4), p. 5.

북접촉신청에 44건(417명)이 승인되어 8건(209명)이 성사된 반면, 1992년에는 39건(142명) 신청에 2건(81명)만이 성사되었으며, 1993년에도 19건(71명) 신청에 2건(21명)만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에 실시된 남북한 문화교류는 지난 4월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 개최 협의를 위한 북경 실무회동과 9월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된 「뉴코리아나 국제사진전」 등 4건(32명)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 30일 현재까지 안숙선 등 국립창극단원 2명이 일본 조총련 주최 「판소리의 밤」(5.23)에 출연한 것과 김용태 민예총 사무총장의 제2차 「코리아통일미술전」 개최협의를 위한 북측대표 접촉(6.23, 북경) 등 단 3건(5명)의 교류가 성사되었을 따름이다.

남북문예교류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하겠다. 여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이 상충되고, 공연물의 특성상 대규모의 인원·비용·시간 등이 소요되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문화교류는 아직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교류의 폭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문화예술인들의 대북접촉은 그 내용에 있어 종래의 국악 등 전통공연문화 위주에서 출판, 미술, 무용, 대중가요, 영화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문화분야 남북교류의 추진현황을 장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분야는 한국문인협회, 한국펜클럽, 한국시인협회 등 국내 권위 있는 문학단체들이 남북문인교류 제의(1992.3), 「아시아시인대회」시 북한시인 초청제의(1993.8), 국제펜클럽에 북한의 가입을 권유(1991.2)하는 등 교류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작가 김주영은 장편 「화척」의 취

재를 위해 방북신청(1991.10)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작가들의 방북신청이 줄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분야는 「범민족통일음악회」, 「송년통일전통음악회」를 비롯하여 「환동해예술제(1991.5, 일본) 등이 성사되어 다른 장르보다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평양국립교향악단 초청 공연(1992.3, 중앙일보), 남북교향악단 교환공연(1995.4, KBS), 남북어린이 합동대합창연주회 개최(1992.3, 한국정서교육개발원) 등과 같은 이벤트 행사가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도되었으나 아직 까지 성사되지는 못하고 있다.

미술분야는 「남북코리아서화전」(1991.5, 북경), 「코리아통일미술전」(1993.10, 동경·오사카) 등의 남북미술작품 공동전시회가 성사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물자교역차원에서 북한미술작품의 반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미술협회는 「조형예술 아태총회」(1990.6, 서울)에서 북한미술인 초청 및 미술교류를 제의하는 등 남북미술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2차 「코리아통일미술전」은 김일성의 사망(1994.7)으로 성사직전에 무산된 바 있다.

연극분야는 창극 「아리랑」 북한공연(1990.8, 동아일보) 등이 모색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아 전통연극에 관한 심포지움」(1991.11, 북경)에서 극작가 김의경외 2인에 의해 남북연극인 접촉이 최초로 이루어진 바 있다.

민속분야의 경우 1991년 8월 사할린에서 남북합동으로 「'91 남북통일전통미용문화풍속제」가 개최되어 진도북춤, 농악 등이 공연

되었으며, 한국부인회는 북한에 남북토속음식경진대회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남북전통공예자료 교환(1991.1, 전통공예기능보존협의회),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전시(1992.5, 여성신문사), 어촌민속 공동조사(부산수산대) 등이 시도된 바 있다. 민속분야는 앞으로 생활문화 중심의 남북교류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해 나간다면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영화분야는 최초의 남북영화교류라 할 수 있는 「뉴욕남북영화제」(199.10)를 계기로 대중필름, 다남홍업, 김호선영화 등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주로 미주지역 교포 영화인들의 중개로 교류가 모색되고 있다. 「임격정」(김호선영화), 「장길산」(대중필름) 등의 남북합작영화 제작, 백두산·금강산 기록영화 제작 등이 시도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도 1992년 8월 MBC 예술단과 대중가수들이 북한측 공연단과 합동으로 사할린동포 위문행사인 「통일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 북한의 보천보전자악단의 초청공연에 국내 이벤트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초의 남북사진교류인 「뉴코리아나 사진전」(1994.9)이 연길에서 개최되어 한국사진작가협회와 조선사진가동맹간에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주요 남북문예교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제3국 개최 주요 남북문예 교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뉴욕남북 영 화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 10. 10~14 ◦ 장소 : 뉴욕 ◦ 참가 : 남측 31명, 북측 8명 ◦ 내용 : 남북한 영화 각 7편 시사회 개최 	미국지역에서 개최된 영화인 공동행사
환 동 해 국제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 5. 2~5 ◦ 장소 : 쓰루가 ◦ 참가 : 남측 52명, 북측 60명 ◦ 내용 : 중앙국립관현악단과 평양 음악무용단의 합동공연 	일본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예술인 공 동행사
남북코리아 서 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 5. 27~29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28명, 북측 10명 ◦ 내용 : 남한작품 49점, 북한작품 27점 합동전시 	중국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예술인 공 동행사
'91 남 북 통일전통 미용풍속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 8. 17~18 ◦ 장소 : 사할린 ◦ 참가 : 남측 120명, 북측 80명 ◦ 내용 : 농악·진도북춤 등 전통예술 합동공연 	소련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예술인 공 동행사
'92 통 일 예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2. 8. 16 ◦ 장소 : 사할린 ◦ 참가 : 남측 78명, 북측 42명 ◦ 내용 : 남한의 대중가요와 북한의 전통 예술 합동공연 	'91남북통일 전통미용 풍속제에 이어 개최 된 행사로 사할린 교민 위문행사
코 리 아 통일미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3. 10. 12~23 ◦ 장소 : 동경·오사카 ◦ 참가 : 남·북·해외교포 미술가 30명씩 ◦ 내용 : 민예총, 북한 및 조총련 작품 공동전시회 (남한 37점, 북한 30점, 조총련 34점 등 총 101점 출품) - 제 1차 미술전 (10. 12~17, 동경 센트럴 미술관) - 제 2차 미술전 (10. 18~23, 오사카) 	남북미술가들의 첫 만 남으로 동 미술전의 정례적 개최에 잠정합 의 하는 등 남북미술 교류의 계기를 마련
뉴코리아나 국제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4. 9. 26-30 ◦ 장소 : 중국 연길 ◦ 참가 : 남측 5명, 북측 3명 ◦ 내용 : 남북한 풍경사진 합동전시회(남북한 각 85점, 중국 46점 등 총 216점의 풍경사진 전시) 	김일성 사후 첫남북 문 화교류, 최초의 남북 사진작가 교류

자료: 남북회담사무국, 「사회문화공동위 수첩」(1995), pp. 204~205.

나. 學術分野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1995년 7월까지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366건(2,086명)에 338건(2,028명)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81건(1,162명)이 성사되었다. 한편 남북한 왕래에 의한 학술교류로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1991.11), 제3차 평양세미나(1992.9), 「평양동북아경제포럼」(1992.4), 그리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1993.11)의 4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민족철학자대회」가 성사직전에 무산되었으며, 199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기로 한 제5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가 연기되는 등 남북학술교류는 아직도 제3국에서의 교류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핀 문예분야 남북교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학술교류도 1991년을 기점으로 점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술교류가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래사조의 침투를 우려, 지식인들의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통제하고 그들의 체제선전에 필요하거나 친북성향의 학술회의 등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응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⁴³⁾ 아울러 북한의 입장 등 성사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교류추진에도 그 이유가 있으며, 북한의 가중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제3국 개최 국제학술회의

43) 「남북교류협력동향」(1993. 1), p. 22.

등에 북한측이 전반적으로 참가를 억제하는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표 3>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현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91.11.25~29, 서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실행위원회	남한: - 북한: 15	북한여성계 인사의 최초 남한방문
평양동북아경제포럼 ('92.4.28~5.4, 평양)	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 동아시아경제연구원(미) 평양국제회의일본실행위원회(일)	남한: 18 북한: 47	나진·선봉 자우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현지시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평양세미나 ('92.9.1~6, 평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 실행위원회	남한: 30 북한: -	남한여성계 인사의 최초 북한 방문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 ('93.11.6~9, 평양)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북)	남한: 2 북한: 11	중군위안부 피해 보상문제 협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학자,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접촉 신청에 있어도 학술교류분야는 이산가족, 경제에 이어 세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성사된 학술교류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무엇보다 중국이 주요 접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연변지역 교포학자·단체들의 과거 북한과의 교류경험과 지리적 근접성 등을

활용하여 북한측을 남북학술교류의 장으로 쉽게 끌어내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연변지역의 교포학술단체와 자매결연·연구원 상호교환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술교류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한편 남북학술교류는 시기적으로 하계휴가기간인 7~8월에 집중되고 있는 또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 학술분야 신청처리 내역

(1989.6.12~1995.7.30)건(명)

	신 청	승 인	접촉회수
1989	11 (11)	10 (10)	.
1990	60 (311)	57 (308)	14 (193)
1991	92 (598)	85 (590)	26 (449)
1992	87 (364)	80 (351)	13 (150)
1993	41 (224)	40 (224)	9 (50)
1994	39 (276)	28 (250)	7 (93)
1995	38 (302)	36 (295)	12 (227)
계	366 (2,086)	338 (2,028)	81 (1,162)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학술교류의 세부분야별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한국학분야 학술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남북교류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한국학 연구 학자들이 모여 언어·역사·철학 등 한국학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종합학술대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의 제3차 토론회(1990.8, 오사카)에는 남한학자 145명과 북한학자 11명(16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음)이 참여한 바 있으며, 제4차 토론회(1992.8, 북경)에는 남한학자 90명, 북한학자 29명이 참가하여 비록 친북성향의 행사이긴 하지만 남북학술교류의 장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역사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특히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인 고대사부분을 중심으로 만주일원의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교류사례로는 「아시아사학회 창립총회」(1990.3, 일본), 「동북아 조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세미나」(1993.4, 연변대학), 「연해주발해유적발굴」(1993.5,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1993.8, 집안)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분야는 동북아지역의 경제권 형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2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동북아경제포럼」에 남한측 관계전문가 18명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두만강유역 개발과 관련한 학술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류사례로는 제3차 「동북아경제공동체 국제심포지움」(1990.10, 북경), 「환동해경제권 국제심포지움」

(1991.11, 오사카), 「동북아시아지역개발 비교연구 국제학술회의」, (1992.7, 연변), 「동북아시아지역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1994.7, 연길)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안보분야 학술교류는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과 통일문제에 관해 남북한 및 주변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회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분야와 함께 북한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야이나 체제선전이나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 학술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본의 환태평양연구소와 아사히신문 공동주최의 연례학술심포지움인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의 제7차 회의(1991.5, 동경)와 8차 회의(1992.5, 동경)에 남북한은 함께 참가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논한 바 있다. 그밖의 주요 교류 사례로는 「제2차 아세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1990.9, 블라디보스톡), 「동북아 안보회의」(1991.3, 북경),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1992.5), 「제2회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1993.4, 버클리), 그리고 「남북한·해외학자 통일문제학술회의」(1995.7, 북경)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은 과학기술분야 남북학술교류에 비교적 많은 전문가들을 참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글정보처리에 관한 학술발표 및 관련기기를 전시한 「'94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1994.8, 연길)에 북한측은 25명의 전문가들을 파견한 바 있으며 「'91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1991.8, 연길)

에는 45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바 있다. 이는 북한측이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언어분야는 남북한 언어이질화와 관련하여 학자들사이에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서울대 이현복 교수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해산사범대 로길용 교수와 함께 남북한 언어차이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남북한 언어 비교연구”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고려학회 주최로 199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세미나」에서 북한측 참가자들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입각한 남북학술교류를 주장하는 등 순수한 학술교류의 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학술분야 남북교류는 점차 한의학, 여성학, 환경, 기상 등의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대북학술교류가 추진되리라고 예상된다.

다. 宗教分野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1995년 7월까지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 신청건수는 175건(730명)으로 이중 140건(652명)이 승인되어 37건(336명)이 성사되었다.⁴⁴⁾ 종교교류는 문화와 학술분야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1991년을 기점으로 접촉건수 및 성사건수에 있어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44) 37건의 성사건수는 1995년 8월 22일 방북한 곡선희목사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분야 교류의 전반적인 부진은 일차적으로 북한측이 사회개방의 여파가 큰 인적교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종교교류는 1989년 이대경(재일교포), 1991년 곽선희(소망교회), 1992년 권호경(KNCC 총무) 목사등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로 미국·일본 등 제3국에서의 종교행사 공동참가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올해인 1995년에 들어 남북종교교류가 다변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올해들어 단군릉 참배를 위한 대중교의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총무원장의 실정법을 위반한 밀입북 사건(1995.4)이 발생한 바 있으며,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나 한국교회협의회(KNCC)는 남북기독교간 회년행사의 일환으로 해외기독교인까지 참여하는 「판문점 회년 공동예배」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은 북한의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과 북경에서 회담(1995.5)을 갖고 평양에서 「조국통일 공동 기원법회」의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⁴⁵⁾ 한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조선기독교도연맹 강영섭위원장 초청으로 선교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8월 22일 방북하였다. 곽목사의 방북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교인의 첫번째 합법적인 방북이다.⁴⁶⁾

45) 「조선일보」, 1995. 5. 28.

46) 「조선일보」, 1995. 8. 23.

<표 5> 종교분야 신청처리 내역

(1989.6.12~1995.7.31), 건(명)

	신 청	승 인	접촉회수
1989	10 (10)	5 (5)	
1990	16 (97)	15 (96)	2 (51)
1991	40 (155)	37 (142)	13 (86)
1992	38 (140)	30 (117)	7 (54)
1993	19 (65)	16 (62)	1 (1)
1994	23 (97)	16 (85)	4 (68)
1995	29 (166)	21 (145)	9 (75)
계	175 (730)	140 (652)	36 (335)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종교별 남북교류 추진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독교의 각 교단 및 KNCC 등은 기독교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기독교인교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선으로 「제1차 글리온회의」(1986.6, 스위스)에 남한의 KNCC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대표단과의 접촉으로 계기가 마련되었다.

글리온회의는 1988년과 1990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제2차 글리온회의」(1988.11, 스위스)에서는 1995년을 회년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제4차 글리온회의」((1990.12, 스위스)에서는 회년을 준비

하기 위한 회년 5개년 공동사업계획에 합의하였다. 이후 재일대한 기독교총회 주관으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1992.10)가 개최되어 남북한 대표와 해외교포 기독교자들이 모여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한간 기독교 교류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1995년 회년을 맞아 KNCC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은 8월 13일 「판문점 남북한 회년 공동예배」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각 교단 및 단체들은 각종 기독교 행사에 북한 기독교인사 초청, 남북공동예배 및 기도회 개최 등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대북선교차원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천주교의 남북교류는 교황청을 통한 간접교류이거나 외국인 신분의 한국출신 신부들의 개인적인 방북사제가 주를 이룬다. 한편 남북천주교 대표들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는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4회 세계성체대회」에 북한 천주교신자를 초청하였으나 무산된바 있으며, 김수환 추기경도 방북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 역시 남북불교교류에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88년 7월 남한출신 승려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대원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1991년 10월에는 미국 LA에서 미주불교협의회가 주선한 「남북불교대표자회의」를 통해 남북한 불교인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회의에서 북

한측이 남한의 핵무기 철수와 보안법 철폐 등을 전제로 하는 불교교류를 제의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견해차이만 노출하고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해들어 광복 50주년의 8·15를 앞두고 불교계의 교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북경에서 남북불교종단대표 회담이 개최되어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북한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이 접촉하였다. 이는 분단이후 처음 있는 남북한의 불교계 대표들의 만남이다. 이 모임에서 남북한 불교계 대표들은 송 총무원장의 방북과 함께 「조국통일 공동법회」를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⁴⁷⁾

기타 민족종교인 천도교와 대종교도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이 비교적 진지한 편이라 주목된다. 대종교의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총무원장은 지난 4월 14일 북한 황해도 구월산에서 열린 「어천절」행사에 정부의 허가 없이 참석한 다음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물의를 이르킨 바 있다. 주요 남북 종교 교류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47) 그러나 북한은 뚜렷한 이유없이 8월 20일 현재까지 송 총무원장의 방북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표 6> 주요남북종교교류현황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5. 9. 22	우리측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대표단, 북한지역에서 단독 예배와 미사(평양, 고려호텔) ○ 집전: 지학순 주교(천주교 원주교구장), 황준근 목사(엘림교회)	
1986. 9. 2	WCC주최 제1차 글리온회의(스위스) ○ 우리측(6명): 강문규(YMCA 총무), 김봉록(한국감리교회장), 김준영(WCC 중앙위원), 김소영(KNCC 총무), 김원식(전 KNCC 총회장), 이영찬(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북한측(5명): 김재연(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 김남현(조선기독교도연맹 신학교수), 김운봉(조선기독교도연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지윤(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총무), 김혜숙(통역관)	*WCC 주선으로 이루어진 남북 종교인 간의 최초 모임
1988. 7. 20 ~30	기대원 하와이 대원사 주지, 북한 사회과학원장 홍장엽 초청으로 방북 ○ 평양 구룡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와 만나 통일기원의식 봉행 및 대원사 주최 제4회 불교세미나 초청문제 협의	
1988. 10. 30 ~11. 14	장익·정의철 천주교 신부, 교황청 특사자격으로 방북 ○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봉헌 및 교황이 보내는 성자·성합 등 전달	
1988. 11. 23 ~25	WCC주최 제2차 글리온회의(스위스) ○ 참석자: 남북한 및 캐나다·미국·체코·호주 등 대표 - 우리측(11명): 이의호(예장대표), 장기천(기감대표), 박봉양(기장대표), 김성수(성공회대표), 김석태(구세군대표), 조용술(복음교회대표), 김형태·김준영(WCC 상임위원), 윤영애(여성대표), 이효재(교수) - 북한측(7명): 고기준·김운봉·이성봉 목사, 김남혁, 엄영손, 이문영, 김혜숙 ○ 8개항의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선언」 채택 - 7.4 공동성명의 원칙하에 통일성취, 외세배격, 군비축소, 불가침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신뢰성 회복, 주한미군철수, UN사 해체, 핵철수, 각종 교류의 실시 등 제의 ○ 남북한 교회간의 교류를 정기화하여 1995년(해방 50주년)까지 해마다 광복절에 전세계 WCC가입 교회에서 낭독할 '한국통일을 위한 기도문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9. 4. 25 ~26	NCC 주최 「한반도 평화와 통일세미나」(워싱턴) ○ 참석자 - 우리측: 박종하(한신대 교수), 권호경, 박봉배(기 감 선교국 총무) 등 5명 - 북한측: 고기준 등 4명 ○ 조선(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의회 명칭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캠페인 선언서」 채택	
1989. 7. 26 ~8. 15	문규현 신부, 「전대협」 대표로 입북한 임수경의 귀환 동해를 위해 방북	*임수경과 함께 관문점 통해 귀환
1990. 8. 12	서울 소망교회와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평화통일 공 동기도·주일예배 동시진행	
1991. 3. 28	고종욱 신부 방북, 부활대축일 미사봉헌(평양 장충성당)	
1991. 9. 24 ~10. 1	곽선희 소망교회 담임목사 방북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국내 거주자 중 개인 자격으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
1992. 1. 7 ~13	권호경 KNCC 총무 방북 ○ KNCC 제41차 총회에 북한기독교인 서울방문협합의 (김일성 예방시) ○ '95회년 5개년 공동사업 실천협의 및 '92년 남북평화 통일 기도주일 공동예배문 작성	
1992. 8. 15	재미 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단장: 이승만 목사) 방북	
1993. 8. 15	KNCC 평화통일 회년준비위원회, 남북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공동예배 ○ 예배문과 기도문은 평양 봉수교회에서 작성	
1994. 3. 12 ~14	북한 천도교회 위원장 유미영, 안호상 단군대종교 총 전교화 접촉(북경) ○ 북측은 단군대종교 대표들이 단군릉 준공행사에 참 가토록 초청 ○ 남측이 제의한 개천절을 비롯한 전례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관련 합의문 채택	
1995. 1. 27 ~28	제4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 개 최 관련 남북대표 예비모임(북경) ○ 통일회년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남북합의서 실현을 위한 기독교의 공동대응 등 5개 안건 협의	*남북 각기 대 표 3명 참석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95. 4. 11 ~16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김선적 총무원장 밀입북 및 관문점 경유 귀환 * 동 행사관련 대종교측은 황해도 구월산에서 「어 천절(4.14)」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방북을 신청 (3.4)했으며, 정부는 미·북한 경수로 공급협정체 결문제 추이에 따라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불허	
1995. 4. 23 ~5. 1	이정산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평불협」) 스님 등 2명 방북 ○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회의」 및 합동통일기권법 회 개최문제 협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과 담화
1995. 5. 23 ~24	남북불교종단대표 북경회담 개최 ○ 참석자 - 우리측: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신법타(「평 불협」 상임부회장), 설송(조계종 사업부장) - 북한측: 박태호(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 연(동 서기장), 유성철(동 상무위원) ○ 협의내용 - 8. 15 남북공동법회 및 제2차 남북한평화통일 기원 공동법회 개최문제 - 북한의 불교병원 건립 및 불교 유적지 복원 지원 - 송월주 원장 등 조계종 관계자 10여명의 방북 (7.20~8. 5, 관문점 경유)과 북측 불교대표단 의 방한(8월중순 이후 예정) 문제	

자료: 「사회문화공동위 수첩」(1995), pp. 206~226.

3. 南北文化交流 沈滯의 要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직접왕래에 의한 문화교류는 1990년 남북국악인 교환공연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교포 밀집지역에서 교포문화예술단체의 주선하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우기 해를 거듭할수록 문

화분야 남북교류는 교류건수에 있어서나 교류인원에 있어서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교착상황은 단지 문화교류에서 뿐만아니라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의 부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류 그 자체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함께 남북한 정치적 상황, 주변정세 등 남북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화교류 침체의 구조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남북문화교류가 체제경쟁이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남북문화교류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1994.7.8)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남북한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어려울 것임을 거듭 언급한 바 있다.⁴⁸⁾

민예총이 북한의 문예총, 그리고 조총련의 문예동과 공동으로 1994년 8월 일본의 도쿄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는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측의 연기결정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아울러 민예총이 북한의 문예총과 함께 199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회 「코리아 통일미술전」 역시 같은 사정으로 무산되었다.⁴⁹⁾

한편 1990년의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48) 「한국일보」, 1993. 10. 10; 「동아일보」, 1993. 10. 26.

49) 박인배 민예총사무차장과의 면담, 1995. 5. 30.

교환과 1992년의 「노부모 고향방문단」 교환의 실패과정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제2차 방문단교환의 실패는 남북한 협의과정에서 정치적 선전효과를 지닌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의 공연을 놓고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며, 노부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도 북한측이 정치적 사안인 이인모의 송환과 포커스랜즈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삼아 무산시킨 바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문화교류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체제유지와 긴장완화의 수단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예술단 교환의 성사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이유로 5공화국 정부의 정통성을 계속 부정해오던 북한당국이 남한정부가 지속적인 안정을 이루자 5공화국을 공식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예술단의 교환을 통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남한정부의 입장에서라도 북한과의 대화재개 및 교류가 체제유지와 정통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하겠다.

90년대 초반 남북문화교류가 비교적 활성화 되었던 것도 당시의 국제정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1989년의 독일통일, 1990년의 소련연방 해체 등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체제존립의 위기에 까지 몰린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내부의 결속에 힘을 쏟기 위해 서울올림픽, 북방외교 등으로 긴장과 갈등상태를 지속하여 오던 당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90년대 초반 문화분야 남북교류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관계개선책의 일환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된 측면이 크다.

이는 불과 몇달전 「꽃파는 처녀」 공연문제를 구실삼아 제2차 이산가족 및 예술단 교환방문의 파기를 선언하였던 북한이 「범민족 통일음악회」(1990.10)에 남한 공연단을 선뜻 초청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며, 이후 두달 뒤인 그해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에도 그들이 요구한 전제조건들을 남한측이 수용치 않았음에도 선뜻 참가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⁵⁰⁾

그러나 주변정세가 비교적 안정되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으로 체제내부의 사상적 결속을 다진 1992~93년경부터 북한은 다시금 문화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최근의 사회문화분야 교류의 부진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사회개방의 여파가 큰 인적교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데 기인한다.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1991년 10건에 237명이, 1992년에는 8건에 257명이 성사되었으나, 1993년에는 4건에 18명만이, 1994년에는 1건에 12명만이 이루어졌다. 또한 감소하는 교류추세에 따라 1992년 들어 사회문화분야에서 북한을 직접 방문한 사례는 KNCC 권호경 목사의 방북(1992.1.7~1.13)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대회에 참여한 여성대표단 30명의 방북(1992.9.1~9.6)을 들 수 있으며, 1993년에는 이효재 등 1인이 평양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

50)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와 관련하여 처음에 북한측은 구속된 애국인사들을 석방할 경우에 만 서울에 갈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전과는 달리 남한측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에도 예정대로 참가하였다. 남북회담사무국(1995), 앞의 책, p. 198.

(1993.11.1~11.8)에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이 인적교류를 통한 사회개방의 여파가 비교적 적은 경제분야 남북 교류를 꾸준히 도모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⁵¹⁾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남북문화교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류행사 추진상의 문제이다. 즉 어렵게 성사된 교류행사가 장기적인 안목없이 추진되어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주최단체들 간에 공명심, 경쟁의식까지 작용하여 일단 먼저 접촉하고 보자는 식으로 교류행사가 추진되었다. 최근들어 문화분야 대북접촉 신청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도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교류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장기적인 방안을 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교류의 저변확대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남북문화교류는 음악·무용 등 공연예술 중심의 교류였다. 예를 들면, 1995년 7월 30일 현재 금년들어 문화분야 대북 접촉신청 건수인 19건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이 9건, 영화 2건, 교예 2건, 문학 2건, 미술·사진이 각 1건, 기타 2건 등으로 단연 공연예술분야의 교류신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회성 행사위주인 공연예술 중심의 교류가 이미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51) 통관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 교역규모는 1991년 1억 1천만 달러에서, 1992년 1억 7천만 달러, 1993년 1억 9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1994년의 경우에도 남북한 교역은 1억 9천만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남북 교류협력동향」(1995. 1), p. 45.

는 것이다.

셋째, 상당수의 교류행사가 교류에 부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사회의 발전상이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을 은근히 과시하는 영화, 궁중음악 연주, 대중의 이해가 어려운 실험적 미술작품의 전시 등은 북한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교류에 부적합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북한측에게 교류단절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넷째, 언론보도의 자세이다. 1985년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과 1990년 평양민족음악단의 공연 등을 보도한 언론들은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공연물들이 예술성을 결여하고, 대중성과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식의 도식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화예술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음을 간과한 보도자세이다. 이 또한 북한에게 교류단절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²⁾

결론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문화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상대적인 독자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류가 치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단지 일회성 만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교류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교류를 점차 제도화 시켜나간다면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52) 이상일, “민족문화예술의 근원과 원형에서의 접근,”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0), p. 194.

第 IV 章 南北文化交流에 대한 評價

1.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交換時 南韓측 公演에 대한 北韓측 反應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교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남북한 문화교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었던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시 남한측 공연단의 평양공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남한 예술공연단이 평양으로 가져간 프로그램은 고전무용(태평성대, 승무 등)과 민요(울산아가씨, 잣은 산타령 등), 현대무용(2000년대를 향하여 등), 대중가요(눈물젖은 두만강, 불효자는 읍니다 등), 민속무용(농악, 봉산탈춤 등), 그리고 가곡(그리운 금강산) 등이었다. 프로그램에 고전무용과 민요를 선정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남한이 전통을 말살하고 미국문화에 예속되어 왔다는 비방을 종식시키고, 남한이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뜻에서 선정되었으며, 현대무용 「2000년대를 향하여」는 현재 남한이 처한 상황, 미래상,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남한예술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주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대중가요의 경우 해방이전의 작품과 민족분단을 내용으로 한 노래를 선정하여 북한 관람객들의 정서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남한측 예술단 공연에 대한 「로동신문」 등 일간지, 「조선예술」, 「조선문학」 등 북한의 주요 문예잡지를 통한 평가는 부정적인 차원을 넘어 극단적인 비판으로 일관되었다. 먼저 「태평성대」, 「승무」 등 전통무용과 그 음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그런가 하면 민속무용 <태평성대>에서는 지난 시기 궁중의 봉건 통치배들의 놀이관에서 수십명의 기생년들이 흉물스러운 몸짓과 몸맵시 자랑으로 간사스럽고 구역질나게 행동하는 것을 얼굴표정으로 보여주었다. 놈들은 바로 <태평성대>를 통해서 온갖 모순과 사회적 불안으로 가득차 있는 남조선사회가 이른바 <태평>하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하였다... 흰 고깔모자를 쓰고 절간에 있는 그 어떤 <신>앞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는 독무 <승무>는 사람들이 <신>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설교하였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 놈들은 바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그 식민지 파쇼독재 체제에 대한 반항정신을 무마시켜보려 하였다.⁵³⁾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전통무용과 그 음악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첫째, 「북소리」, 「태평성대」 등 남한 측의 전통무용이나 음악공연물들이 대부분 ① 북고주의적이라는 점, ②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이라는 점, ③ 불교나 굿 등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⁵⁴⁾ 즉 남한 공연단이 비교적 순수한 입장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그들의 보존정도와 열의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구성한 전통음악과 무용공연물들이 북한측에게 ‘북고주의’라는 빌미를 주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53) 「조선예술」(1985. 11), p. 26.

54)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p. 69.

한편 「2000년대를 향하여」 등 현대무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그런가 하면 양키들의 구미에 맞게 고안해낸 <모던댄스>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2000년대를 향하여>에서는 별거벗은 35명의 젊은 여자들이 나와 미국식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휘둘러대는 추태를 부리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팔과 다리를 내 뻗치며 광란을 부리게 하였다.. 이러한 퇴폐적인 반동무용들은 미제침략군을 상대로 하는 <자즈악단>과 각종 <유흥장>을 통하여 남조선에 급격히 퍼급되었다.⁵⁵⁾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현대무용에 대해서도 양풍화되어 퇴폐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 역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이려 했던 남한측의 의도가 북한측에게 미국식 예술문화의 본보기로 간주되어 비난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북한측이 남쪽의 무용공연을 이렇게 심하게 비난한 까닭에는 의도적인 면도 있다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무용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남한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는 “우리의 무용예술 앞에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복고주의, 형식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무용예술을 철저히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예술, 참다운 공산주의 무용예술로 개화 발전 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⁵⁶⁾는 목적성을 뚜렷이 강조함으로써 남한과는 판이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55) 「조선예술」(1985. 11), p. 25.

56) 김정일, 「무용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

한편 북한측 비난의 많은 부분은 남북한의 '전통'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즉 남한에서는 전통예술을 궁중예술, 종교 예술 등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유산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반면, 북한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궁중예술과 종교관련 예술을 '복고주의'로 규정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한의 전통음악 및 무용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감에 맞지않는 옛날 봉건시대 음악을 그대로 들고나온"⁵⁷⁾ 복고주의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 공연단이 워커힐 호텔의 가야금식당을 보고 쓴 다음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서울의 웨라톤호텔 안에 있는 가야금식당(일명 가야금극장)에서 본 모든 민족악기들의 연주와 노래는 멀고 먼 옛날 조선에는 이런 음악과 악기들이 있었다 하는 식의 박물관을 연상시켰다... 무대하수에는 초라한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은 소위 <전통악기>를 가진 연주가들이 앉아서 낡고 진부한 <령산희상>을 연주하고 있었으며 무대 오른쪽 상수에는 연미복을 펼쳐입은 연주가들이 양악기를 가지고 소위 <현대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여 들으면서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슬기를 모독하는 이자들의 배족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⁵⁸⁾

한편 남북한은 전통의 변화에 대한 시각에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1985년 당시 북한예술단의 서울공연에 대한 남한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연물들이 전반적으로 획일화되고 통제화되어

57) 정봉섭, "복고주의적이며 퇴폐적인 음악 - 서울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 「조선예술」(1986. 1), p. 57.

58) 위의 글, p. 60.

있다는 지적과 함께 18줄로 개량된 가야금을 예로들면서 북한 민속악기들에 있어서 전통의 변질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하였다.⁵⁹⁾ 이러한 남한의 관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어떤 무식한 <명예박사>는 우리의 가야금 독주를 보고 나서 13줄이 아닌 18줄의 가야금이 어떻게 가야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고 낮이 간지러운 소리를 했다. 물론데 이<박사>는 우륵이가 처음 가야금을 만들었을 때 애당초 13줄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처음부터 오늘날의 형태, 오늘날의 공명원리를 다 갖춘 그런 완성된 악기로 되었는가?⁶⁰⁾

한편 북한은 199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 공연성과에 대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북한예술의 민족전통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다. 즉, 북한에서 개량한 민족악기들은 훌륭하고 민족의 전통을 살린 것들이며, 북한 음악가들은 민족 고유의 전통음악을 옹기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북한에서 민족 전통음악이 상실되었다고 한 남한당국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 등이다.⁶¹⁾ 이러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자신들 스스로 민족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문화예술을 남한이 변질 운운하자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무렵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영화제에서 남한 영화의 지나친 성애장면에 대한 북한 영화인들의 신랄한 비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⁶²⁾

59) 「조선일보」, 1985. 9. 2.

60) 정봉섭, 앞의 글.

61) 「로동신문」, 1990. 12. 11.

62) 염무웅, “남북 문화교류정책의 이념과 전망,” 「북한문화연구」제1집

위에서 보듯이 남한에서는 악기의 개량과 같은 작업에 대해 변화의 폭을 넘어선 변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반면, 북한에서는 그러한 악기의 개량작업까지를 변화의 폭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에는 전통의 변화와 변질에 대한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⁶³⁾

결론적으로 볼 때, 남한예술단의 평양공연에 대한 북한의 거친 반응은 억지에 가까운 것도 있으나 상당부분 남북한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이 북한의 문화이념 및 정책에 관한 실상을 낱낱이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도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부분의 공연물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부채춤」과 「농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부채춤」과 「농악」은 북한의

(1993), p. 172.

- 63) 한편 1985년 당시 북한예술단의 서울공연에 대한 남한의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공연물들이 전반적으로 획일화되고 통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공연물 대부분이 예술성을 결여하고 있는 반면 대중성과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화예술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공연물을 분석하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민속음악과 무용공연물들에서 전통성의 상실대지는 변질이 두드러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용의 경우 춤사위에 소련 민속춤의 요소와 인도춤의 손동작이 가미되어 우리의 전통민속무용이 '국적불명의 춤'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언론 및 전문가들은 18줄로 개량된 북한의 가야금을 예로들면서 북한 민속악기에 있어서의 전통의 변질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북한예술의 전통성 변질에 관한 언급은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취재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즉, 북한에는 전통음악이 대중성을 상실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아악 등 궁중음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85. 9. 2; 「경향신문」, 1990. 10. 25.

입장에서도 공감의 폭이 넓었던 반면, 비난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문화교류시 프로그램 선정의 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해준다 하겠다.

2. 「범민족통일음악회」 南韓측 公演에 대한 北韓측 反應

「범민족통일음악회」는 1990년 10월 18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에는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윤이상)의 초청에 의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음악인들이 참가하였다. 이 공연에서 남한의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은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 「엄마야 누나야」 등 창작가곡, 「수심가」 등 서도민요, 「육자배기」 등 남도소리, 그리고 김덕수 사물놀이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 북한은 1985년 공연 때와는 달리 사실보도에 치중하였다. 즉 공연된 곡목이나 연주자의 기량 등 연주된 음악의 내용보다는 대체적으로 이 행사가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985년 그들이 ‘복고주의’라고 비난했던 우리의 전통음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첫막을 올린 ‘서울전통음악연주단’ 우리나라가 분열되기 이전 그리고 서양음악이 들어오기전의 우리민족의 고전음악들을 위주로하여 재현한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었다... 출연자들은 능수버들이 늘어지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청류벽으로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절경을 노래한 서도 민요 <워음 수심가>를 비롯하

여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의 고전 민요들을 고전적인 악기들을 가지고 지난 시기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그대로 형상하여 무대에 올랐다. 특히 창작가곡 <우리는 하나>를 관람하면서 군중들은 수천년 동안 한핏줄을 이어오며 한 강토에서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혈육, 한 동포임을 느끼면서 온 겨레가 얼싸안을 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결의를 굳게 하였다. 장내에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넘쳐흐르는 가운데 서울전통음악단이 공연의 막을 내리자 관람자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었다.⁶⁴⁾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1985년 예술단 공연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보다 한결음 더 나아가 남한측의 연주 중에서 단소독주 「청성곡」을 언급하여, “민족음악 전통의 고유한 장단과 가락, 청아하고 구성진 음색적 특징을 잘 살려냈다”⁶⁵⁾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지속적인 음악교류를 통하여 남한의 농악이나 구성진 민요 등 전통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까지 하면서 남한의 전통음악 자체에 대한 보다 점진적인 수용자세까지 보이고 있다.⁶⁶⁾

한편 김덕수패 사물놀이 공연시 다른 프로그램 연주시와는 달리 연주 도중에 박수가 나왔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이것은 북한에서 사물놀이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물놀이 공연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 듯 두달후 서울에서 개최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서 남한측은 사물놀이를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입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통음악에 대한 변화된 자세는 그동안 몇차례의 남북음악교류가 상호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게 한다.

64) 「민주조선」, 1990. 10. 20.

65) 한영애, “은 민족이 함께 부른 통일의 노래,” 「조선예술」(1990. 12), p. 16.

66)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p. 35.

이는 남북한 상호간의 문화적 이질감의 극복을 위한 문화교류의 당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즉 문화는 역동적인 것이며 상호영향하에 변증법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문화교류에 소극적인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하겠으며, 이를 위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유연한 교류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정부의 자세가 요구된다.

3. 제3국에서의 南北 合同共演에 대한 北韓측 反應

제3국에서의 남북한 합동음악회는 모두 여덟차례 열린 바 있다. 국적별로는 일본에서 다섯번,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각 한번씩 열렸고, 연도별로는 1991년에 세번, 1992년 네번, 그리고 1993년에 한번 실시되었다. 해외에서의 남북합동공연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0년 10월의 「범민족통일음악회」와 12월의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의 성과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개최된 총 8건의 합동음악회 중, 「한겨레」라는 이름의 5건의 행사는 모두 재일교포들이 주관한 것이고, 「후쿠이 국제예술제」(1991.5, 쓰루가)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40주년 경축 기념행사」(1992.8, 연길)는 주최측의 초청으로, 제1회 「통일예술제」(1992.8, 사할린)는 남북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3국에서의 합동공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되는 1991년 3월 동경에 열린 「한겨레의 울림」공연과 1993년 4월 역시 동경에서 열린 「한겨레 음악회」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의 울림」은 1988년 윤이상의 “38선상에서 남북합동음악 축전을 개최하자”는 제안에 답하는 형태로 친북계 재일동포들이 ‘해외동포 음악가 초청시리즈’로 시작한 음악회이다. 한겨레 시리즈는 1989년부터 해외거주 친북음악가들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는데, 1991년부터 남북한음악가들이 합동으로 공연하는 ‘통일음악회’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1991년 동경에서의 「한겨레의 울림」 공연은 해외에서 남북한이 합동으로 공연한 최초의 음악회라는 역사성을 갖는다.

「한겨레의 울림」 공연은 민족과 통일을 주제로한 남과 북에서 작곡된 민족적인 가곡과 무용곡, 그리고 관현악곡 등으로 구성되었다. 남한측의 공연물은 모두 가곡이었으며, 북한측은 관현악곡, 가곡, 행진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한편 연주회에서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성원을 받은 공연물은 남한의 윤인숙과 조총련 유전현의 이중창 「통일의 길」이었다. 이 곡은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남한의 황병기와 북한의 인민예술가 성동춘이 함께 작곡한 작품이다.

「한겨레의 울림」은 해외에서 행하여진 최초의 남북합동공연이었던 만큼 기대가 컸다. 공연을 주최한 조총련은 이 음악회를 ‘통일음악회’로 규정하고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내외에 과시한 음악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총련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념원을 내외에 과시하는 통일음악회로서 정착된 이날 연주회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음악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오늘은 역사적인 <코리아>탁구 유일팀 선수들이 일본에 온 비등된 분위기 속에서 여느때없이 뜨거운 통일

열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하나>만의 가사로 엮어진 노래는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오직 조국통일만이 뜨겁고 간절한 소원임을 열렬히 호소하여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날 공연은 관현악곡 <아리랑>으로 막을 내렸다. 관중들은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오래오래 뜨거운 박수를 보내었다.⁶⁷⁾

이와 같이 「한겨레의 울림」에 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평가와 반응은 자제되었고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 점이 해외에서의 남북합동공연이 갖는 의의와 역할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93년의 「한겨레 음악회」는 1989년부터 시작한 동 음악회의 제 10회 공연이자 마지막 공연이었다. 이 음악회는 남북한에서 애창되고 있는 가곡을 특집으로 구성되었다. 「희망의 나라로」, 「뱃노래」, 「보리밭」 등의 남한가곡이 불리어졌으며, 북한가곡으로는 「동백꽃」 등이 연주되었다. 특히 조총련계의 가수 유전현은 북한도 용정을 배경으로 독립군의 기상을 노래한 「선구자」와 월북 작곡가 이면상이 작곡한 「내고향의 정든집」을 불러 주목을 끌었다.⁶⁸⁾

1993년 「한겨레 음악회」에 대한 반응은 앞서 언급한 「한겨레의 울림」공연시의 반응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마지막임을 애석해하는 내용과 한겨레 음악회에 대한 종합평가가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종합평가는 대체로 남과 북의 음악가들이 통일염원을 담아 노래한 곡들은 청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⁶⁹⁾ 한겨레 시리즈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야 함⁷⁰⁾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67) 「朝鮮新報」, 1991. 4. 3.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구성안 연구」, pp. 84~85에서 재인용.

68) 위의 책, pp. 92~93.

69) 「朝鮮新報」, 1993. 5. 5. 위의 책, p. 94에서 재인용.

70) 윤이상의 반응, 「朝鮮新報」, 1993. 5. 12. 위의 책, p. 94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겨레 시리즈 공연시 남한공연물에 대한 북한 및 조총련의 반응은 한마디로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한겨레 시리즈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남북한 쌍방이 프로그램 선정 등에 있어서 비교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교류 공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한겨레 시리즈가 여러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한겨레 시리즈는 해외합동공연을 통한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구축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 남북한간의 직접교류로 연계될 가능성을 보다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또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음악에 관한한 북한예술계의 주요 경향과 북한주민들의 취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이는 앞으로의 교류방향이나 교류공연물 선정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第 V 章 南北文化交流 活性化를 위한 戰略的 接近

「기본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핵문제 등 현안문제에 집착함으로써 교류·협력 등 합의서의 실천은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미 경수로협상의 타결과 북경 쌀회담의 성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서서히 경색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에서 정치색이 비교적 옅은 문화교류가 주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남북문화교류는 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냉전구도하에서 단기적,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동질성회복 및 문화통합과 같은 교류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남북문화교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뚜렷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류의 기본원칙 및 방안을 새롭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1. 基本原則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문화정책, 교류원칙, 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남북문화교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문화교류는 통일문화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문화란 한마디로 “분단

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⁷¹⁾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이 남북한이 각기 체제대립에서 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가운데 민족구성원 모두의 복지가 고도로 보장되는 통일방안을 의미한다고 할 때, 통일 문화는 결국 민족공동체 창출을 위한 실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진행될 남북문화교류는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남북문화교류 관련조항의 이행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는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남북한간에 상이점을 제거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이른 최초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부속합의서」 제14조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하루 빨리 상설화 하여 문화교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와 실천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992년 남북한이 이미 실시해 합의한 바 있는 「이산가족 노부모방문 및 예술단」 교환방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시 쌍방 적십자사는 실무접촉을 통해서 방문단의 교환시기, 규모, 그리고 예술단의 공연 프로그램까지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이인모 송환, 남북한 상호 핵사찰, 포커스랜즈 군사훈련 등 정치·군사적 쟁점사항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접촉을 중단함으로써 무산된 바 있다.

71)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통일문화연구(상)」, p. 23.

남한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3년 3월 인도주의와 민족화합적 차원에서 이인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의 갈등도 1994년 10월 북미간 핵협상 타결과, 금년 5월의 경수로 협상타결로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이다. 더우기 남북왕래에 의한 문화교류가 1990년 10월과 12월 실시된 예술단 상호방문 행사 이후 현재까지 단절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북한측이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합의를 사문화시키려는 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셋째, 문화 최우선의 원칙이다. 즉 문화는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교류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교류가 체제경쟁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간의 어떠한 교류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변정세와 남북한 쌍방의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 인해서 문화교류가 당연히 성취해야 할 독자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도 많았다.

진정한 통일이 단순한 국토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통합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즉 남북문화교류는 정치적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동질성 회복이라는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간주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주도의 문화교류는 남북한간의 현 체제가 비정치화, 탈군사화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상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은 지난 10년간의 교류현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에 순수한 의미에서 민간단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문화교류를 시행할 경우, 북한에게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교류 거부 및 중단의 빌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교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남북 합동공연 형식으로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한겨레 음악회」시리즈는 민간차원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문화이론과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985년 예술단 교환방문시 북한측이 남한측 공연을 관람하고 북고주의 또는 봉건잔재라고 혹평한 것은 사회주의적 미학의 관점에서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공연물의 선택이 북한의 문예이론과 미학적 관점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오로지 남한의 관점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문화이론과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교류에 대한 방향제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민간주도의 교류는 형식적 또는 단편적인 교류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교류가 장기적 안목에서 정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류항목별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교류행사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합동의 국제적 문화행사는 무엇보다 정치성과 이념의 굴레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연은 남북한이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일방적인 해석·평가를 내리는 등 대결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해외에서의 합동공연은 해외교포들에 의해 두 문화가 동시에 접해짐으로써 상대방 문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동안 올려진 여덟차례의 한겨레시리즈 공연은 이러한 해외합동공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동질성 회복과 민족화합이라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였고,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어느 정도 탈피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해외교포 단합의 장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내외에 과시하는 역할을 하였다.⁷²⁾

일곱째, 교류시행에는 국민정서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년 6월 정부는 북한에 15만톤의 쌀을 제공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국민정서를 도외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현재 국민정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북한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지닌 구조적인

72)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pp. 75~76.

문제점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정서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교류의 추진은 국론분열이라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몰고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문화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의 동질성이 회복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통일이전 독일의 경우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접촉을 약 30년간 지속하였다. 조급한 교류확대는 문화의 이질성 확인의 기회를 넓혀 주고, 이질성의 확인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기 쉽다. 현재 남북한이 서로 큰 거부감을 느끼는 문화의 이질적 요소는 상호간의 지속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상호공감하는 문화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교류보다는 점진적으로 교류의 양을 늘려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2. 推進戰略 및 方案

남북문화교류는 위에서 언급한 교류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진전략 및 방안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문화교류의 현 단계는 교류의 기반구축 단계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교류는 역사적으로 공유해 왔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문화적 차별성과 유사성을 이해하고 상대측 문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이질화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나가는데 주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체제개방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여 문화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 전반에 소극적인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인모의 송환과 같은 주장들을 전적으로 배척·거부하기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을 통해 포섭한다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교류의 제도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남북한이 그간의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교류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인 정합적(positive-sum) 행위임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제도화 단계의 주된 목표는 교류의 심화 및 확대에 있다. 또한 교류의 심화 및 확대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

마지막은 교류의 활성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남북한 당국차원의 교류체계가 확립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활성화 단계의 주 목표는 문화협정의 체결을 통한 남북한 문화통합의 완결에 있다.

가. 交流基盤 構築 段階

남북문화교류의 현 단계는 교류기반 구축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남북문화교류가 다년간에 걸쳐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교류외적 요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현 단계에서 체제

개방의 여파를 우려하여 교류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교류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교류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류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에 소극적인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는 적절한 유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북한이 교류에 적극적인 분야에서부터 교류를 시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문화교류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타결과정에서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대외로 공동진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상호예술단 교환에 있어서도 비교적 적극적이다. 침체된 남북문화교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북한이 쉽게 옹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위에 언급된 몇몇 분야에서 교류에 자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의 교류가 다른 분야의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교류의 여파가 적다는 데 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미 제3국에서의 교류경험을 통해 국제무대에의 공동진출에도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상 고구려 및 발해의 문화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문화유물 교환전시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부합된다.

둘째, 연계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문화교류의 경우 북한측의 전제조건이 많았던 까닭에 그 조건의 수락여부가 성사의 관건이 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교류 성사여부의 주도권

을 북한측이 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교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개발하여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적극 끌어내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타결과정을 보면 북한은 남북경제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인적교류가 부진했던 지난 2~3년 동안에도 남북 교역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⁷³⁾ 따라서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등과 문화교류사업을 묶어 함께 추진하는 연계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예술공연 및 작품 중심의 교류보다는 생활문화 중심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작품들의 경우에는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연히 체제경쟁을 부추길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류와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현 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대표적 교류 프로그램들을 항목별로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는 ① 고구려와 신라 문화재의 상호 교류 전시, ② 단군릉 등 새로 발견된 문화유적 공동답사, ③ 고대유적 공동 발굴 및 학술 세미나, ④ 박물관 소장 자료의 교환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73) 통관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교역 규모는 1991년 1억 1천만 달러에서, 1992년 1억 7천만 달러, 1993년 1억 9천만 달러, 그리고 1994년 1억 9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다. 통일원, 「통일백서」(1994), p. 214.

문예분야의 경우 ① 이미 여러번 실시되어 북한이 크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제3국에서의 합동음악공연 및 미술·사진 등 공동작품 전시회, ② 북한이 자랑하는 교예단 초청공연, ③ 북한 미술품의 전시 및 판매, ④ 이념과 크게 상관 없는 민족가극 「춘향전」 공연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생활문화분야의 경우 ① 각 지역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② 장 및 김치 담그기 전시회, ③ 각 지방 음식의 전시 및 판매, ④ 공예가구의 전시 및 판매(북한의 공예품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언어 및 학술분야에 있어서는 ①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는 기초과학분야 학술교류, ② 현재 남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전, 국어 교과서 등 자료 교환, ③ 판문점을 통한 각종 신문, 잡지 등 정기 발행물의 교환 등이 우선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종교교류에 있어서는 종교인들의 방북을 통한 북한 종교계 인사들과의 접촉만이 현 단계에서 가능하다 하겠으며, 국제적인 종교행사에도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타분야 교류로써 남북우표 공동전시회, 남북화폐 공동전시회 등도 추진될 수 있다.

나. 制度化 段階

어렵게 성사된 각종 문화교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류에 임하는 북한측의 성실성이 요구되지만, 남한측이 보다 전향적이고 양보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북한측의 태

도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교류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학습'과 같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교류에 있어서 반복학습 전략이란 한마디로 남북한 쌍방간의 문화교류가 결국 남북한 두 행위자 모두에게 이익인 정합적(positive-sum) 행위임을 북한측에 행동을 통해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즉 남한이 교류 시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손해를 보면서라도 한해, 두해, 해를 거듭하여 일관된 원칙하에 교류를 추진해 간다면 교류 행위자들간에 점차 상호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통해 교류의 제도화가 일단 구축되면 정치적 상황의 악화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교류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주변환경의 변화 등 정치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남북문화교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⁷⁴⁾ 즉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제도화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⁷⁵⁾

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990년 시행된 「송년 전통음악회」와 같은 시범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교환과 같은 시범사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이 비록 일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74)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The Basic Books, 1984) Part II, III 참조.

75)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민예총과 북한의 문예총, 그리고 조총련의 문예동 공동주최로 1993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코리아통일미술전」이 예정대로 작년 10월 서울에서 제2차 행사가 개최되었더라면 이는 남북한간의 정례적인 미술교류전으로 발전되어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복절을 비롯하여 설, 추석, 단오 등 민족명절을 계기로 하여 예술단 교환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89년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교환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⁷⁶⁾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방문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주장이 완강할 경우 혁명가극의 공연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제도화 단계에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협작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 공동연구, 언어 공동연구 등의 작업은 오랜시일이 지나야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 단계에 시행될 수 있는 세부추진방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 교류에 있어서는 우선 ①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②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

76) 「부속합의서」타결과정에서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는 적십자 소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보아도 경제교류협력분야(제1조~제8조)와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제9조~제14조)는 자세하게 실천적으로 되어 있으나 인도적 교류분야(제15조~제18조)는 적십자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통일원,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pp. 15~19.

별 공동연구사업 시행, ③ 민족사 박물관 공동건립, ④ 비무장지대 유적 공동답사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문예분야 교류에 있어서는 ① 전통악기 개량에 관한 공동연구, ② 남북전통예술단 및 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 ③ 미술인들의 대형 걸개그림 공동제작, ④ 남북합동 농악놀이 및 민속놀이, ⑤ 민족가극의 공동창작과 공동연주, ⑥ 남북시인 시화전 및 시비 공동건립, ⑦ 공동연극 제작 및 공연, ⑧ 항일투쟁을 소재로한 영화 공동제작 등 다방면에서 공동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

생활문화의 경우 ① 한복 디자인 공동개발, ② 전통음식 상호전수, ③ 생활문화 자료집 발간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언어 및 학술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① 통일국어사전 공동편찬, ② 한글 기계화 공동작업, ③ 고대사 및 중세사 교과서 공동집필, ④ 지도 공동편찬 등이 추진 가능하다. 그리고 종교분야의 경우 ① 성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 공동번역, ② 성탄절, 초파일 등 종교 기념일 판문점 공동행사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다. 活性化 段階

문화교류가 제도화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한간에 신뢰체계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획기적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정」의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협정」은 문화교류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동서독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명의 인적교류와 200억 마르크의 교역 그리고 약 600여 가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⁷⁾ 동서독 양측의 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듬해 11월 실질적인 문화교환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양측은 공식적으로 제반 예술분야와 학술 및 출판교류의 통로를 열었고 대대적인 박물관 소장품들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교류의 폭을 대폭 넓히게 되었다. 특히 「문화협정」을 계기로 개방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은 폐쇄사회인 동독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남북한간의 문화협정의 체결은 문화의 전분야로의 교류확대 및 개방, 즉 언론 및 종교교류의 확대 및 개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협정의 목적이 북한내부의 변혁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접촉 및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77) 「기본조약」의 내용 중에서 공연예술 부분에 관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단, 예술가와 다른 영역에서의 문화사업단 교환, 2. 관련 예술분야의 대화개최에 전문인들 참여, 3. 문화예술단체 간에 출판물과 정보자료 교환, 4. 회의를 통한 예술인들의 연구성과 교환, 5. 각 예술분야의 공동작업 등이다.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p. 100.

第 VI 章 結 論

1973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갖은 어려움을 겪어온 남북 대화는 1993년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남북한간의 문화분야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를 가능케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장치와 틀은 일단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990년 문화부의 발족 이후 수립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을 통해 통일관련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으며,⁷⁸⁾ 「남북문화교류의 5원칙」을 설정하여 문화분야 남북교류에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통하여 민족우선주의 입장에서 통일문화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과거에 비하여 한층 구체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남북교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⁷⁹⁾

78) 정부는 1990년 문화부 발족 이후 수립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의 일환으로 통일문화의 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통일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통일문화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지향적 남북한 협력시대 마련, 둘째,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통일후의 체제 초월적 사회에 적응하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정통성에 뿌리를 둔 통일문화의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부,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 pp. 3~10.

79) 정부는 통일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1. 민족통일의 지상명제를 앞두고 통일문화의 기반 조성, 2.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 3. 점증하는 남북문화교류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로 통일시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4. 남북한간 화해와 이해를 위

정부가 이렇듯 남북문화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건수 및 인원에 있어서 문화교류는 오히려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대화가 교착상황에 빠짐으로써 남북한간의 합의서는 사문화하고 있으며, 우성호 송환문제, 수해지원문제 등 대북현안에 있어서 정부의 자세는 다시금 강한 보수회기성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교류가 다른 정치경제적 사안과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니는 엄청난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교류원칙의 확립에 못지않게 교류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고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타의 영역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문화가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 방안의 기저에는 이러한 교류의 상대적 독자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체제개방의 부정적 여파를 두려워하여 문화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 전반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즉 북한이 교류에 비교적 자신을 보이는 분야, 예컨대 문화재 및 예술작품 교환전시, 그리고 체제개방의 여파가 적은 국제사회에의 문화적 공동진출 등에서 부터 교류확대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

한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 5), pp. 25~26.

요가 있다. 또한 북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교류에 임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여건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는 단지 교류행사의 제도화, 활성화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통일지향적 민족문화를 형성하려는 국민들의 실천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서 통일에 대한 총체적인 지향성을 견지해야 한다. 즉 통일관련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의 일부분이기보다는 통일을 목표로 두고 문화발전의 이념이 세워져야 하며 구체적인 문화사업 하나하나가 통일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하며, 변화시키자”는 서독 사민당의 유명한 동방정책가인 에곤 바아(Egon Bahr)의 말을 교류를 추진하는 정부와 민간단체는 새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방안

홍 관 희*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인적교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사례

제 III 장 인적교류의 측면에서 본 남북관계

제 IV 장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

제 V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정치학 박사

빈 면

第 I 章 序 論

민족통일은 민족의 최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긴장과 갈등관계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해방직후 겪었던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가 경직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지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알 도이치(Karl Deutsch)가 정치체의 진정한 통합의 선결요건으로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신뢰'를 지적한 것처럼, 물리적 힘의 사용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시켜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¹⁾ 과연 한국전쟁에서의 무력충돌은 남북간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일으켜 남북관계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관계개선보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상호 利害가 상충하는 정치, 군사적 이슈에 몰입함으로써 항상 교착상태로 빠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경제, 문화, 또는 인적교류와 같은 이른바 하위정치적(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웠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핵문제를 둘러싸고 외국과의 연계를 통해 상대방을 포위·고립시키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신과 적대관계는 그 극을 달리고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를 보면, 1990년의 통일이 결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점진적 통합과정이 결실을

1) Karl W.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 5. Karl Deutsch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에 대한 확신이 공동체의식(a sense of community)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통합 이전에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상호간의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였고, 당시 시대적 흐름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適實性에 대한 인식이 동서독 주민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정치체의 통합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정치·군사적인 요소 또는 법적인 절차보다 경제적·문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실질적 진전은 경제·문화적인 영역에 좌우되었고, 정치·군사적 통일은 이를 완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많은 분석가들이 통합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論하여 왔다. 존 갈통(John Galtung)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의 통합과 利害관계의 일치가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²⁾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정치공동체에 있어 통합의 정도는 구성원의 귀속감(belongness)과 일체감(identity)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키케로는 공화국(Commonwealth)을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개념으로서 ‘법률에 대한 합의’와 ‘행복의 공유’를 들고 있다.³⁾

이렇게 볼 때, 분열된 민족, 또는 분열된 사회간에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일은, 비록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2) Joh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1968), p. 377.

3)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번역서로서 閔俊基·裴成東 譯, 「정치발전론」(서울: 을유문화사, 1992) pp. 22~26 참조.

과제이긴 하나 궁극적인 통합을 期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한편, 문화적 동질성은(앞서 언급한 공통된 가치관, 공통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분열된 사람들간의 부단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인적교류를 중시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카알 도이치(Karl Deutsch)는 노버트 위이너(Norbert Wiener)의 두뇌공학이론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인용 기술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을 형성하는 接合劑이다. 커뮤니케이션만이 한 집단으로 하여금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한다. ...”⁴⁾

결국 사람들은 意思소통을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향해 가며, 意思소통은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인적교류의 중요성은 교류를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증대되고,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통해서 공통된 가치관과, 세계와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향유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남북이 현재 갖고 있는 상호불신과 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정치·군사적으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적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일

4) Karl W. Deutsch, *The Nerves of Governm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p. 77. Norbert Wiener, *Cybernetics* (Cambridge: MIT Press, 1965) 참조.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1) p. 424 에서 재인용.

은 緣木求魚 만큼이나 至難한 작업일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교착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이러한 과제의 필요성은 더욱 인정된다. 남북간 문화적 동질화를 이룩하기 위한 인적교류에 관한 연구와 그 확대방안에 대한 강구는 앞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통합의 목적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당면한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데 우회적이며 때로는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인적교류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역사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일말의 시사점을 얻은 다음, 남북간의 인적교류 현황에 대한 분석과 그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제II장에서는 먼저 ‘인적교류가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諸이론들을 간결하게 살펴보고, 아울러 통일의 역사적 사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들 통합에 관한 제 이론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의 해결,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거래, 경제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 정치엘리트들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접촉과 교류의 확대가 문화적 동질성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 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통합 사례에 관해서는 독일과 중국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분단국이 통일된 몇 가지 사례가 있으나, 베트남과 예멘은 무력통일을 이룩하였고, 본 연구와 관련되는, 곧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은 독일의 경우 뿐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무력통일에 해당하나, 현

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무력적대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는 동서독 양측이 무력충돌한 경험이 없이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이 겪고 있는 상호불신은 갖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와는 비교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평화적 흡수통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보다 크리라 본다.

제Ⅲ장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인적교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순서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인적교류의 측면에서 본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아울러 인적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인적교류의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교류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인적교류 실적이 미미하였고, 그나마 정치·안보 등의 고위정치(high-politics)적 요소 및 한반도 국제정세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아 왔음을 고려하여 먼저 人的교류 확대를 위한 巨視的 차원에서의 기본방향이 검토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남북한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 모색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우리의 평화의지를 보장하되,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경계하며, 이데올로기적 요소보다는 남북한간 현실적인 동기를 우선하고, 가능한 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제3국과 해외 교포사회를 남북한間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現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第 II 章 人的交流에 대한 理論的 考察과 歷史的 事例

1. 人的交流에 대한 理論的 考察

가. 政治的 統合(political integration)의 概念

학자들은 대체로 정치체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두 가지를 언급해 왔는데, 하나는 강제력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합 단위간의 合意에 의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체의 통합은 무력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었던 만큼, 정치체의 통합력이 강제력이나 그 위협에 근거한다는 논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간의 문화적 유대가 없는 정치체의 통합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음을 역사는 또한 보여주고 있다. 무력에 기초하여 건설된 수 많은 제국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문화적 유대의 결여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예는 수 없이 많다. 또 최근 소련의 해체나 유고 연방의 붕괴는 바로 그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한편, 合意에 의한 정치체의 統合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통합

개념 자체를 통합을 이루는 요건, 곧 가치와 체계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와 동일시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적 통합의 개념은 우선 공동체의 형성이나 결속력(cohesiveness)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그 결속력을 가능케 하는 상호간의 유대감(mutualities)이나, 체계에 대한 일체감(identity) 또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등이 포함된다.⁵⁾ 도이치에 의하면, 통합이란 갈등의 비폭력적인 해결과 평화적인 사회변화를 장기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공동체의식(a sense of community)을 형성하고 그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⁶⁾ 한편,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폭력의 배제 외에 보상과 자원의 배분,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적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정책결정기구로서의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한다. 어언스트 하아스(Ernst B. Haas)는 통합에 따른 새로운 정치단위로의 충성심의 전환을 강조하나, 이 경우 충성심은 기존 정치단위들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뒤섞임으로 인해 새로운 체제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

대체로 통합은 구성원간의 문화적 유대, 동질성, 가치관의 공유 등을 전제로 하며, 또 이러한 요소들이 실현되는 상태로 定義되고 있다. 필립 제이콥(Philip Jacob)의 말을 빌면 통합은 ‘공동체적(community) 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⁷⁾ 이 경우 ‘공동체

5) Karl Kaiser, "The Interaction of Regional Subsystems: Some Preliminary Notes on Recurrent Patterns and the Role of Superpowers", *World Politics* 21 (1968, 10): pp. 86~89.

6) Deutsch, op. cit., 金國新의 "통합이론과 유럽통합이 남북한통합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25~127 참조.

7) Philip E.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적 관계'란 구성원들이 일체감과 자기의식에 의하여 결속된 상태인 것이다. 즉, 통합이론에 있어서의 주민들간의 문화적 동질성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통합 그 자체로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상호 대치하고 있고, 그 결과 문화적 이질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통합이론은 무엇보다도 남북 주민들간에 문화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일--그리하여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통합에 접근하는 유일하고 최선의 길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나. 統合의 過程과 統合理論

통합이론은 통합의 본질과 개념 뿐만 아니라, 통합의 과정과 결과도 다룬다. 과정이 중요해지는 것은 통합의 본질로서 제시된 '공동체적 관계' 또는 문화적 동질성을 과연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정치공동체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특히 관심을 가졌던 학자로서는 영국의 데이빗 미트라니(David Mitrany)를 들 수 있다. 미트라니는 현대세계가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되어가고 경제 및 기술적인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非정치적인 문제, 곧 기술적인 문제로부터의 접근이 정치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기능주의 이론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hilip E. Jacob and James V. Toscano 共編,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1964), p. 4로부터 재인용됨.

을 발전시켰다. 곧, 기술적이고 非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하여 이른 바 ‘分岐(ramification)’ 효과에 의해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상호 민감하고 쟁점적인 이슈의 해결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종래 ‘정치분야에서의 일괄타결 이후 다른 분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방주의 논리를 그들의 통일정책으로 내세워 온데 비해, 남한은 비정치·군사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이룩한 다음, 정치적 문제의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통일정책을 제시해왔다. 남한은 그 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新기능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는데, 현재 남북의 참여한 대치국면으로 보아 이같은 기능주의적 또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남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기본적인 이론적 골격을 제공해 주는 代案이 아닌가 한다.

통합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 기능주의가 잘 알려졌고 또 널리 인용되고 있지만, 보완적인 위치에서 통합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넓히는데 유익한 이론으로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들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거래의 량이 결속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곧, “개인들 사이의 결속력 (cohesiveness)은 이들간의 상호관계의 정도에 따라 측정되며 촉진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⁸⁾ 여기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들

8) Philip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hilip E. Jacob and James V. Toscano, 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Lippincott, 1964), p. 23.

로서는 일반적으로 우편물 교환, 전화 통신, 무역 수처 및 유학생 교환, 관광객 교환 등이 사용된다.

이 이론의 전제는 인간생활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역할과 중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억이 주는 情緒의 좋고 나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友宜 또는 적대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이상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생활에 있어 可히 본질적이다. 전쟁의 원인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이론 바 사회경제적 구조보다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간의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⁹⁾ 또 도이치는 정치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공통의 역사를 갖는 공동체는 상호보완의 관습과 커뮤니케이션 장치에 의하여 가능하다.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情報의 集積, 기억, 전달, 再합성 및 再적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는 습득된 기억, 상징, 관습, 선호의 표현,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작동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습관과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된 사람들의 규모가 커진 집단을 국민(people)이라 부를 수 있다. ... ”¹⁰⁾

국민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는 습관을

9)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N.Y.: St. Martin's Press, 1985) 등 참조

10)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1953), p. 96. Dougherty와 Pfaltzgraff의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 425와 p. 461 에서 재인용됨.

가지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의존적이 되면서 통합된다. 동서독이 분단된 이후 교류·협력이 한 時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현재 극도의 대치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제3자를 대상으로 내놓는 정부 당국자간의 성명전, 언론·방송 보도, 또는 적은 규모의 북한 출입 교포, 관광객, 외국인 등의 傳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투자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고 종교인들의 방북 스케줄이 잡히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편적이 아닌 광범하고 지속적인 인적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확대될 때, 남북 상호간 문화적 이질성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去來의 擴大와 葛藤의 解消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열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나, 케넛 보울딩(Kenneth E. Boulding)이 정의하는 갈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보울딩은 “상호간에 각자의 미래의 잠재적 위치가 양립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의사와 양립되지 않는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쟁상태”로서 갈등을 정의한다.¹¹⁾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벌어져 온

11)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3), p. 5. 具永祿, “南北韓 去來의 分析틀”,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

제로-섬 게임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갈등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울딩은 이러한 종류의 갈등해소는 거래관계의 확대를 도모하여 '상호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 때, 거래(transaction)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두 행위자들의 상호행동과 당사자 또는 체계의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諸행위로 정의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남북한의 거래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서는 상호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는 곧 보울딩이 말하는 '갈등체제(conflict set)'로부터 '홍정체제(trading set)'로 전환하는 작업과도 일맥 상통한다.¹²⁾ 갈등관계가 통합적 관계로 바뀌는 과정은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적용, 동화, 합일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¹³⁾

지금까지의 남북한의 거래관계를 보면, 홍정체제보다는 갈등체제에 가까웠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지금까지의 남북한 거래는 개인적인 왕래나 제3국을 통한 경제교역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어

181~183 참조.

- 12) '갈등체제(conflict set)'란 한 행위자의 움직임이 불법 도발 없이 상대방을 희생시킴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고, '홍정체제(trading set)'란 대화와 이에 따른 거래가 각자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측에 모두 이롭도록 적대자들의 사고와 행동을 재정향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3), p. 5. 具永緣, 위의 책 참조.
- 13) 朴英鎬,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34」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p. 17.

왔고,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왕래에 초점이 집중되어 왔다. 인적교류가 거래의 가장 초보적이며 주요한 형태이긴 하나,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두 사회를 갑자기 상호방문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 체제나 세계인식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일지도 모르며, 정치체제의 정통성이나 복지 수준, 행복한 삶의 가치 등에 대하여 논쟁함으로써 쉽게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인적교류를 포함한 모든 거래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들을 정책 담당자들이 신중히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인적교류가 지속적이고 장기화되면 상호갈등 보다는 상호理解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假定이며, 이러한 점의 이론적 근거들은 앞서 서술된 바와 같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요컨대, 인적교류를 포함한 남북한간 거래관계의 확대는 남북양측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즉, 상호이해와 상호갈등이 동시에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부정적이고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 효과를 제고시켜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극복하는 것, 곧 거래의 역기능적 효과를 감소시켜서 갈등의 해소를 꾀하는 지혜와 기술적 노-하우(know-how)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변화, 시장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의존 및 교류·협력의 증대 현상을 고려할 때, 남북간 커뮤니케이션, 교류 및 거래의 증대가 갈등의 해소를 거쳐 문화적 동질성을 가

저오리라는 개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라. 文化的 同質化를 위한 理念的 基礎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종교, 철학, 언어, 그리고 예술 등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요소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생활을 지탱해주는 요소들도 있다. 인간생활을 규정하는 총체적 의미로서의 '생활양식'이란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고, 정신적 요소를 결정짓는 가치관, 신념체계, 역사의식, 세계인식 등을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문화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문화란 어떤 의미에서 위 요인들의 '복합적 총체(complex whole)'이다.¹⁴⁾

무엇보다도 남북간 문화적 이질성을 가져 온 가장 큰 요소는 해방 前後期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오랜동안의 분리된 독자적 생활패턴이 아니었나 한다. 상반되는 철학체계로서, 그리고 신념체계로서 自由民主主義-자본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한 이질적인 사회체제는 남북 이질화를 촉진한 최대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민족상잔의 경험 이 중첩되면서 남북이 보여준 상호반목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斷罪하는 제로-섬 게임식 체제경쟁이 이질화를 가속화

14) 權泰煥 外, 「社會學概論」(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p. 55.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B. Tylor)는 그의 저서 「原始文化(Primitive Culture)」에서 文化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成員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라고 기술하고 있다.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양쪽에서 권력집단들이 분단상황을 독재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통치행태는 이질화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¹⁵⁾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물리적 측면보다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동질화를 먼저 이룩해야 한다는 데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異見은 없다. 그러나 현재 남북이 보이고 있는 이념적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여 문화공동체로서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문화적 동질화의 방향과 허용범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이데올로기 대립과 관련하여---인적교류 추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에 답하여 或者는 문화적 중간단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구조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는 그 성질상 量的으로 취급되어 특성을 달리하는 두 문화가 적절한 선에서 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문화들은 상호간 접촉이 있을 때, 특수하고 개별적 성향을 가진 문화가 비교적 보편적 성향을 가진 문화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발전해 간다고 한다.¹⁶⁾ 최근 수년간 일어난 세계적 규모의 격변--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중심으로 하는--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보편성과 적실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 문화적 동질화 과제의 중심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15) 金文煥, “통일원동력은 文化” 「조선일보」 1995. 8. 6. 참조.

16) Zhang Dainian, “Chinese Culture and Chinese Philosophy,” *Chinese Studies in Philosophy*, Spring 1988, p. 69.

공간으로 하면서, 여기에 한국민족의 전통적 문화요소를 가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2. 歷史的 事例

가. 東·西獨

독일통일의 길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개방, 이를 통해 야기된 동독인들의 대량 탈출,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의 개방으로 열렸다. 독일통일의 성공 요인은 많이 있지만 대략 다음 세 가지를 핵심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서독의 국력(경제력), 둘째, 동·서독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서독의 ‘통일외교’¹⁷⁾이다. 통일 당시, 경제력 면에서 서독이 동독의 10배를 넘었고, 이러한 경제력에 기초한 국력이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혁명적인 세계변화가 일어났을 때, 결정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최근 자주 云謂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 경제력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뒤의 두 요인, 곧 동서독의 교류·협력 과정과 ‘통일외교’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17) 서독은 공식적으로 ‘통일외교’정책을 수행한 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할런지 모른다. 보다 자세한 것은 金學成,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통일문화연구 上』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統一文化시리즈 94-01), pp. 203-213 참조.

1) 동서독의 교류·협력---「接近을 통한 변화」

동서독의 통일은 그 과정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1945년 연합군의 분할 점령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직후만 해도 서독 정부는 당시의 냉전적 조류를 반영하여 서방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소련 및 동독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¹⁸⁾ 서독이 독일국가 및 독일국민을 單獨으로 代表한다는 이른바 「정통성論; Identitäts-theorie」이 이러한 정책노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는데, 「할슈타인 독트린」이 준수된 것은 이러한 근거에서이다.¹⁹⁾ 한편, 동독정부도 서독과 정통성 경쟁을 전개하면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간에 구성된 경제공동체(COMECON)와 군사동맹체(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서독의 정통성論에 대비되는 「2개 國家論」(Zweistaaten-Theorie)을 표방하여, 제3의 국가들로부터 동독의 국제법적 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방측의 「동서독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항하는 「동서독의 국제법적 국가연

18) 1952년에서 1955년 사이에 서독이 서방 연합국들과 체결한 소위 「독일조약」과 서유럽연합(W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의 가입은 바로 그러한 정책노선의 일환이다.

19) 국토통일원, 「東西獨間の 通行-通信-通商에 관한 연구」(1990) pp. 8~9 참조. 그 주된 내용은 서독이 독일제국의 계승자이며, 동독은 주민 자유의 사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별개의 국가가 아니고 독일의 일부라는 것이다. 다만, 독일(서독을 의미)의 통치권이 영토적으로 제한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독이 독일국가 및 독일국민의 「單獨代表權」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합에 의한 통일」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말까지 지속된 서독정부의 철저한 동독 不認定 정책의 와중에서도, 1960년대초에 이미 서독 주요 정당들의 정책 입안자들이 통일문제에 관한 현실적 접근을 보인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社民黨의 한 理論家인 에곤 바르(Egon Bahr)는 1963년 한 연설에서 「接近을 통한 變化」를 제창하였는데, 그는 “동독에서의 공산주의 정권은 이를 밀어낼 수는 없고 오로지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 가능한 한 많은 交易을 통해 동독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동독정권을 안정시켜야만 긴장이 완화되고, 동서독간의 경계선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브란트 자신도 베를린 市長 시절(60년대초) “人的교류의 확대를 통해서만 민족의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결코 통일의 대용품이 될 수 없지만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통해서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여, 궁극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동서독 주민간의 인적교류는 1961년 8월 13일 동독에 의해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베를린市는 그 법적상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할선 통과에 따른 제한을 거의 받지 않았었다. 즉 허가없는 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1949년부터 이때까지 매년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한 숫자는 13만~33만명에 이르며, 총 2백 68만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동서독을 왕래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백 70만명의 동독거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함에 따라 노

동력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된 동독측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동서독간 인적교류는 「연금 수혜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실상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서베를린市정부(당시 市長; Brandt)는 서독연방정부의 허락하에 동독정부와 협상을 벌여 1963년 12월 17일 「통행사증협정」을 체결하고 1966년까지 4개의 유사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서베를린 주민들로 하여금 동독거주 친척들을 14-19일간에 걸쳐 방문토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후 양측의 법적·정치적 입장차이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동서독간의 교류는 문화, 스포츠, 관광, 공무상의 여행 등의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1969년 10월, 서독에 브란트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양독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브란트 정권은 앞서 언급한 新정책기조에 따라 동구국가들 및 동독과 일련의 협약을 체결하여 서베를린과 서독간 통행 확대, 서베를린 주민의 동베를린 및 동독방문과 통신의 기회확대, 동서독 주민들간의 상호방문 및 여행기회의 확대, 그리고 상호방문 절차의 간편화를 달성하였다.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수는 1972년 이후 2배이상 증가하였고, 동독주민의 서독방문도 약 30% 증가하였다.

한편, 동독정부는 서독의 새로운 「동방정책」에 의해 서독을 비롯한 제3의 국가들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외교관계 및 경제협력 관계를 갖게 된 한편, 서방세계로부터 밀려오는 자유화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자유화의 영향으로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에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정부는 이른 바 차단정책

(Abgrenzungspolitik)을 추진, '사상논쟁'을 강화하고 서독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제정 및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독은 또한 1974년 헌법개정을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2국가 2민족'론을 주장하여 통일불가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간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2년간 70여회 이상의 회담 끝에 통행협정과 교통협정에 관한 조약 등을 체결하고 마침내 양독간의 기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서독은 동독을 상호대등한 자격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고, 兩獨은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며 무력행사의 포기를 통해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동서독은 계속된 협상을 통해 120여개 이상의 조약, 협약, 협정 등을 체결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동독정부는 자유화 바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을 제한할 목적으로 서독여행자 1인당 「환전의무액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방문객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은 적은 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家庭事」를 이유로 한 방문은 1986년에 전년 비 약 10배, 87년에 20배로 증가하였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가정사」를 이유로 서독을 방문했던 동독방문자들이 99%이상 동독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동독당국이 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독에서는 1983년 10월 동독주민이 외국인(서독주민 포함)과 결혼하여 외국(서독 포함)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앞에서 개관한 것처럼, 1989년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서독간 행정적 분단은 지속되었으나, 內獨間 인적교류의 점차적인 해결로 동서독 주민들간의 '마음의' 분단은 이미 무너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서독 관계는 1989년 여름 이후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 수준의 「여행 자유화」를 결의하였다. 「국경 개방」으로 표현되었던 이 조치에 따라, 그 다음날 부터 매일 1백만명 이상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왔다가 돌아가곤 했다. 이것이 바로 독일통일의 시작이요 분단의 종결로 이어졌던 대사건이다.

2) 서독의 '통일외교'---'유럽의 평화와 유럽분단의 극복'

서독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새 동방정책에 따라 양독관계의 양과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분단이 전승국의 점령 지역 배정 결과였음을 중시, 서방 뿐만 아니라, 소련과 폴란드 등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까지도 독일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마치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독일을 통일하던 시기(1871)에 무력 전쟁 뿐만 아니라 유럽 열강들에 대한 외교적 기반 다지기에다 소홀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를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1969년 브란트 정권 출범후 서독은 1970-72년 사이에 소련, 폴란드, 동독, 체코 등과 이른 바 「동방조약」들을 체결한다. 서독 정부는 이에 앞서 소련과 일련의 의견을 교환하여 이른 바 '바르-정책지침' ('Bahr-Papier')를 成案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동서독의

현실을 인정하고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동방조약들에 반영되었다. 이는 과거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정통성 경쟁을 벌이던 자세에서 크게 전환된 것으로, 現實인정의 바탕 위에 ‘接近을 통한 變化’를 꾀해 보려는 서독 브란트 新정부의 동방정책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 하겠다. 또한 10년 이상 끌어온 동서냉전구도가 긴장완화 움직임을 보여준 시대상황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서독이 ‘유럽의 평화와 유럽분단의 극복’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통일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일종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독일민족의 자결권을 확인한 것과, 독일분단의 문제를 유럽분단의 문제와 일치시켜 독일의 통일을 유럽대륙의 동·서분단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승화시켜 다루려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을 포함한 쏘동구권의 민주화 및 EC(서유럽경제공동체)의 동유럽까지의 확장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동독과의 관계는 국제관계의 관례대로 교류·협력은 추진하나, 국제관계가 아닌 「내독관계(Inter-se-Beziehung)」라고 하는 특수관계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주변국가들의 변화,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에 의해 촉발된 소련의 변화가 가미되어 통일과정에서 상승작용을 한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3)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동서독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압권은 「접촉을 통한 변화」가 정치적 통일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서독간의 꾸준한 상호교류와 공감대의 형성은 독일 통일을 완성시킨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할 수 있다. 곧 통일이전에 축적된 동서독 주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서 양독은 조그마한 문제로부터 상호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보다 광범위한 합의로 나아가는 방법을 취했다. 특히, 동독 정권이 서독과의 정치적 통일을 희망하는 동독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통일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동독 공산정권 자신들을 해체해 버린 것은 우리와 비교되기 어려운 점이다. 또한 1989년 여름부터 수천명의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면서 서부터 통일기운이 시작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적교류는 상호관계개선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質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합의 주요 요건이라 여겨진다. 그 외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서독 주민들이 상대방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도 상호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²⁰⁾

그러나 본 논문의 대전제가 되는 접촉과 교류의 확대를 통한 문화적 동질화의 실현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통합의 달성, 그리고

20) IPI총회에 참석한 독일 「디 차이트」誌 라이트 편집국장 회견 내용. 「문화일보」 5월 16일자 참조.

이후 궁극적인 정치통일의 완성이라는 시나리오는 독일의 경우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접촉과 교류의 확대는 문화적 동질화보다는 정치적 통일에 기여한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서독 주민들간의 접촉의 증대를 통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물질문명과 소비문화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촉발시켜, 이것이 결국 동서독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전면 흡수통일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문화적 동질화의 과제는 오히려 통일 이후로 넘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통일은 “백화점 혁명”이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의 발달된 통신매체가 양독간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결국, 문화적 동질화를 실현하는 일은 대단히 장기적인 과제이며, 인적교류와 접촉의 증대가 문화적 동질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동질화의 방향으로 간다고도 할 수 없는 복잡한 경로를 갖는 것으로, 정치통일과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낳게 한다.

또한 독일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최초의 역사적 선례라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격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선례를 남기므로써,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독일이 겪은 ‘흡수통일식’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선례를 북한이 두려워하여 남북교류 자체를 경원하는 까닭이다. 독일의 선례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독일식 방법을 경계하는 요인들이 생겨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장

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독일 통일의 교훈이 글자 그대로 한반도 경우에 적용되기에는 양국이 서로 너무 상이한 몇 가지 사실을 안고 있다. 우선 독일은 패전국이었던 명에와 4대국에 의한 분할이었다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했다. 한국은 해방 당시 승전국편에 있었고, 분단은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편의에 따른 우연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지리, 인구, 역사 등 상대적 불변요인과 정치체제, 경제규모, 사회현실, 국제관계 등 상대적 가변요인을 놓고 볼 때, 양국은 많은 相異點과 相似點을 동시에 갖고 있다.²¹⁾ 우선 동서독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남북간에 겪고 있는 심각한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훨씬 적었다는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베를린이 동독내에 위치하여 동·서베를린 및 동서독간에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동서독간의 교류증대와 빈번한 접촉에 기여하였다는 점도 있다. 결국, 동서독 관계는 남북한관계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 사항들이 존재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독일의 경우로부터 시사점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이론적 명제를 우리 현실에 글자 그대로 적용하려 시도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미트 전 독일수상이 언급한 것처럼, 통일에는 결정된 방식이 없으며, 상황과 여건에 맞게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강구해

21) 梁性喆, “독일통일 실현과 한반도 통일전망”, 李容弼 外 共著, 「남북한 통합론」 (서울: 인간사랑 1992. 3) pp. 89~120 참조.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²²⁾ 남한이 일종의 국력진흥기에 있고 북한이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독일과는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나. 中國·臺灣

1) 중국-대만관계 개요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입각, 대만의 독립 추구 및 UN가입 시도에 절대 반대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무력사용도 不辭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³⁾ 대만도 과거 蔣經國체제하에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여 중국본토와 일종의 범통성(정통성) 경쟁을 하는 입장이었으나, 李登輝체제로 넘어오면서 분리주의 세력의 영향하에 대만의 정치적 실체 인정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적 위상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양안관계를 국내관계보다는 국제관계로 규정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정통성의 대립에서 「통일 대 분리」라는 새로운 대립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²⁴⁾

22) 1995. 8. 18. KBS 1TV 와의 대담 내용 참조.

23)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1995. 8. 12. 日야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의 불가피성과 核실험계속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4) 朴斗福, “중국 兩岸관계의 발전방향” 「新 아세아」, 1995 가을, pp. 33~46 참조.

최근의 양안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一國兩制」를 통일방안의 중심개념으로 제시하는 한편,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증대에 힘입어 평화적 방법에 의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 왔었다.²⁵⁾ 한편 대만도 3不정책 등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치·안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兩岸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꾀하여 왔다.²⁶⁾

그러나 인적·경제적 교류 등 비정치적이고 민간 차원에서의 획기적 관계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군사 영역에서는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2중구조가 양안관계의 특징이라 하겠다. 최근 이등후 대만 총통의 방미를 전후해서 야기된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3각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중-대만관계의 대립적요소를 극명하게

-
- 25)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라는 기본 원칙하에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따라서 북경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다만, 대륙의 사회주의 체제와 대만의 자본주의 체제 양 체제는 통일로 가는 도정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에도 중국은 대만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식이 되고,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해당한다. 통일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제3차 「국공합작」을 통한 평화통일을 상정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력사용은 완전히 포기된 것이 아니고 유보될 뿐이다. 최근 대만이 「소방위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노리는 등 독립적 움직임을 강화하자, 중국이 무력통일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 26) 대만의 「一國兩府」 또는 「一國兩區」 통일방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지만, 대륙과 대만간의 관계는 대등, 호혜, 평화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은 대만의 정치적 독립과 실체를 인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구」 개념의 主從관계는 수용하기 어렵다.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교류의 확대로부터 정부간 접촉을 거쳐 마지막 통일협상으로의 3단계를 구상하며, 다방면에 걸친 대륙의 발전을 기하여 民主, 自由, 均富를 실현함으로써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文興鎭,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4: 1994. 9) 제 II, III 장 참조.

노정시키고 있다.

이는 곧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일정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도록 兩岸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장애요인 때문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하에 兩岸관계를 중앙과 지방간의 종속적인 관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반면, 대만은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로서의 공존과 대등한 관계, 그리고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兩岸 정치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이 주장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느냐의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대만간 인적교류

1980년대에 간헐적인 교류가 시작된 이래, 兩岸間의 본격적인 인적교류는 1987년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대만정부의 방문 허용조치는 대륙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냄으로써 양안간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⁷⁾

대만정부는 애초 대륙내에 3촌이내의 친척이나 배우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되, 현역군인과 공무원은 제외시킬 만큼 그 제한은

27) 중국 국무원은 특별담화를 통해 “중국정부는 양안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증진을 주장해왔으며 앞으로 대륙을 방문하는 대만주민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무원 辦公廳은 대만주민의 대륙방문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민일보」 1987년 10월 15일.

비교적 까다로운 것이었다. 또한 대륙주민의 대만방문에 관해서도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대만의 인적교류는 이후 점차로 그 제한을 완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양안간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면서 인적교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양안간 인적교류의 규모를 보면, 1988년에서 1994년 7월까지 대륙을 방문한 대만인은 66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동기간중 대륙인의 대만방문도 55만명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또한 뗄 수 없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해 놓고 있다. 양안간 교역규모는 1993년의 138억달러에서 1994년에는 163.3억달러로 증가하여 대륙과 대만은 공히 상대방의 제4위 교역대상국으로 발전하고 있다.²⁸⁾ 대만 맞은 편의 푸젠(福建)성에는 2만 5천여개의 대만기업이 진출해 있을 정도이다. 중국은 그동안 형성돼 온 대만과의 교류·협력 성과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만도 중국과의 대립·갈등보다는 가능한 한 경협을 통한 양안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으나, 대서방 관계강화도 함께 추구하는 양면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중·대만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우선 중국·대만관계가 동·서독이나 남북한과 다른 점은 양측의 '非對稱性'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양안간 국력대비에 있어 현격한

28) 朴斗福, 앞의 책 p. 33 참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토지, 인구, 자원, 경제, 과학기술, 국방 등 '종합국력'으로 볼 때, 중국의 주도적 지위는 확고하다.²⁹⁾ 그만큼, 양안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관계발전을 상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중·대만관계가 남북한관계와 다른 점은 중국이 지난 15년여 동안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와의 교류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자본주의 영향에 따른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북한의 수세적 태도와 비교된다. 그리하여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이 남한 자본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대신, 중·대만관계에서는 대만이 대륙으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관계에서는 북한이 교류협력을 꺼리는데 반해, 중·대만관계에서는 대만이 신중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관계의 활성화가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케 하여 자본주의체제와의 교류에 위기의식을 해소토록 할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 능력을 얼마나 함양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만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국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같은 분단국가로서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것

29) 위의 책, p. 40 참조. 중국대륙은 총면적의 99%이상, 총인구의 98%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총면적의 1%미만, 총인구의 2%이하).

은 인적교류가 양안관계의 변화를 초래한 질적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중·대만관계는 남북한과 같이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상호 무력 충돌을 경험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최근까지 양안간의 교류·협력 규모는 남북한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였다. 지난 수년간 양안이 이룩해 온 인적교류의 규모는 남북한 관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며, 바로 이 인적교류의 규모가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차이와 최근의 무력위기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정치·이념적 장애를 극복하고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21세기 문턱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일(唯二)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중국-대만이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을 토대로 정치적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된다고 하겠다.

중·대만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해외교포의 교량적 역할이 양안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³⁰⁾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을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화교가 많은 지역이 양안관계를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특히 홍콩은 양안주민의 상호방문을 위한 중간 경유지, 교역의 중개지, 각종 정보수집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또 싱가포르에서는 1993년 4월 중국 海協會와 대만 海基會間에 「汪辜會談」이 열렸고, 李光耀 前싱가포르 총리는 이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³¹⁾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중 80%가 화교에

30) 文興鎬, 앞의 책, pp. 98~100 참조.

31) 위의 책, pp. 99~100 참조.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경우에는 양안 교류에서 차지하는 대만의 상대적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 높다.

현재 우리의 해외동포는 총 5백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연변 지역이나 미주 지역은 교포들이 집중되어 있어 남북한간 중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한편, 최근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가 노골화됨으로써 상당기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룩해 온 兩岸관계는 새로운 轉機에 들어서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중·대만관계의 악화는 그동안 쌓아 올린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의 결실을 무산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이등휘 총통의 방미를 통해 가시화된 대만의 다변화 외교 노력과 대만 일부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중국의 조치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나,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意志는 脫냉전시대의 분단국 사태에 있어 무력사용의 선례와 가능성을 남겨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第 III 章 人的交流의 側面에서 본 南北關係

1. 南北 人的交流의 歷史的 展開過程

가. 1970年代初---南北對話의 成立과 展開

1970년대의 남북대화는 남북적십자 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의 두 갈래 회담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남북대화는 분단 4반세기 만에 비로소 可視的인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 이상의 커다란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고, 희망이 큰 만큼 좌절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남북 관계는 때때로 대화에서 대결로 급반전되곤 했다.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 볼 때, 남북대화의 전개와 결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첫째, 남북한, 특히 북한이 과연 남북대화의 진전, 곧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에의 길을 원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 곧 남북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남정책의 주요 에이젠다(agenda)로 설정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60년대를 통털어서 공격적인 「대남폭력혁명노선」을 추구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다.

둘째, 1973년 6월 23일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의 통일정

책기조의 내용과 약 2개월후 북한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결렬 시키면서 발표한 이른바 「김영주 성명」의 관계에 관해서이다. 남한의 「6·23 선언」을 요약하면, i) 평화통일, ii) 상호실체 인정 및 내정불간섭, iii) UN동시가입, 그리고 iv) 이념과 체제에 관계 없는 문호개방 등이다. 즉, 남한정부는 북한을 “정치실체”로 인정하고 당분간 국제적으로도 두 체제를 상호 인정받으면서 평화공존의 상태를 정착시킨 후 장기적으로 통일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어떤 점에서 정치체제의 통합방식에 있어서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남북한에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²⁾

한편, 같은 날 북한은 「평화통일 5대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i)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ii)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합작과 교류의 실현, iii)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iv) 「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v) 단일국호에 의한 UN가입을 포함한 대외관계에서의 공동보조 등이다.³³⁾

32) 1970년대초의 남북대화는 남한이 경제력의 도약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사실상 1970년대까지 남한의 통일정책은 명분위주의 소극적이고 무계획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남한은 통일정책에 있어 ‘자주성’과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1) 기능주의 및 단계론, 2) 평화공존론 및 북한의 실체인정, 3) 남북간 교류·협력론 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33) 朴淳成·崔鎮旭,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30) p. 91 참조.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공화국」案은 우선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점, 그리고 대외적으로 단일 국호를 사용하고 대외기구에서도 단일 국호로 남북이 활동할 것을 제의한 점이 색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남한의 권력실체인 정부당국자와 민간을 분리하여 통일전선전략을 활용하려 한 점이 눈에 띄고, 통일문제에 관한 한 「하나의 조선」원칙에 집착하여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회담을 결렬시킨 「김영주 성명」은 남북의 이처럼 상반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곧, 이 시기에 남북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은 남북관계에 관한 남북의 視角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결국 양 회담의 궁극적인 결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일련의 계속된 방문 및 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인적 접촉을 통해서 남북 상호간의 실상을 엿볼수 있었고 또 변화를 위한 자극을 주었다는 점이다. 서로의 발전상,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 생활상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대시킨 것이 그 예이다.

분단 이후 4반세기 동안 한 차례의 전쟁을 치루고 상호 불신과 반목을 지속해왔던 남북 사이에 적어도 상호 합의하에 兩大 회담과 같은 가시적인 접촉을 이루어내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만큼, 남북적십자회담과 7·4공동성명에 이은 남북조절위원회회의의 개최는 국민과 세계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 최종적인 성과가 별무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때

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에 있어서 선례는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상황이 올 때에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되살아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1980年代의 南北對話와 人的交流

1970년대에 남북간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던, 몇 가지 남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들은 1973년 8월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성명으로 불과 1년여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사태의 급변은 사실상 남북간 뿌리깊게 심어져 온 상호불신과 적대감의 결과에 다름 아니며, 사실 「7·4남북공동성명」도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해석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미 내부에 배태하고 있었다.³⁴⁾ 한편 1970년대 후반은 국제적으로도 新 냉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시기였다. 미·소 관계의 악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남북관계도 침체되어갔다.

남한에 있어서 이 시기는 국내정치가 소용돌이처럼 휘말리던 격동기였다. 1979년의 대통령 암살사건과 그에 이어 출현한 “신군부”의 정권장악으로 권력의 정통성이 심히 문제시되던 기간이었다. 한편 북한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했다. 남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경제·군사 경쟁을 더욱 본격화했으며 긴장의 도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34) 보다 자세한 내용은 朴淳成·崔鎮旭,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30) pp. 84~87.

이러한 상황에서 1983년 10월 9일 일어난 아웅산 사건은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이례적으로 체육회담(1984. 3.)과 수재물자 지원 의사(1984. 9.)를 밝혀오고 남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에 남북대화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 적십자 회담이 부활하게 되고, 익년(1985. 9.)에는 그 성과로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1)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남북의 적십자사 총재가 인솔하는 151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국토분단 40년만에 본격적인 그리고 사상 최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때까지의 남북간 인적왕래는 비록 여러차례에 걸쳐 있었다고는 하나, 몇몇 회담 대표들과 보도진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³⁵⁾

이 교환방문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에서는 총 100명의 양측 고향방문단 인원 중 65명이 92명의 가족·친척들과 상봉하였는 바, 평양을 방문한 남한측 방문단에서는 35명이 41명과, 서울에 온 북한측 방문단에서는 30명이 51명과 상봉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도 9

35) 3차에 걸친 실무자 접촉 끝에 남북적 쌍방은 방문단의 규모를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및 지원인원 20명 그리고 대표인솔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51명으로 하고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방문단 교환형식은 동시교환방문 방식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그리고 평양예술단은 서울국립극장에서 각각 2회의 공연을 하였다.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류는 대한적십자사가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추진한지 14년만에 이룩한 최초의 실질적인 사업성 과로서, 비록 방문지역과 규모에 있어서 제한된 점이 있으나, 이산 가족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가족 친척들과 만날 수 있는 역사적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북대화 및 남북간 인적교류상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교환방문에 대한 평가

1985년 9월 20일 오전 9시 남한측 방문단 151명과 북한측 방문 단 151명은 판문점에 도착, 군사분계선을 동시에 통과하여 각각 서울과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40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왔 던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참으로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감격적인 장면들을 연출하여 분단된 민족의 슬픔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再會의 감격과 더불어, 짧은 만남 이후 다시 헤어지지 않을 수 없 는 안타까움에 이산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쳤다. 그 런 가운데서도 이산가족들의 대화에서 때때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질성은 분단된 민족의 통합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대화 곳곳에서 정치선전과 김일성체제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곤 했다. 또한 분단 40년의 세월 은 사람들의 情과 追憶의 많은 부분을 망각 속에 놓쳐버리게 했다.

서울에 사는 8旬 老母는 北에서 온 54세의 장남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들의 외침을 알아 듣지도 못했다. 다만 아들임을 認知하고 눈물만을 흘렸다. 또 다른 경우에 19세의 소년이 54세의 중년으로, 38세의 장년이 73세의 노인으로 변해 서로 만난 父子는 단절의 35년의 세월을 통곡으로 원망하는 수 밖에 없었다. 生後 두 살도 채 못 돼 아버지와 생이별한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고, 아버지 또한 35년이 지나 중년부인이 된 딸을 알아볼 수 없었다. 도무지 현실같지 않은 이 父女의 상봉은 바로 남북 이산가족 현실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³⁶⁾

한 인생에 있어 40-50년의 세월은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40년만의 재회는 기쁨과 감격 뿐만 아니라 기억상실, 어색함, 그리고 그동안 각기 형성된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생소한 감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문화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한 세대 이상의 기간에 해당되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규범 속에 살아 오면서 남북은 서로 다른 문화형태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全無한 상태에서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은 예상 외로 그 간격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1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동서독이나 남북한처럼 분단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간의 '마음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어 나가느냐 하는데 있을 것이다.³⁷⁾ 마음의 장벽은 서로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

36)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백서」 제2권 (1986. 9.) pp. 182~230 참조.

37) 宋斗律,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5.5). 「한겨레신

는데서 출발한다. 물론 그 원인은 서로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은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평소 교류가 없었고 동족상잔까지 경험하였으므로, 이 ‘마음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분리가 상호 이질성을 점차 증대시켜 온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제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예술공연에서 보여진 것은 이미 북한에서는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이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정치적 선전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 예술공연단의 교환 공연은 「전통의 단절」을 실감케 해 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후일 1990년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와 송년 통일전통음악회를 비롯한 제3국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남북의 반응을 보면, 남한은 북한을 「신파조」, 「유치하다」 등으로, 북한은 남한을 「퇴폐적」, 「양풍」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대조로 왔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북간 문화의 상대성 및 다원성에 대한 이해와 동질성 회복의 노력이 부족하므로, 문화최우선, 문화동질성 회복, 문화 다양성 등의 원칙하에 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문, 1995년 8월 18일자, p. 5, “아침햇발” (김명걸 논설위원)에서 재인용됨.

다. 第6共和國의 南北關係와 人的交流

1) 남북관계 概要

6공화국 이후 주목할만 한 외교적 성과로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동구권 등 공산주의 사회의 격변을 활용한 북방외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들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정부는 1988년 12월 북한에 총리회담을 제기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992년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1년 12월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비핵화공동선언은 그동안 남북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관계개선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途程에 있어, 남북한 정부당국자간에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며, 향후 통일의 기본세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8차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부속합의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의 상호관계를 새롭게 규정했다는 의미에서 독일의 기본조약과 비교되기도 한다. 동서독의 기본조약과 비교할 때, 동서독의 기본조약이 국가간의 조약임을 명시한데 비해 (물론 內的으로는 '內獨관계'라고 하는 특수관계로 설정하였지

만), 남북합의서의 경우는 국제법상의 상호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이라기 보다는 남북의 두 정치적 실체간에 체결된 특수한 형태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核사찰을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92년 3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1992년 9월 30일까지 8차례의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전체 회의와 5차례의 위원접촉을 진행하였다.³⁸⁾ 남북 양측은 의견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하던 중, 1992년 10월 8일 韓美 양국이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核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한반도 핵문제는 北核을 제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게 된다.

2) 1990년대초의 인적교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제정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공포,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시기의 남북간 인적교류는 각

3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북한핵문제: 전망과 과제」 중 全星勳이 쓴 「북한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pp. 6~9 참조.

분야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남한측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코자 신청한 건수는 1989년 하반기(6.12-12.31)에 36건 70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5건에 687명으로, 1991년에는 753건에 2,19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2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725건에 2,206명: 10월말까지의 통계).³⁹⁾ 그리고 신청건수중 대북주민접촉이 승인된 비율은 약 89%(1989년 이후 총 1,749건의 신청중 1,557건 승인)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종전과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북접촉의 성사건수는 승인건수의 약 30%로서 총 460건에 불과해 북한이 남북접촉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사건수중의 대부분은 중국·일본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접촉이 차지하고 판문점을 통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순수 민간차원의 남북한 왕래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다만, 1993년도에 들어서서는 북한 핵문제의 돌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에서 체제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술·문화·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해외여행이 통제됨에 따라 남북간 인적교류도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오직 이산가족 분야는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및 상봉 횟수가 늘어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1993년에 성사된 이산가족 수는 198건(208명)으로 90년도의 35건(49명), 91년도의 127건(147명), 92년도의 132건(149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산가족의 접촉방법은 대체로 해외교포를 중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39) 통일원 「통일백서 1992」, pp. 276~295 참조.

이었고(91%), 상봉 주선단체를 활용하는 방법(8%)과 국제행사참가를 이용하는 경우(1%)도 있었다. 지역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북경이나 연변 지역이 점차 중요한 이산가족 접촉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라. 最近의 南北關係와 人的交流

1) 주요동향 분석

1993년에 들어선 문민정부는 민주주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북한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여 남북대화는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은 종래 남북한간 진행되어 온 남북고위급회담을 기피하고 새로운 대화의 채널로써 特使交換을 제의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공식적인 남북대화 기구인 남북고위급회담과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의 핵문제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⁴⁰⁾ 이후 남북간에는 특사교환을 위한 수차례의 수정제의가 있었고 3차에 걸쳐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UN총회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이 이에 항의하고 더 이상의 실무접촉을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중단되었다.

1994년에 들어서서 7월에 金日成이 사망하고 이어 10월에 北美

40) 보다 자세한 것은 金道泰,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제 9회 국내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15) pp. 63~65 참조.

核合意가 成事되었으나, 南北관계는 크게 好轉되지 못하였다. 남북대화의 문제가 北美 核합의의 중요한 權장사항이었음에도, 북미합의 이후 오히려 남북관계는 유례없는 교착상태를 맞았다. 북한은 정치·경제 체제상의 對南韓 열세를 對美 직접협상 전략으로 만회하고,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남한을 배제한 채 그들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려 시도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單獨 關係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경수로 협정 체결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일성 사망 이후 남한정가에서 일어난 '조문파동'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킨 계기가 되었다. 일부 야당정치인들의 '조문' 발언에 대해 한국국민과 정부는 심각한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또한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이후 북한은 남한 당국자들을 대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해왔다. 남북한 사이에 놓여 있는 가치관과 인식의 깊은 차이가 낳은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해방 前後와 6.25전쟁에서의 북한 김일성의 역할, 오랫동안 남한 住民과 정부를 괴롭혀 온 북한의 對南적화전략, 그리고 북한 1인통치과정에서의 참담한 북한의 人權문제를 상기할 때, 한국국민의 '김일성 조문'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은 충분히 理解가 가는 일로서, 국민의 건전한 도덕과 역사의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있다. 「弔問」에 대한 국민감정을 지지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북한과 평화와 善隣의 교

류·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도덕과 현실정치 사이에 놓여있는 딜레마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1994년의 인적교류 동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최근 인적교류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오고 있다.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한국정부는 기업인 방북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하고, 이어 남북경협 관련 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북교류를 외면하면서도, 남한 기업에 방북초청장을 발급하고 일부 종교계와 선별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二重의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

분야별로 볼 때, 이산가족 분야는 성사 135건(150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제3국에서 가족을 상봉한 경우는 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하나, 대부분의 경우 중국거주 친척이 남북한 가족을 동시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이산가족의 접촉은 이처럼 중국거주 친척이나 알선단체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62건(145명)이다. 이 중 중국의 북경·심양 등이 51건으로 접촉지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방북 성사의 예로서

는 1994년 12월 13일-17일간 나진·선봉 지역 투자환경 조사차 쌍용그룹 관계자 12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언론분야에서는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의 향방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관심으로 접촉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하인 탓으로 성사는 2건(2명)에 머물렀다.

결국, 1994년도 교류 총실적은 북한 방문 1건(12명), 북한주민접촉 237건(691명)으로서 지난해보다 감소하였다.⁴¹⁾

2. 人的交流에 對한 北韓의 立場

가. 對南政策의 基本原則

북한은 그 특유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이끌어 왔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수령을 정점으로 수령-당-인민이 유기적 통일체(이른 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고도의 집단주의적 체제이다. 주체사상은 그 성격상 고립적일 수 밖에 없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김일성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⁴²⁾

이러한 통치 이념에 기초하여 종래 북한의 대외정책은 첫째, 주

41)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3호(1995. 1. 1 ~ 1. 31) 참조.

42) 슌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朴漢植 編 「北韓의 實相과 展望」 (서울: 同和연구소 1991. 10) 참조.

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해방'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 둘째, 전세계의 공산화 달성을 위한 혁명전위대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모든 행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1조 4항에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해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세계현실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공식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북한 지도층 또는 주민들 사이에 內面化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특히 두번째 목표는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며, 첫째 목표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밖으로부터 밀려 오는 개방에의 압력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통한 내부 정치질서의 안정적 재수립이라는 숙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인다.

나. 對外認識의 最近動向

어느 나라이건 이데올로기의 공식적 표명은 그 나라의 대외인식을 파악하게 하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김정일이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94.11.1)라는 논문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다」(95.6.19)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두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 대

외인식의 최근 동향을 살펴 본다

1) 사회주의 고수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 김정일은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이 이른바 “선행이론”인 맑스주의가 혁명투쟁에서 물질경제적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인간개조사업과 사상개조사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집단주의를 ‘사람의 본성적 요구’로 규정하여 개인주의로부터 집단주의로의 이행을 ‘역사발전의 필연적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사상적 계도작업은 종래 김일성 시대의 경직된 대외노선의 연장선상에 서는 것으로, 사상강화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内部단속과 統合에는 기여할런지 모르나, 북한 사회의 개방·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에 필요한 개인주의 사상의 보급을 향한 世界史的 흐름에는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김정일의 두번째 논문은 북한이 북·미 핵협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정책基調면에서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일은 아직도 사회주의의 固守와 주체사상의 內面化만이 북한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⁴³⁾

43)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원인을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상이 왜곡·변질됨으로써 사회주의가 방향을 잃고 자기 궤도에서 탈선”한 데에 두고 있으며, “일부 나라 당들은 - - - 인민대중

결국 김정일은 이 2편의 논문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개방적 실용노선을 추구한다 해도, 결코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개방과 동시에 북한체제를 위협하게 될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적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 ‘다원주의’, ‘공개성(개방)의 원칙’, ‘사적소유’, ‘개인주의’ 등의 경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에서 최근 진행중인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물질생활의 유혹에 대한 경계와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다. “고양이가 반찬 맛을 들이면 못 견디는 것처럼, 혁명가가 돈 맛을 들이면 혁명을 할 수 없다”, “...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혁명동지 ...” 등등의 표현들은 북한이 자본주의의 유혹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침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의 黑猫白猫論, 姓社姓資論 등의 실용주의 노선, 곧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시도하는 자세와 크게 비교되는 것으로, 북한의 경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북한이 經濟難을 극복하기 위해 때때로 실용주의적인 외교행태를 보이고, 또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단발적인 개방 움직임이 보여오고 있으나, 중국식의 개혁·개방 노선과 비교할 때 비관적인

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에 마땅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경제건설 일면에 매달림으로써 경제건설 자체도 침체에 빠뜨렸으며, 구경은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 버리고 자본주의를 복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북한의 경우 개방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思考와 認識의 전환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개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려는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이 단지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치유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체제 속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교류·협력하여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하자면 세계관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개방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과 아울러 개방과정에서 있어서의 무한한 각고노력이 개방의 성공을 위한 충분 조건이라 하겠다. 이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의 개방 15年史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자유화의 오묘한 결합을 통해 숭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오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의 新체제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하겠다.

2) 대중문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정서와 대중문화의 동향을 보면, 위와 같은 체제상부의 이데올로기 강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곧, 돈을 벌기 위해 비리와 부패가 사회저변에 난무한다든가, 노동당 간부들이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다든가, 간부계층 인사들이 외제물건 및 좋은 음식 등을 얻기 위해 애쓰

고 있다든가, 또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문화적 성향은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적 단속과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저변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화를 향한 일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지도층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이 외부문화思潮에 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상무장 운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변화를 향한 大勢를 어느 정도 지체시킬 수 있을런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3) 체제붕괴 우려와 통일전선전술

1980년대 후반부터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북한이 종래의 공격적 대남 적화노선에서 수세적 통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곧 이 시기에 가중된 외교적 고립, 경제난, 남북간 국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흡수통일 우려 등으로 체제보존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남 정책을 종래의 현상타파노선에서 남북의 현상을 인정하면서 실력을 쌓고 後日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북한은 특히 남한과의 교류 확대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 불신은 경수로 사업에서 남한의 「중심적 역할」을 배제코자 하는 노력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경수로 사업에서 남한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남한이 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렛대(leverage)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대화의 상대로서 남한체제 및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기 보다는 여전히 대화와 대결노선을 병행하면서 정부당국자와 민간을 분리하는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과의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親北 재야인사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남한체제의 안정을 흔들어보려는 구태의연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노선이 대외적으로는 미·일 등과의 수교를 통해 남한을 逆고립시키려는 「聯外封南」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남북대화과 인적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는 아직도 守勢와 攻勢가 混在하며, 현실인정과 현실타파의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共存하고 있다. 결국, 접촉과 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문화적 동질화를 기함으로써 평화적인 방법으로 社會·文化統合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정책과는 큰 거리가 있다고 해야겠다.

다. 人的交流에 對한 北韓의 認識

앞서 남북간 인적교류史와 북한의 최근 대외동향에서 보여진 것처럼, 북한의 인적교류에 대한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정치적 영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人權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치나 군사와 같은 고위정치(high politics)에 종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적교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그들의 대외전략과 「실용주의」정책에 따라 전술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이산가족 찾기, 별목공 문제 등 인권에 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적십자회담 등의 사업이 하루 아침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산되는 이유가 있다. 참고로 동서독의 인적 교류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서독정부는 동서독의 구분이 없고 독일인(동독 주민을 포함하여)의 국내외(서독 포함) 여행을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동독은 68년 이후 독자적인 국적법을 가지고 동·서독인을 구별하며, 따라서 서독주민은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체재허가(Visa)를 받아야 했다. 동독주민이 서독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때, 동서독간 인적교류 역사는 동독의 국내법을 변경시키기 위한 서독의 노력과 이에 대한 동독정부의 대응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적교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民族」에 관한 북한의 개념부여이다. 「민족」개념은 남북이 앞으로 통일의 핵심개념이자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민족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다르다. 자유민주국가들의 민족 개념에는 '혈통' 및 '문화'적 개념이 포함되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개념에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단연 강조된다. 동서독 관계에서 兩獨의 민족개념을 참고적으로 살펴 보면, 서독이 「1민족 2국가론」을 제창하여 동독을 '독일민족의 한 사회주의 국가'로 파악했던데 비해, 동독은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한 민족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한결같이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른 바 「주체사상」하에 독자적이고 기묘한 정치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인 남한 사이에는 민족개념에 관한 한 분명한 視角차이가 존

재한다고 하겠다.⁴⁴⁾

남한은 6공화국 시절에 「민족공동체」 개념을 창안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존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할 것을 북한에 제의해 왔다. 그러나 과연 사회주의 국가로서 독자적인 정치신념체계를 형성해 온 북한으로부터 얼마만큼이나 이 「민족공동체」 개념이 수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3. 南北 人的交流에 對한 評價——主要 決定要因과 分析

가. 人的交流와 文化的 同質性

인적교류가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들간의 접촉을 통해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고, 이를 기초로 상호이해를 증대시키며 동일한 가치기준,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여, 결국 문화적 동질성을 향해 나아가는 첩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교류의 핵심개념은 사람들간의 「접촉」이며, 이 「접촉」이 문화적 동질성에 기여한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형태의 인적교류가 반드시 상호이해의 증진과 문화적 동질화에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의 접촉은 때때로 갈등과 상호반목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만큼 세심한

44) 정용길, 「민족발전공동계획」 (민족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1995. 8. 11) 토론 내용.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남북간에 이루어진 ‘쌀지원’이 오히려 남북간 긴장을 조성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외면하기 어렵다.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同胞愛와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이루어진 쌀지원이 어떻게 해서 남북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지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 의하여 취해진 화해조치--이인모 송환 등--도 북한에 의해 그 善意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이후 남한사회에서 일어난 「조문파동」 이후 남북관계는 매우 심각한 경색과 교착상태에 이르렀었다. 이에 반해 1970년대 초반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을때, 남북한의 태도는 短期間에 그쳤기는 하지만 상호비방과 불신을 증지시키고 한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추구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성숙되었었다.⁴⁵⁾

결국, 어떠한 접촉과 교류도 상호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교류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신뢰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이 문화적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적접촉과 교류가 문화적 동질화에 실패하는 경우는 그것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실패하여 상호신뢰보다는 상호 불신을 초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史와 인적교류의 과정을 概觀하면서, 남북교류에 관한 한 ‘접촉을 통한 문화적 동질화’

45) 趙明哲(前 김일성대학 상급교원)은 1972년 7·4공동성명 직후 북한 사회 전체가 통일에 관한 희망으로 흥분된 분위기였으며, 일시적이거나 남한에 대한 비방은 사라지고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당시의 남북화해 분위기를 증언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5. 8. 18. 참조.

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可視的인 성과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 北韓의 對南戰略과 體制危機

한편,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대화 및 남북간 인적교류가 부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면,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꼽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는 南北關係史가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북한은 대략 1970년대 중반까지 무력적화 통일에 기초한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활용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입장은 전환되고 있다. 곧, 종전의 대남전략에서 보다는 점차 체제경쟁에서 남한에 우위를 빼앗기게 됨을 자각하여, 남한과의 접촉과 교류로 인한 자본주의의 침투와 북한체제내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북한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게 되고, 독일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되자 북한의 체제붕괴 우려는 더욱 더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개발 기도와 對美협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체제위기를 해소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북한은 對美, 對日 관계개

에 주력하면서 남북관계를 부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聯外對南」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것이 최근 수년간 핵위기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부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를 대외관계의 종속적 위치에서 파악하는 정책基調가 사실상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南韓의 統一政策

북한의 무력통일 기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남한의 통일정책에서도 남북관계 부진요인의 一端을 찾아볼 수 있다. 분단 직후 남한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 ‘UN감시하’총선거 등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先건설 後통일’ 정책을 제창하여 통일논의에 대한 사실상의 유보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대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국내정권적 안보에 활용한 증거는 충분히 발견되고 있다. 한편, 재야 일각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무조건적 민족통일, 좌우합작, 자주-평화통일론, ‘민중’주체론 등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인 요소로 인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비현실적 통일논의---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는 그만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통일·안보정책에 있어서의 원칙의 不在와 「국민적 合意」의 결여는 남한정부의 편에서 볼 때,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데 실

패한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할 만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累積的인 노-하우(know-how)가 요구되는 제반 정책 분야에 일관성있는 施策을 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곤 했고, 특히 통일·안보 분야에 있어서 잦은 人事와 정책변경으로 커다란 차질을 빚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한반도와 남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비중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남북관계 및 기타 주요 열강과의 관계가 크게 왜곡되는 매우 우려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 최근에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시행된 대북 쌀지원이 북한으로부터 최소한의 謝意도 받아내지 못하고 굴욕외교라는 대내외적 여론의 표적이 되어왔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우리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탈냉전’과 화해분위기에 근거하여 「무조건적 남북대화」론이나, 일방적인 포용론, ‘햇볕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화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쌍무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때 그때 북한의 태도를 보아 強·穩정책을 구사하는 유연한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第 IV 章 人的交流 擴大를 위한 具體的 方案의 摸索

1. 基本方向

가. 北韓의 變化와 開放을 誘導하는 一貫性있는 政策의 推進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은 필수적 사항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이 개방을 필요로 하고 또 추구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의 내부안정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긴요하다. 국내정치가 불안하면 외교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⁴⁶⁾ 북한이 국내정치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대내외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개혁·개방 욕구에 부합하는 교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데올로기적 요소보다는 상호 현실적 필요와 동기에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주」, 「평화」, 「민주」적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진 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북한을 포용하여 '접근을 통한' 북한의

46) 키신저는 국제관계의 연구를 위해 안정적 체계(stable system)와 혁명적 체계(revolutionary system)의 2모델을 제시하고, 세계분쟁은 혁명적 체계를 가진 국가가 세계질서의 변혁을 시도할 때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앞의 책, pp. 111~116 참조.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며,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완성」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붕괴와 같은 갑작스런 상황에도 대비해야겠으나, 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對北 정책은 ‘접촉을 통한 변화’의 誘導라는 원칙 아래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전략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독일통일 이전, 서독이 정치적 통일보다는 양독간 교류확대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또한 동독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음은 우리가 살펴보았다. 결국 동독 내부의 변화와 개방을 통해서 독일통일이 가능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平和意志의 保障과 統一前線戰術에 對한 對應

남북관계에 관한 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북한간 교류확대가 자본주의 침투를 야기시켜, 북한체제의 붕괴 또는 흡수통일을 가능케 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南韓의 平和意志를 보장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교류추진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모험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의 대비가 남북대화를 자신있게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북한의 남침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해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의 위협은 실존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내부

불안정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한의 내부사정보다는 남한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남한의 政情이 불안하면 공세적 자세로 나오고, 남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대화에 응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중심의 통일달성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하겠다. 김일성 체제하에서 대남전략의 골간으로 추진되어 온 통일전선전술은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정권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1995년 중 북한이 실행한 통일전선전술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광복 50주년 경축행사를 겸한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4월 평양축전에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 초청, 개천행사 및 단군릉 참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한의 대중교 지도자 초청 및 방북 유도, 그리고 김일성 1주기에 박용길 장로 초청 및 방북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내의 과도한 진보적 움직임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되어 북한의 자세를 강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정치의 민주적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건설, 그리고 사회복지의 증진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이 성숙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때, 북한은 대화보다는 남한의

헛점을 이용, 통일전선전술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 南北韓間 共同關心事의 追求

세계를 보는 視角은 보는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달려 있고, 사람들은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처한 입장과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주요한 테크닉으로 간주된다.⁴⁷⁾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觀點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나의 관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理解(understanding)한다고 해서 반드시 同意(agreement)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이익을 새로이 제고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서로의 위치(positions)에 집착하지 말고, 공동의 관심과 이익(interests)을 추구하되,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⁴⁸⁾

북한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이기 보다는 이데올로기 중심적이고, 명분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

47) Roger Fisher and William Ury, *Getting to Yes* (Boston: Houghton Mifflin 1984) pp. 22~24 참조.

48) 위의 책, p. 41 참조.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남북간 관심사가 같고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을 선택하여 승의 영역을 확대해 감으로써 상호신뢰를 증진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최근 북경에서 열린 바 있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남북간 連帶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이런 점에서 남북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된다. 비정부기구 포럼(NGO)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한 대표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에 성공한다면, 이는 앞으로 남북 여성들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⁴⁹⁾

또, 환경문제에 관해 남북이 공동 대처하는 ‘환경共助’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특히, 황해와 동해의 유류오염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다국적 체제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되, 한편으로는 북한과 협의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방도라고 본다.

이런 종류의 行事에서는 가능하면 남북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적 현안문제를 일체 배제하고, ‘위안부’문제 등에서 ‘對日 공동 대응’ 문제를 협의하듯이, 상호 공동 관심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얻어내는 방법이 현명하리라 판단된다.

49) 그동안 남북 여성들간의 만남은 국내외에서 여러번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특히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북한측이 참가하기로 하였다가 불참한 일은 남북간 교류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케 해 준다.

2. 推進方案

가. 第3國 또는 僑胞社會의 活用

남북간 기본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3국 또는 해외동포들을 중개자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교포사회에서 南北間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보도록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화교의 중개역할이 양안간 접촉·교류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 방안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북한이 이산가족 등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를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체제가 과거 국가주권(state-sovereignty) 중심시대로부터 점차 국경이 무너지고 상호의존과 협력 및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도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아 이에 적극 대처하려하고 있음은 이러한 세계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이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람, 물자, 자본, 정보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효율성」과 이윤을 기반으로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하에서 해외동포들이 경제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남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일부 남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남북한 교류확대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⁵⁰⁾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공동체' 개념 속에 해외동포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며, 이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현재 해외동포는 총 5백 23만명으로서, 중국에 1백 94만명, 미국에 1백 80만명, 일본에 70만명, 러시아에 46만명, 유럽과 남미등 기타국가에 33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⁵¹⁾ 연변지역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본다.

1) 연변지역

두만강 건너편 연변 지역은 남북 교류의 중개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한다. 연변은 정치적으로 중국령이고 교포들의 국적도 중국이다. 그러나, 연변교포들은 문화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말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한글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가요가 유행하고 있다. 정치적 국경과 문화적 국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한국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하여 북한으로 문화적 동질성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해외동

50) 1995. 8. 16~17. 통일원-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최 「세계한민족통일문제 토론회」 내용 참조.

51) 외무부, 「외교백서 1994」

포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교민청과 같은)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⁵²⁾ 동시에 교민정책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만주 조선족 사회에는 이산가족 상봉 브로커까지 존재하는 등, 이산가족 찾기에 있어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⁵³⁾ 우리 정부가 좀더 민활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만 국경을 두고 벌어지는 각종 인적교류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겠다.

2) 北美지역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과 미국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이 머지 않은 장래에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년들어 북한 고위인사들의 미국방문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政-財-文化界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재미교포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평양축전 관광단을 교포 언론매체에 공개모집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약3백여명의 재미교포가 평양을 방문

52) 상기 토론회에서 具宗書는 “한국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교민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3)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다 북한에 들어갔다가 중국측의 협조로 남한에 송환된 이종근씨 사건은 연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실태와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일깨워 준다.

하였다. 미·북한간 또는 재미교포와 북한인사간 인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교포사회의 親北化 현상을 경계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經濟力을 活用한 人的交流 促進方案

서독이 그 월등한 경제력을 통일을 위해 활용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통일 이전 교류·협력과정에서 동독을 物的으로 크게 지원하였고,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엄청난 對蘇 경제지원을 통해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⁵⁴⁾

현재 북한은 유례없는 경제침체와 이로부터 비롯된 體制전반에 걸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력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방안을 탐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동독의

54)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과의 협상에서 경제력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 때, 서독의 내독성은 34억 내지 35억 마르크를 동독에 제공하는 댓가로 33,000명의 동독 정치범을 석방시켰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래 40만의 이산가족을 상봉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서독의 대동독 경제지원은 통일을 달성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동독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할 수 있다. 1981~82년경 동독이 경제적 파산의 조짐을 보였을때, 서독에서는 동독을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었으나, 동독 주민의 고통에 대한 고려와 경제악화시 동독의 전쟁도발 가능성 때문에 서독은 10억 마르크를 동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1995. 9. 6.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있었던 한·독 실무정책협의회토의 내용 참조.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동독에 경제원조를 실시할 경우 동독체제를 오히려 유지시켜 통일을 지체시킬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서독에서 대두되었던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경제지원을 놓고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 바 ‘붕괴론’, ‘포용론’의 논쟁과 흡사하다. 이 상황에서 서독은 이질감 해소 및 동독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경제지원을 단행했다. 우리의 경우는 대북한 경제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주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여 정부가 대북지원을 강행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 한편 동독도 북한 처럼 자본주의 사회와의 경제교류가 경제예속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다만 그 우려의 정도에 있어 북한이 훨씬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남북한간 물질·인적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동시에 대북 교류활성화를 위한 경제력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테크니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이산가족에 송금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국내의에서의 각종 접촉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북한의 예술품을 매입하거나, 학술회의 비용을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남접촉 욕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의 자본주의 혐오 태도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이 ‘돈으로 북한의 변화를 사려고 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1)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준비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은 우리의 확립된 통일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민족공동체의 건설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된다.⁵⁵⁾

현재의 남북간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은 對北한 경제교류·협력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계획이 처음에 경수로 지원 및 평화적 核에너지 개발의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을 개별 기업·사업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미시적' 차원의 대북경제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對北경제협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고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계획이 북한 경제를 경제특구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등 '중범위'수준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운영원리를 통합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시적 통일정책의 기본 틀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⁵⁶⁾

이제 필요한 것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경수로 지원사업을

55) 민족통일연구원, 광복 5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1995.8.11) 발표논문집,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원세미나 시리즈 95~02) 참조.

56) 朴淳成,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1995. 8. 11. 민족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참조.

비롯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협력사업, 남포공단 협력사업, 금강산지역 관광개발사업, 남북한 직접교역에 대비한 물자-정보교류센터 및 교통·통신망의 연결, 에너지 분야 지원사업,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그리고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안, 그리고 추진전략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남북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과연 어떻게 해소하여 점진적 경제통합 내지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명령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문제는 북한에 남한경제체제의 원리인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행위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북한에 급속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추구하기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즉, 북한의 현존하는 국가관리체제를 인정하면서 북한내에 국가관리와 시장메카니즘이 공존하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체제가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2) 실질적인 南北經協의 추진과 政·經연계전략의 재검토

최근 KEDO-북한간 경수로 협정의 타결은 북-미 제네바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미국의 對북한 관계 개선 정책이 실천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징표이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질서에 기초한 개방사회로 전환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전략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미국은 앞으로 대북 무역 및 투자장벽을 추가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일본과도 북-일 수교교섭을 재개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래의 政·經 연계전략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실행하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정부가 件當 500만 달러 정도 이하로 제한해 온 對北 「협력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업 품목을 북한이 필요로 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확대하면서, 투자비용 중, 기계-설비규모를 늘리거나, 기계-설비 이외에 초기 용도로 쓸 수 있는 현금규모를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식적인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역은 제3국에서의 간접교역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⁵⁷⁾

57) 남북한 교역량과 규모는 1995년 6월말 현재 통관기준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약 100%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3국에서 한국의 민간기업과 북한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직교역이나 대북 민간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체제, 무역구조, 그리고 투자환경의 미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간접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를 위하여는 지금까지 북한에 원자재만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우리의 기계와 설비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임가공 교역으로부터 「설비제공형」임가공 교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위탁가공교역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장래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輕水爐 事業의 最大限 活用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 오던 경수로 공급협상이 1995년 12월 타결되었다. 그동안 경수로 협상은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와 건설과정에서의 한국의 이른 바 ‘중심적 역할’에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콜라뮌푸르 미-북 회담을 갖는 등 술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협상과정에서 「한국형경수로」는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관측되며, 송·배전시설과 핵연료가공공장을 제공해 달라는 북한의 추가요구는 철회되었으나, 대신 KEDO는 발전소 부지내 도로건설, 시뮬레이터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적어도 45억달러가 투입될 총공급비용 중, 한국은 그 60-70%에 해당되는 30억달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수로건설사업을 통한 대북경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측의 대규모 인원의 방북이 예상됨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남북간 인적교류상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1996년 착공, 2003년 완공), 이 기간에 연인원 1만여명 (전문인력 2천명과 단순노무자 8천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단순노동력은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1천 5백명 정도는 남한 인력으로 충원돼야 한다고 韓電은 분석하고 있다.⁵⁸⁾

KEDO와 북한 양측은 관련전문가와 기술자의 소속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영사보호를 해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측 기술진들의 신변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우리 기술인력과 북한 주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수로 건설부지인 新浦를 特區로 지정, 외부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는 각종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건설을 통한 대규모 남북간 인적교류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對北 交流·協力에 대한 民間部門의 自律權을 대폭 擴大하는 方案 檢討

대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에 가능한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58) 「중앙일보」, 1995년 6월 14일자 참조.

남북한간 문화교류는 대부분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남북체제가 비정치화, 탈군사화하지 않는 이상 커다란 실효를 기대할 수 없었다. 민간주도의 교류·협력 추진은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커다란 잇점이 있다.⁵⁹⁾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인도주의적 事案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은 주목할만 한 바 있으며, 국제선명회가 대북지원 활동을 한 예도 있고, 천주교 등 종교단체 일부에서 회원 또는 신자들을 상대로 對北지원 募金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 예이다.

최근에 북한의 심각한 수해 피해로 이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난 쌀支援 때의 명분이었던 단순히 '동포애'의 차원을 떠나, 북한의 現위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정부의 직접지원은 과거 쌀지원의 경우 있었던 인공기 게양사건과 쌀 수송선 억류사건 등 남북한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準정부기관이라 할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나,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 또한 UN과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 민간단체에는 수해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요청을 꺼리고 있다.⁶⁰⁾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대북한 지원과 교류

59) 崔大錫,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참조.

60) 북한은 9월 14일 국내 민간단체로선 처음으로 한국선명회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를 수행하는 것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한 방법일 수 있다.⁶¹⁾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 대북교류·협력의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하되, 대북접촉의 다원화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정부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도,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文化重視의 交流 推進

앞서 논의되어 온 것처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現시점에서, 정치색이 엷은 문화교류 중심으로 남북간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남북 문화교류는 냉전구도하에서 단기적이고 전략전 차원에서 다루어져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하는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남북 문화부문에서의 인적교류가 남북관계 전반에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추진방안을 새롭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 문화교류는 원칙적으로 ‘통일문화’적 시각으로부터 접근⁶²⁾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문화란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문화는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모든 남북한간 교류·접촉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문화규

61) 북한도 이러한 방법을 내심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2) 崔大錫, 앞의 글.

범'인 동시에, 제반 대북 및 통일정책이 실천의 準據로서 삼아야 할 '정책지도이념'이기도 하다.⁶³⁾

다음, 교류행사를 국제화함으로써 남북간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문화행사의 국제적 개최는 정치성과 남북간 이념적 굴레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있었던 몇 차례 해외합동공연은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공연과는 달리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벗어나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비교적 기여한 바 있다고 보며, 특히 해외 교포들의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도 하였고,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⁶⁴⁾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체제위기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이 열악한 인권상태에 놓여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대북정책의 원칙과 실용성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인권과 정의를 외면당하는 북한 동포를 제쳐놓고 남북대화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차원에서 인권문제는 남북 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남북대화는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층과의 대화이며, 인권문제의 거론은 북한 지도층의 약점을 노정시켜 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汎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 북한의 인권상황

63) 尹德熙,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안 연구", 『통일문화연구 上』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시리즈 94~01, 1994. 12) pp. 22~23 참조.

64) 崔大錫, 앞의 글 참조.

은 북한 지도부를 대화와 타협의 場으로 유도하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문제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공식적인 원칙의 개진과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한 정책목표를 구분하여 유연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구조적인 인권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정치범의 비밀교환 및 거래 등을 통하여 개별사항을 처리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한 헬싱키 협정의 방안을 援用하여 남북경협, 사회문화적 교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국제공조체제를 통하여 대북압력을 지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 1996년 올림픽을 活用하는 方案

최근 체육분야의 남북교류는 타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북한의 제의에 의해 9차에 걸친 남북체육회담과 6차의 실무회담 끝에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비록 단일팀 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북경대회에서 공동응원과 남북체육관계자들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체육분야에서의 남북간 인적교류는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이후, 분단후 최초로 1990년 10월에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으며, 翌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바 있다.

체육을 통한 인적교류는 스포츠가 지니는 비정치성과 국제성으

로 인하여 타분야에서의 교류보다 가시적 성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동경기를 개최할 경우, 실황보도를 위해 기자단의 방문과 방송교류가 가능하며, 또 상호 합의만 되면 방송 및 보도기술 및 장비지원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체육교류는 선수들의 직접접촉이 불가피하고 감정유발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판의 판정이 용이한 종목,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종목,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유리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交流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스포츠 자체의 승패보다는 남북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우선한다는 내부 정책지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⁵⁾

1996년 미국 아틀랜타에서 열리는 夏季 올림픽 경기에 남북간 체육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올림픽 이전에 남북간 또는 제3국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체육분야와 관련한 남북간 기술·시설·장비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의 올림픽경기 참가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남북한에는 현재 공히 IOC위원---남한에는 2인, 북한에는 1인---이 지명되어 있어서, 정부당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비정부기구(NGO)간의 협의 형태로 체육분야의 교류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球技종목에 한해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 올림픽 게임에 출진시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5) 尹德熙, 金圭倫, 「한민족공동체」 구체화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12) pp. 74~78 참조.

바. 기타 分野別 접촉의 擴大

인적교류가 성공한 시기와 실패한 시기, 인적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를 구분하여 사례별로 연구하여 이를 대북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대체로 1970년대초, 1980년대 중반, 그리고 1990년대초를 남북간 교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또 분야별로 볼 때, 체육, 학술, 종교 분야는 비교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 이산가족, 언론 등의 분야는 교류가 비교적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체육교류는 남북한간 합동경기를 개최하는 등 비교적 활성화되었고, 학술분야는 제3국에서의 접촉이 두드러졌다. 또 최근 남북한 합동음악회가 열린 바 있다. 종교인들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객선회 목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제3국(미국과 중국)에서 종교인들의 접촉은 활발하다. 이에 비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은 북한의 통제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불확실하다. 1985년에도 고향방문은 서울과 평양에서 제한된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끝난 바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의 재상봉이나 서신교환 등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리라 보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인적교류 본래 목적에는 기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관광 및 청소년 교류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며 미개발 분야로 남아 있다.

第 V 章 結 論

해방의 감격과 더불어 뜻하지 않게 찾아 온 민족분단, 그 후 오랜 반세기의 아픔의 세월을 남북은 서로 대치하며 살아왔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로 변모했으며, 그후 북한은 남한의 안보와 발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왔다. 세월은 흘러 대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이제 남한은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도 선진국과 그 위상이 비견될 만큼 성장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원조와 각종의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통일은 이제 환상과 기대의 수준을 넘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인(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활하고 대응함으로써 주위를 혼돈시키고 있다. 아직도 그들은 세계의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념체계 속에 살고 있으며 교조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善意를 때때로 악용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가치체계 속에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언젠가 우리가 통일하고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이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다. 정치·군사적 방법 곧 물리적 방법이 아닌, 문

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의한 '통합'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한층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는 곧 현재의 남북 對峙국면을 고려할 때,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文化的 同質性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치통일에 기여하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통합'을 위한 문화적 동질성을 이루는 첩경은 주민간의 접촉, 곧 人的交流라 할 것인데, 이는 접촉과 왕래를 통해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상호이해를 높이며 분리된 사람들간에 공통된 가치관과 문화적 유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먼저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분단국 사례를 연구·검토하였으며,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 概況을 살펴보고 평가한 다음, 그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동서독의 통일과 중·대만간의 관계변화는 같은 분단국으로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정치적 통일이라는 결실을 맺은 경우이다. 통일 이전 이루어져왔던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동서독간 인적교류는 주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축적하여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접촉과 교류의 확대는 현대의 발달한 통신매체를 축매로 하여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물질문명과 소비문화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로의 수렴현상을 촉발시킴으로써 통일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서독간 접촉과 교류의 확대는 문화적 동질화보다는 정치적 통일에 기여하였고, 문화적 동질화의 과제는 오히려 통일 이후로 넘겨졌다.

중국의 경우는 양안관계가 최근 정통성의 경쟁으로부터 통일 대분리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음으로 해서 교류와 접촉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긴장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구도 속에서도 그나마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양안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교류와 접촉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중국의 경우에도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있어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 본토에의 해외 경제투자·협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몫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외에, 중국 지도부의 확고한 개방·개혁 정책과 이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국으로 하여금 양안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과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 지도부가 이념과 정책적 대응에서 경직성을 띠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사항이다.

분단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남북 주민간 접촉 및 왕래)는 냉전적 국제질서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적대관계로 거의 全無한 상태였으나, 1970년대初 남북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간의 정치·군사문제의 교착상태로 인해 남북대화 노력은 번번히 좌절되곤 하였고, 그나마 여러차례 인적왕래가 있었다고는 하나 몇몇 회담 대표들과 보도진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다만, 남북 적십자 제8, 9차 본회담 이후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남북간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은 지금까지의 남북간 인적교류史上 최대규모로서 인적교류를 통한 문화적 동질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짧은 만남이긴 했으나,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40년간 각기 상이한 체제 속에서 다른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사람들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첨예하게 부각시켰으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 세대 동안 형성돼 온 '마음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민족 전체에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남북한간 방문은 1회성에 그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남북간 인적교류는 각 분야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4년 이후에는 핵문제의 돌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종래의 적화통일 노선에서 체제보존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대화와 대결노선을 병행하고,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는 통일전선전술을 여전히 추구하며, 당국자간의 공식적 대화는 회피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은 확대하려는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대화과 인적교류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는 공세와 수세, 대결과 대화의 모순된 전략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개관해 볼 때, 남북한간 인적교류는 동서독 또는 중

-대만과 달리 한번의 교류가 또 다른 보다 진전된 교류를 유발함으로써 접촉과 교류를 점증적으로 활성화 해 나아가는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인적 접촉 및 교류가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로 나아가는 이른 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하나의 인적접촉 또는 교류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실패하여 상호신뢰보다는 상호 불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한편,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문화적 동질성의 형성 또는 사회·문화적 통합은 정치적 통일과 별개의 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결과이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서독의 동방정책이 원래 독일의 정치적 통일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유의할 만 하다. 독일의 정치적 통일은 서독의 우세한 국력과 주변정세, 외교술, 그리고 체제우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역사과정의 결과였다. 문화적 동질화는 '컴ью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이해'라고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여과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장기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대북교류 정책은 독일과 같은 갑작스런 정치통일을 외면하지는 않되, 교류확대의 목적을 정치통일과 같은 가시적 성과에 두지 말고, 한민족의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분단된 현실을 사회·문화적 접촉으로 메꾸어 나가는데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바로 분단된 상황하에서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여 분단의 악영향을 상쇄시키고 보다 적

극적으로 주민들간의 내적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미·북간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문제의 타결, 향후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 쌀지원을 계기로 한 북-일 수교 전망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3차 쌀회담 결렬로 인한 담보상태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개방과 남한의 대북經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위기가 남북대화과 인적교류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상호신뢰의 과정을 거쳐 남북간 '마음의 문'을 열고 문화적 동질화를 향한 大도정에 들어서기를 희망해 본다.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
北亞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부의 情勢認識 變化和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對外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
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
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4-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4-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 ~ 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 ~ 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 ~ 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 ~ 1995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한·미 WORKSHOP : US-Koreans Relation at Time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上)

95-02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下)

統一과北韓 社會文化(下)

統一文化시리즈 95-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